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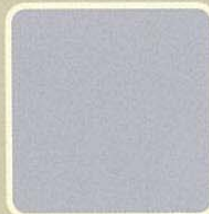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31-9700328-000704-10

naboo

#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2009. 10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2009. 10.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발 간 사

조세는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며,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그리고 소득 분배상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모든 나라에서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매년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행정부는 3가지 기조와 4대 중점 추진 과제 하에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세가 시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국내·외 경제여건, 서민 생활의 불안정,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의 결과로 악화된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세제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대·내외 여건 하에서 적절한 방향인지를 심도 깊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추진 과제별 분석과는 별도로 2009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 현안들을 제 2부에 따로 정리하여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까지는 ‘세수추계와 세제분석’을 통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를 분리하여 우선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님들이 세제개편과 관련한 보다 심도 있고, 보다 읽기 쉬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조세정책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혜룡



# 목 차

## 요 약 / 3

I.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 .....	3
II. 주요 쟁점 분석 .....	10
III. 중점 추진 과제별 분석 .....	30

## 제1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

### I. 2009년 세제개편안 개요 / 41

### II.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 / 45

1. 정책목표의 적절성 .....	45
2. 분야별 검토 .....	47

### III.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 52

1. 행정부발표 세수변화 규모 .....	52
2. 주요항목 검토 .....	54

## 제2부 주요 쟁점 분석

### I.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유보 / 65

1. 현황 .....	65
2. 찬반의견 .....	68
3. 분석 .....	70
4. 검토의견 .....	83

<b>II.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논의 / 86</b>	
1. 현황 .....	86
2. 기존 문헌 .....	87
3. 검토의견 .....	94
<b>III.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 95</b>	
1. 현황 .....	95
2. 임시투자세액공제 연혁 및 운용현황 .....	96
3. 문헌연구 .....	101
4. 검토의견 .....	102
<b>IV.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선 / 106</b>	
1. 현황 .....	106
2. 관련 쟁점 .....	107
3. 분석 .....	108
4. 검토의견 .....	118
<b>V.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 121</b>	
1. 행정부발표 세제개편안의 내용 .....	121
2. 문헌 연구 및 도입 후 기대효과 .....	123
3. 검토의견 .....	130
<b>VI. 2009년 세제개편안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131</b>	
1.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 .....	131
2.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주요 내용 .....	132
3. 주요 분석 .....	136
4. 평가 및 개선과제 .....	145

<b>VII. 법제도 정비를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 / 152</b>	
1. 개관 .....	152
2. 알기 쉬운 세법 구축을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	153
3. 세무조사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	156
<b>VIII. 조세범 처벌제도 확대 방안 / 160</b>	
1. 필요성 .....	160
2. 현황 및 문제점 .....	161
3. 검토 의견: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	162
<b>IX.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 방안 / 164</b>	
1. 필요성 .....	164
2. 현황 및 문제점 .....	164
3. 검토 의견: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166

### 제3부 중점 추진 과제별 분석

<b>I.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171</b>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	171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	175
3. 취약계층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178
4. 중소기업 지원 .....	179
<b>II.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 181</b>	
1. R&D 지원확대 .....	183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187
3.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국제조세 제도개선 .....	189
4. SOC투자 및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	190



<b>III.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 192</b>	
1.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 개선 .....	193
2.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	194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확대 .....	195
4. 기타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 제고 .....	195
5. 검토 의견 .....	196
<b>IV. 재정건전성 확보 / 197</b>	
1. 고소득자·대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	199
2.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	204
3.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	207
<b>V.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 212</b>	
1.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 보완 .....	212
2. 검토 의견 .....	215
<b>참고문헌 / 217</b>	
<b>부 록 / 221</b>	
I. 2009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 전년대비 방식 .....	223
II. 2009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제도 현황 .....	260
III. 2008년 이후 비과세·감면 항목 개정 현황 .....	265

## 표 목차

[표 1]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	43
[표 2]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 귀착 .....	44
[표 3]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	53
[표 4]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항목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주요항목) .....	53
[표 5]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	56
[표 6] 각 파라미터가 변화할 경우의 세입 변화금액 .....	59
[표 7] 2010~2012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	61
[표 8]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	66
[표 9] 법인세율의 변화 .....	67
[표 10] 최저한세율의 변화 .....	68
[표 11] 세법 개정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변화 .....	71
[표 12] 2008년대비 가처분소득의 변화 및 변화율 .....	73
[표 13] 가계의 한계소비성향과 감세안의 효과 .....	74
[표 14]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소득수준) .....	75
[표 15] OECD 국가의 법인세율(1981년~2008년) .....	80
[표 16]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화 .....	81
[표 17] OECD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	82
[표 18] 조세제도의 한계초과부담 .....	83
[표 19] 최저한세 계산방법 .....	86
[표 20]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의 변화 .....	87
[표 21] 최저한세 도입 이전의 제도 .....	89
[표 22] 2006년도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수, 과세표준, 조세감면배제 현황 .....	90
[표 23]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	92
[표 2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부진 이유 .....	93
[표 25]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혁 .....	97
[표 26] 국세감면액법인세수임시투자세액공제감면액 추이 .....	98
[표 27]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법인세) 신고 현황 .....	98
[표 28] 민간설비투자임시투자세액감면액 및 공제율 추이 .....	101
[표 29] 2008년 이후 투자R&D 세제지원 확대 현황 .....	105

[표 30]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106
[표 31]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추이	110
[표 32]	감면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에 따른 정책효과 모의실험	112
[표 33]	감면 부가가치율 일몰 종료에 따른 신고인원 당 세부담 증가	112
[표 34]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변화 추이	115
[표 35]	사용된 모수값	116
[표 36]	적정 면제점 수준 계산 결과	117
[표 37]	지방세목 변경내용(2009년 세제개편안)	121
[표 38]	우리나라 지방정부 세입구조(순계규모)	124
[표 39]	지방세입의 구조	128
[표 40]	2009년 세제개편안 비과세감면 항목 주요 개정 방향	134
[표 41]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 현황	135
[표 42]	2009년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 관련 항목 개정 효과(전년대비)	137
[표 43]	2009년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비용추계)	139
[표 44]	2008년 이후 2009. 5월까지 비과세감면제도 개정의 세수효과(전년대비)	141
[표 45]	2009년말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회수	142
[표 46]	2009년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정보 현황	143
[표 47]	2009년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 현황	144
[표 48]	2009년 세제개편안과 2008년 이후 확대된 비과세감면의 세수효과	148
[표 49]	감면실적 1억원 이하 항목에 대한 세제개편방안	150
[표 50]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실적 및 계획(2009. 6월말 현재)	154
[표 51]	조세범 고발실적	161
[표 52]	제1심 행정소송사건 중 조세사건의 비중(접수기준)	166
[표 53]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	172
[표 54]	소득공제제도의 현황(2009년 기준)	174
[표 55]	업종별 부가가치율	175
[표 56]	2005년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가구 현황(일반가구)	177
[표 57]	2009년 세제개편안의 미래성장동력 확충지원 과제 주요 내용	181
[표 58]	2010년 예산안의 신성장동력 관련 지원 규모	185
[표 59]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의 R&D세액공제(법인세) 신고 현황	186
[표 60]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192
[표 61]	2009년 세제개편안의 재정건정성 확보 주요 내용	198
[표 62]	중간단계 면세에 따른 문제점: 누적효과	210
[표 63]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213

## 그림 목차

[그림 1] 2009년 세계개편 3대 기조와 4대 중점 추진 방향 .....	42
[그림 2] 국세감면액·법인세수·임시투자세액공제감면액 연평균증감률 추이 .....	99
[그림 3] 민간설비투자·실질성장률·임시투자세액감면액 증감률 및 공제율 추이 .....	100
[그림 4] 2009년 세계개편안의 개정방향 따른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회수 .....	143
[그림 5] 2009년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 .....	145
[그림 6] 납세에 대한 순응도 추이 .....	157
[그림 7] 미국 조세법원의 체계 .....	167

요약

## 요 약

### I.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

#### 1. 2009년 세제개편안 개요

- 2009년 세제개편안은 3가지 기조와 4대 중점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2009년 세제개편안의 3가지 기조
    -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기추진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하고, R&D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하에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병행
  - 4대 중점추진 방향
    -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중소기업·농어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진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추진
    - 고소득·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제고 추진
    -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강화
  
- 2009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2010~2012년 기간 중 세수증가 규모는 전년도 대비 방식 기준으로 10조 4,9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7조 7,000억원, 2011년에는 2조 2,600억원, 2012년에는 5,300억원이 증가할 전망

- 세목별로 살펴보면, 2010~2012년 기간 중 법인세 6조 4,200억원, 소득세가 2조 4,700억원, 부가가치세 4,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2012년 중 증가되는 세수 10조 4,900억원 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80~90% 수준임

## 2.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

-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세제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그 당시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행정부의 처방이 담겨있어야 함
  - 우리나라의 중장기 세제개혁 방향은 세제의 정상화, 성장잠재력의 확충,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원, 미래사회에 대비한 세제구현 및 세제간소화로 설정되어 있음
  - 행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함
  - 또한 지난해 단행한 감세정책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과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함

-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2009년 세계개편안의 정책기조와 중점 추진 과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단기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고려할 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은 분명함
  - 다만, 이러한 정책기조와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조세정책이 적절한 정책수단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 조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임
  - 그런데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표가 개입하다보니 비과세·감면제도가 늘어나게 되고, 세원도 축소되고 조세제도가 복잡해짐
    - 세원이 축소되다보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짐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조세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유발
  
- 세계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정책목표가 제시되면, 각각의 추진목표상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함
  - 예를 들어 2009년 세계개편안에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각종 비과세·감면을 확대시키게 되는데,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감면들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조세정책의 특성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개편 때마다 추진과제로 포함되는 내용도 있음
  - 예를 들어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50%에 가까운 상황에서 조세를 통한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세계개편의 중점 추진 과제로 포함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행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너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세제개편은 조세의 일차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함
  - 초과부담이 작은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를 거두어야 하며, 각종 비과세·감면의 경우 부정적인 외부성을 치유하거나 긍정적인 외부성을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함
  - 또한 세법체계의 간소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안정화 정책은 세제를 통한 지원보다는 정부 재정지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3.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 다음 표는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2010~2012년 세수변화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소득세 2조 4,700억원, 법인세 6조 4,200억원, 부가가치세 4,300억원, 증권거래세 2,700억원 등
  -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항목에서의 세수증가가 2010년에 5조 2,000억원으로 가장 크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에 의한 세수증가가 각각 1조원, 5,000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단위: 억원)

세 목	2010	2011	2012	2010~2012
소득세	12,600	8,600	3,400	24,700
법인세	52,300	10,700	1,100	64,200
부가가치세	1,500	1,900	800	4,300
개별소비세	2,100	300		2,400
증권거래세	2,500	200		2,700
인지세	100			100
교통에너지환경세	700	100		800
관세	2,400	400		2,800
교육세	600	100		700
농특세	2,100	200		2,300
총 계	77,000	22,600	5,300	104,90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협조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항목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주요 항목)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합계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씩 축소	소득세	1,467	133		1,600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 총급여 1억원 초과분 : 5% → 1% - 총급여 8천만원~1억원 : 5% → 3%	소득세	1,100	100		1,200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 의무화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소득세	8,300	1,700		10,000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 보증금 소득세 과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보증금의 일부(60%)만 과세 - 시행시기 : 2011년부터 시행	소득세			1,300	1,300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일몰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중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2010.1.1 이후 20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소득세		4,000	1,000	5,000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몰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 폐지	소득세				1,260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소득세		1,900		1,900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 인하 (8%→7%, 11%→10%)하되 100억원 초과 기업은 '08년 수준(13%, 15%)으로 환원	법인세		3,200		3,200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금융기관에 한하여 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되던 것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법인세	52,000			52,000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 품목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 - 세율 : 5%; 시행기간 : 5년 한시 시행 (2010.4.1이후 출고분부터 과세)	개별소비세	500	500		1,000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공모펀드 증권거래세 감면,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	증권거래세	4,455	405		4,860

- 정부의 세수변화 규모 발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기준연도 대비 방식과 전년도 대비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세법개정 효과 계산방법에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아 세법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세수의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선은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최저한세율의 변경과 법인세 공제·감면항목의 조정’ 항목 등과 같이 한 세목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동시에 개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수추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함
  -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법안의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간을 대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임
  - 넷째, 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나타난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효과를 훨씬 밑돌고 있는 등 세수변화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함
  - 마지막으로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2009년 혹은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세법에 대한 세수효과에 대한 언급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II. 주요 쟁점 분석

### 1.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유보

#### 가. 현황

-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이루어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중 2010년부터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방안이 제기됨
  - 행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기 추진된 세율 인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등의 방안을 추진

#### 나. 찬반의견

-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유보를 주장하는 입장
  -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조세 수입 확보차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층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율인하 유보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법인세율의 투자유발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현재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법인세 부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반대하는 입장
  - 감세가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제고와 세원증대를 유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것임
  - 국제조세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의 해외 투자 유치,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의 인하 유보는 바람직하지 않음

- 감세 유예 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 소득세율 인하는 유보하되, 법인세율 인하는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 조세정책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율 인하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임

#### 다. 분석

- 소득세율 인하가 실제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지출 증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
  - 2008년 세제개편 중 2010년에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음
  -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율 인하의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수준이 높은 분위에 더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민간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조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역할,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소득세율, 효율성을 고려한 조세원칙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 인하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지는 않음
-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따른 친성장적 조세개혁의 필요성과 국제적 조세경쟁을 고려할 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 법인세 인하의 단기 투자 증진 및 성장효과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기여할 것임
  -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은 법인세가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라. 검토의견

### □ 법인세율 인하 기조의 유지

- 친성장적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국가간 조세경쟁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 필요

### □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 재검토

-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2010년 귀속소득분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20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포함됨
-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최저한세제도는 「조특법」상 각종 감면을 받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 수준은 일반 법인의 세부담 수준에 맞추어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음
  -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세부담은 감소하지 않게 되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해짐
-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는 법인세 부담 완화라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에 역행하는 것임

### □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방안에 대한 검토

- 소득세율 인하가 민생안정에 미치는 효과 및 소비진작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현황과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 인하가 시급한 과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할 때 2010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율 인하 유보를 전제로 고소득층에 소득세 감면 축소 폐지
  -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중 고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축소는 소득세율 인하 유보를 전제로 폐지되어야 함

## 2.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논의

-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고, 담세력 있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될 예정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의 변화

(단위: %)

소득 귀속연도	현행				개정안
	2007	2008	2009	2010~	2010~
법인세율					
과표 2억원 초과~	25	25	22	20	20
과표 1~2억원	25	11	11	10	10
과표 1억원 이하	13	11	11	10	10
최저한세율					
일반기업(과표1,000억원 초과)	15	15	14	13	15
일반기업(과표100~1,000억원)	13	13	11	10	13
일반기업(과표100억원 이하)	13	13	11	10	10
중소기업	10	8	8	7	7

주: 굵은 선 안의 내용이 2009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나타냄

- 최저한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최저한세 제도가 기업의 세부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둘째, 최저한세율 변경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 첫 번째 논점은 다시 두 가지 문제로 분리할 수 있는데 첫째, 최저한세 제도의 존재로 인해 공평성이 향상되었는가? 둘째,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조세감면 제도의 유효성이 하락하였는가?
  - 두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최저한세율을 인상할 경우,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최소한의 조세부담을 지게 되거나,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기업들이 부담하는 유효세율이 비슷해질 수 있는 반면,
    - 조세감면제도의 유효성은 하락하기 때문
  - 최저한세 도입을 전후한 기간을 비교하여, 최저한세 도입 혹은 세율변경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대부분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공평성이 향상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지출을 양적인 면에서 통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없애는 효과가 있음
    - 2006년 최저한세로 인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세수 금액은 1조 7,973억원(신고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 26조원의 6.8%)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거나(42.7%),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모르기 때문(39.2%)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저한세(7.6%)와 중복적용의 배제(5.3%) 등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한제도 역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활용이 부진한 이유로 지적된 바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폐지는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은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대법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해질 수 있는 점, 중장기적 세제개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점의 문제점이 있음

- 최저한세제도는 조세의 왜곡을 줄이고 각종 감면지원으로 인한 세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로 조세회피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저한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각 조세지원제도의 목적과 그에 대한 효과성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3.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종료와 관련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 우려 등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제도의 일몰종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거의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설비투자증가율과 실질성장률이 높은 시기에 대규모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 도입 이후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되어 실제 경기조절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종료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경기 상황을 경기 하강기로 볼 수는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 실질성장률을 -1.0%, 2010년 실질성장률을 3.8%로 전망하는 등 대다수 연구기관에서 2010년 경제성장률이 2009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종료가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동 제도 일몰종료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기업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고용·환경·안전·에너지 절약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파생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 중에서 첨단설비, 노후설비개체, 생산성 향상시설 등은 정부가 별도의 세제지원을 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임

####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선

##### 가. 현황

-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소매업,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감된 부가가치율의 일몰을 연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20%이나 2009년 12월 31일까지 거래분은 15%의 부가가치율을 적용
  - 음식업과 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은 40%이나, 2009년 12월 31일까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30%의 부가가치율 적용

##### 나. 분석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의 부가가치율 인하의 타당성 검토
  - 일반 과세자의 실제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 농림수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현행 간이과세제도 하에서 사업자의 세부담이 감소하지만,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현행 간이과세제도 하에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농림수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실제 부가가치율이 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율보다 높은 수준임

-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실제 부가가치율보다 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율이 더 높았음
- 전기·가스·수도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실제 부가가치율과 법령상의 부가가치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일반과세자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파악된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일정정도 완화시켜줄 필요성은 인정이 됨

#### □ 일몰연장의 효과 분석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감면 부가가치율 일몰을 종료할 경우, 소매업은 약 56~60%, 음식업은 100~106%, 그리고 숙박업은 약 45~46%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몰을 연장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음을 의미

####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지원 방식의 타당성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제 상의 혜택은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나, 현재와 같은 방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감면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업종 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에게만 부가가치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시켜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체계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잦은 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특정 업종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별로 인한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며, 특혜업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을 수도 있음
  -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음식업 속

- 박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인하한다면, 당연히 일반과세자보다 더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제조업, 농림수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상향 조정해야 함
-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감면 부가가치율 인하가 아니라, 전면적인 부가가치율 조정이 필요함

#### □ 부가가치세 면제점의 적정성

-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원래 영세사업자의 지원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갖고 있음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은 2000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고정되어 있음
- 최적 면제점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이 적정 수준보다 아주 낮은 수준임
-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의 경제적 효율성 및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제의 면제점 수준을 일정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 검토의견

#### □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인하 일몰 기한 준수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그 방식으로 세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200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율 인하의 일몰 기한은 예정대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없이 부가가치율 인하의 일몰을 종료할 경우, 해당업종의 일반사업자에 비해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과다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방안 수립을 전제로 1년 정도 부가가치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음

□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조정 필요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해당업종에 대한 한시적인 부가가치율 인하 방식 보다는 전면적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보다 세분화한 후 해당 업종의 실제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도록 법정 부가가치율을 현실화해야 함
  -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과다하였던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과소하였던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커다란 세수부담 없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과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면제점에 대한 논의 필요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은 실제 적정수준보다 아주 낮은 수준이며, 면제점 인상을 통해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면제점 인상으로 세수손실이 발생하지만,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 등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
  - 영세자영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간이과세제도는 당초 영세사업자에게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나, 현재에는 납세편의의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세부담을 경감 또는 탈세하는 장치로 인식되어 간이과세제도의 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동일한 업종이라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세율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음

- 이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유용성 및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5.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 2009년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됨

지방세목 변경 내용(2009년 세제개편안)

변경전	변경후	과표 및 세율
주민세 소득할	지방소득세	소득분: 본세의 10%
사업소세 종업원할		종업원분: 월급여총액의 0.5%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균등분: - 개인: 10,000원 이내/ 사업장 50,000원 - 법인: 50,000~500,000원
사업소세 재산할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250원/m <sup>2</sup> (오염물질배출사업소, 500원/m <sup>2</sup> )
(신설)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의 5%
농업소득세	폐지	

- 주 1. 신설되는 경우가 아닌 세목 통폐합의 경우, 과표 및 세율은 기존과 동일.  
2. 현행 농업소득세는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 자체재원의 증가는 과세자주권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해야 함
  - 일반적으로 교부금은 자체재원에 비해 지방정부의 수입이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지자체의 세입징수 노력을 줄이고, 지자체의 지출을 증가시켜, 적자와 부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체재원의 증가 측면에서는 바람직함

- 그러나 첫째, 자체 세원 확보 노력이 탄력세율의 활용으로 이루어져 과세 자주권의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에도 레저세, 면허세, 농업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전 세목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재산세율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될 필요
    -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정부가 세율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법 등
  - 셋째, 실질적인 자체재원의 증가 없이 단순히 징세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지방세수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작게 받고, 안정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대적으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소득·소비과세의 비중 확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6. 2009년 세제개편안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가. 주요내용

-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136개 항목으로 이중 감면신설, 기존감면의 확대, 일몰연장 등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항목은 총 85개, 일몰종료 및 폐지, 감면축소 등 조세지원을 정비하는 항목은 총 51개임
- 개정안 중 신규로 도입하는 항목은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와 ‘녹색펀드·예금·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영세 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등임



- 2009년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 관련 항목(136개) 중 올해 말 일몰도래 예정인 항목은 총 105개로 전체의 75%에 해당
  - 올해 세제개편안의 총 105개 일몰도래 항목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총 31개 항목에 대하여 일몰종료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총 74개 항목의 일몰연장을 제안

#### 나. 분석

- 행정부 추계에 따를 때, 2009년도 비과세·감면 항목 관련 개정안으로 인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수 증가효과의 주된 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로 1조5천억원, ‘투자신탁 등 공모펀드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및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종료로 각각 약 5천억원의 세수증가를 예상
  - 주요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설로 약 8천억원의 감소를 예상
- 올해 일몰도래 예정인 105개 항목에 대하여 과거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경험이 있는 경우 그 연장회수를 분석한 결과
  - 세제개편안에서 ‘일몰연장안’이 제시된 총 74개의 일몰도래 항목 중 과거 일몰연장 경험 있는 항목은 48개로 그렇지 않은 항목(26개)보다 비중이 높고, 이 중 연장회수는 2회가 26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
  - 반면, 일몰종료가 제안된 총 31개 항목 중 과거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은 각각 14개, 17개로 일몰연장 경험이 없는 항목들의 비중이 높고, 일몰연장 경험 있는 항목들 중 연장회수는 1회가 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

#### 다. 평가 및 개선과제

- 향후 재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고 조세제도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1%에 이르는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해 나갈 필요
  - 이를 위해 조세지원 대상은 R&D, 환경개선·에너지 절약 분야 등 외부 효과가 있어 조세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하되,
  - 사회적 형평성측면에서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재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
  
- 중장기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과 정비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감면제도에 관한 2009년 세제개편안은 조세지원의 실질적인 효과와 관련 없이 상당기간 고착화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지출 항목들을 폐지하고, 조세지원 실적 및 효과가 미미한 다수의 지원항목들에 대한 정비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조세지출의 신규도입을 억제하면서 신성장 동력산업 등 R&D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 그러나 최근 R&D 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경향과 관련하여 조세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R&D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시행령 위임)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선정될 경우 일몰종료(안)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원대상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녹색펀드·예금·채권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신설과 관련하여 녹색펀드에 대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함께 허용하고 있으나 중복·과다 지원의 소지가 큰 것을 보임

- 행정부가 올해 일몰 도래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 중복·과다지원을 이유로 비과세 혜택이 외에 소득공제 적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방향과도 배치
- 개편안 중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및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해당 부문은 외부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투자 등의 효과가 개별기업에 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지원의 타당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일몰연장을 제고하거나 감면 축소를 검토할 필요

-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개편으로 추정 가능한 세수 증대규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조원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감세와 조세감면의 확대로 인해 크게 위축된 세입여건을 호조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 2008년 이후 대규모 감세조치와 함께 각종 조세지원 정책 역시 크게 확대됨에 따라 향후 세입여건의 악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임
    - 2008년 이후 비과세·감면의 확대로 인해 추정 가능한 세수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방식으로 2009년 3.1조원, 2010년 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추계가 불가능한 다수의 항목 등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전년도 방식의 행정부 추계방식에서는 세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올해 일몰 도래하는 총 105개 항목 중 74개 항목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이연되는 조세지원 규모가 약 5.3조원에 이룸
  - 세입기반의 악화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용방향으로 다음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각종 소득공제 제도 등 감면규모가 큰 주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주도 등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등 일몰연장안이 제시된 총 74개의 일몰도래 항목들에 대하여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원칙에 입각하여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재검토될 필요

-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일몰연장 되는 등 항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약화된 항목에 대하여는 일몰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정비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

□ 최근 행정부는 일부 조세지원 항목에 대하여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08년 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일몰규정을 폐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부금’에 대해 일몰폐지안을 제출
  - 그러나 조세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의회의 주기적인 심사를 거쳐 조세지원의 항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일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몰규정의 폐지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조세지원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일몰규정을 폐지하기 보다는 일몰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7. 법제도 정비를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

### 가. 개관

- 정부의 세제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이에 수긍하지 못하거나 과세당국의 시책에 불신을 나타낸다면 종국적으로는 정책의 효율성도 반감되고 경기회복의 추세도 위축될 소지가 적지 않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알기 쉬운 세법을 구축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조사제도를 정비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도 줄여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나. 알기 쉬운 세법 구축을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 세법이 어려울수록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짐
  - 따라서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며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당국의 세무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행정부도 법제처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고, 특히 세법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계개편안 발표시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다만,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조문의 문장이나 단어만을 순화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중국적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예컨대 세법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데, 미국의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IRC)처럼 단일법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다. 세무조사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탈세를 적발하는 기능 외에도,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지나친 세무조사제도의 활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적지 않게 조세저항을 불러 왔던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적절한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은 납세순응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에 실시된 납세순응도에 대한 실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도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 과세당국이 국민에게 일종의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할 것임
  - 이에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입장에 귀 기울이는 진일보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향후 그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
  
- 이와 같은 노력들 외에도, 세무조사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그 시사점이 적지 않아 보임
  - 즉 세무조사제도 개선을 위해 납세자 유형별 및 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전략을 수립하거나, 무작위 추출조사를 도입하여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Compliance Analysis Function System, CAF)을 보완하며,
  - 가산세의 차별화 및 중과,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 금융거래자료 수집범위의 확대가 필요하고, 세무조사 운영의 정기적·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 제고가 필요하다고 함

## 8. 조세범 처벌제도 확대 방안

- 조세범은 형식적으로는 「조세범처벌법」에 범칙행위로 규정된 벌칙조항의 위반행위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함
  - 그러나 실제로는 동법의 활용이 매우 저조하고, 법개정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임
  - 금년 세제개편안이 조세범처벌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임

- 조세범처벌제도의 실제 활용에 대한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나 조세체납사건 등 일부 죄목 외에는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시작으로 후속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같은 제도개선 작업에 더해, 그 한계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즉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 양자가 단지 포탈세액의 규모에 의해서만 그 적용여부가 결정될 경우, 납세자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입법적인 대응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9.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 방안

- 세금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조세쟁송제도는 납세자들의 권리 의식이 확대되어짐에 따라 과거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법원의 통계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는 조세쟁송제도에 대한 관심과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조세쟁송절차 중 조세불복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2008년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제도의 개선작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조세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별도의 논의가 없는 상태임
  - 현재 조세소송절차는 일반행정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고, 별도의 조세 사건 전담법원은 없는 상태임
  - 특허사건이나 해사사건(海事事件)과 같이 전문성·기술성이 높은 분야에 있어서는 별도로 특허법원이나 해양안전심판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 조세사건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일반행정법원이 이를 다루고 있어 전문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임
- 향후에도 조세나 재정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더욱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별도의 재정조세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주로 ‘Tax Court(조세법원)’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전문기관을 두고 있으며, 독일도 독립된 조세법원을 두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임



### III. 중점 추진 과제별 분석

#### 1.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세제지원 개편내용은 크게 4 가지 부문-영세 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취약계층 지원 및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으로 나뉜
  
- 영세 자영업자 지원
  - 우선,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됨
  - 이러한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 저하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동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면, 한시성 규정에 대한 준수의지를 보다 강력히 표명해야 한다고 평가
  - 이 외에도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등의 제도 도입
  
-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
    - 행정부에서는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된 세수감소가 2011년에 약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시행상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데 첫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과약이 가능해지면서 월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둘째, 전세세입자와의 형평성 셋째, 월세 사용 고소득자와의 형평성임
  - 이 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농어민 지원을 위해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취약계층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는 소액서민금융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비율이 확대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이 연장되며 사회복지시설이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인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완화,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이 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 미래성장동력 확충지원

### 가.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개편안은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6%(중소기업은 25%)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은 30%,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신성장 동력산업 등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최근 R&D분야에 대한 세제 및 예산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가능성이 있거나 연구성과가 미흡한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 R&D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시장실패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부문과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선정될 경우 일몰종료(안)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원대상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나.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에어컨 냉장고, TV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품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제품에 대하여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5년 한시로 과세하며, 이를 통해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 이번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일부 에너지소모가 큰 가전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경우 이를 통해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보다 오히려 가격왜곡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기 때문임
    - 그리고 이 번 대책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근본대책이라기보다 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어 과세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외부성 교정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기존의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탄소세의 도입과 같은 환경관련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3.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 종래 조세범처벌제도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활용도 매우 저조하여 사문화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음
  - 금번 세제개편안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적극 반영하여 조세범처벌제도에 대한 많은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왔던 고소득 전문직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방안이라든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앞으로 실효성이 기대되는 개선이라 할 것임
  
- 다만 조세범처벌제도의 경우, 금번 세제개편안 외에도 법체계의 개편이나 구성요건의 재정비, 양형 등의 문제점 등이 계속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소위 ‘세과라치’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4. 재정건전성 확보

-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의 강화를 위해 다음의 과제가 추진됨
  - 고소득자·대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 지원목적 달성 감면제도 정비

## 가. 고소득자·대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 2010년 귀속소득분에 적용되는 고소득 과표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를 고려한 정책으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의 후속대책으로써의 성격을 가짐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총급여 50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한도액을 10만원 씩 하향조정하였음
    -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5%에서 1%로,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5%로 인하하였음
  - 소득세율 인하의 후속대책의 성격을 가지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율 인하유보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 정책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 하였음
    -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가산세율은 과소신고시 10%, 무신고 시 20%, 납부불성실시 연 10.95%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 국세행정 전산화 등을 통한 예정신고를 위한 비용감소와 양도소득세를 주로 납부하게 되는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의 폐지 및 가산세의 도입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단, 1975년 이후 장기간 동안 운용이 되던 제도가 갑자기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세액공

세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2010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고, 2011년 양도분부터 세액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 그리고 가산세 부과외의 경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해 2011년 이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의 일부인 60%만 과세
  -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과세최저한으로 설정
- 전세주택소유자의 실질적인 소득인 전세 보증금에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나, 전세보증금 과세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검토되어야 함
- 과세 대상 전세 주택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외의 주거선호지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전세보증금 과세가 해당지역의 전세 물량 및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함
- 보유 주택 수가 부부합산으로 3채인 경우라도, 주택 보유 명의가 가구 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와 분산되어 있는 경우 세부담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주택보유명의 변경, 임대 형태의 변경 등을 통한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과세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나.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의 일몰 종료
  - 2008년 10월 금융위기에 따른 중시 안정대책으로 도입된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의 일몰이 종료됨
  - 주식시장이 안정되는 등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예정대로 세제지원 일몰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및 소득공제 폐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되, 연간 300만원의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던 것은 폐지함
    - 소득공제의 폐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되, 연 급여가 8,8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및 소득공제 폐지의 이유는 과도하고 중복적인 비과세·감면의 합리화임
  - 그런데 2009년 세제개편안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연 급여가 8,8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폐지를 2013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급여가 8,800만원 이하자의 비중은 2%에 못 미치는 아주 작은 수준임
  
-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을 배제
  - 현재 생계형저축의 예금과 조합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각각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음

-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서민층 지원이라는 유사 목적의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함
- 중복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부부기준 총 1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저축 상품 가입이 가능해져서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다.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교육용역 중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1차적으로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2010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함
  -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면세제도를 꼭 필요한 부문에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대한 과세 전환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단기적으로 볼 때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대한 과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영리목적 사설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귀착효과, 물가상승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성인 남녀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시험인 면허시험을 대행하는 등 공익적인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과 영리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리목적 사설학원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유흥주점 등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중간단계 면세 시 최종판매자의 세부담 및 정부의 세수가 부당하게 증가하는 ‘누적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임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배제는 누적효과를 발생시켜 부당하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세원을 확보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이는 적절한 조세원리에 입각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배제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5.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 금번 세제개편안은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개편안의 내용 중 목적세 폐지를 유예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에너지·교통·환경세 폐지법률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다른 목적세와 동시에 처리한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는 개편안을 제안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제1부

#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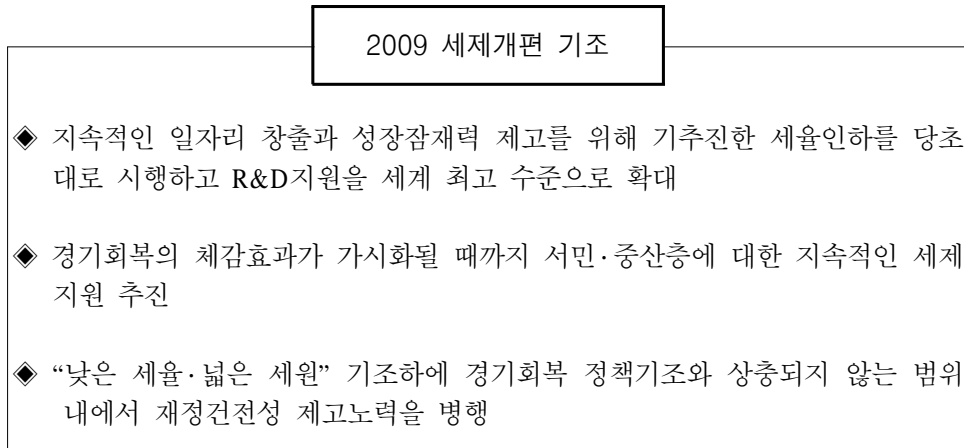
- I. 2009년 세제개편안 개요
- II.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
- III.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 I. 2009년 세제개편안 개요

2009년 세제개편안은 경기 하락세는 진정되고 회복세가 시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국내외 경제여건, 서민 생활의 불안정,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의 결과로 악화된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3가지 기조와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세제개편안의 3가지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기추진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하고 R&D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둘째,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하에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정성 제고노력을 병행한다.

이상의 기조 하에 설정된 4대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중소기업·농어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영세자영업자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저소득근로자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지원,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업 세제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R&D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지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개방화를 위한 국제조세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셋째, 고소득·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제고가 추진된다. 고소득·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추진되고, 탈세자에 대한 조세범처벌기준이 현실화된다. 소액금융 공여 및 수수자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가임대소득과약 시스템이 구축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대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축소되고, 금융관련 과세제도가 정비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와 지원목적을 달성한 감면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그림 1] 2009년 세제개편 3대 기조와 4대 중점 추진 방향



2009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2010~2012년 기간 중 세수 증가규모는 전년도 대비 방식 기준으로 10조 4,9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7조 7,000억원, 2011년에는 2조 2,600억원, 2012년에는 5,3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수가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는 세목은 법인세로 2010~2012년 기간 중 총 6조 4,2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에 따라 2010년에만 5조 2,000억원의 법인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외 소득세가 2조 4,700억원 증가하고, 부가가치세가 4,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단위: 억원)

세 목	2010	2011	2012	2010~2012
소득세	12,600	8,600	3,400	24,700
법인세	52,300	10,700	1,100	64,200
부가가치세	1,500	1,900	800	4,300
개별소비세	2,100	300		2,400
증권거래세	2,500	200		2,700
인지세	100			100
교통에너지환경세	700	100		800
관세	2,400	400		2,800
교육세	600	100		700
농특세	2,100	200		2,300
총 계	77,000	22,600	5,300	104,90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협조

한편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증가되는 세수 10조 4,900억원 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과표 8,800만원 이상을 고소득자·대기업으로 본 지난 해 분류 방식에 따르면 약 79.6%,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이상을 고소득자로 보는 OECD기준에 따르면 약 90.6%로 전망된다.

[표 2]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 귀착

	OECD 기준	지난해 분류방식
고소득자·대기업 부담	9.5조원 (90.6%)	8.4조원 (79.6%)
중산층·중소기업 부담	1.0조원 (9.4%)	2.1조원 (20.4%)
총 세부담	10.5조원	10.5조원

주: OECD 기준은 근로소득이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의 150%(4,8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중산·서민층으로 보는데 비해, 지난해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비적용자(과표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했었음.

## II. 2009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총평

### 1. 정책목표의 적절성

행정부가 2009년 세계개편안을 통하여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목표의 설정이 현재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와 정책목표들 간에 내용상 상충관계는 없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세계개편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그 당시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행정부의 처방이 담겨있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중장기 세계개혁의 방향은 세계의 정상화, 성장잠재력의 확충,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원, 미래사회에 대비한 세제구현 및 세제간소화로 설정되어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주가상승, 환율하락 등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은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과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가 회복기에 진입하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 등의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요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해 단행한 감세정책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과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2009년 세계개편안에서는 3대 정책기조와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대 정책기조와 4대 중점과제는 우리 경제의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위기 이후 미래 도약을 준비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설정된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단기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고려할 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기조와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조세정책이 적절한 정책수단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걷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표가 개입하다보니 비과세·감면제도가 늘어나면서 세원이 축소되고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세원이 축소되다보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조세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

세계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정책목표가 제시되면, 각각의 추진 목표 상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9년 세계개편안에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각종 비과세·감면을 확대시키게 되는데,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들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의 특성 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세계개편 때마다 추진과제로 포함되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또한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50%에 가까운 상황에서 조세를 통한 서민·중산층 지원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세계개편의 중점 추진 과제로 서민·중산층 지원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행정부가 세계개편을 통해 너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세계개편은 조세의 일차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초과부담이 작은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를 거둬야 하며, 각종 비과세·감면의 경우 부정적인 외부성을 치유하거나 긍정적인



외부성을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세법체계의 간소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 안정화 정책은 세제를 통한 지원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분야별 검토

### 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대폭적인 감세가 이루어졌고, 고소득계층이 대부분의 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하여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 세제지원 규모만 놓고 본다면 대폭적인 감세에 비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물론 저소득계층의 경우 부담하는 세금이 거의 없으니 줄여주려 해도 줄여 줄 세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이 정부의 생색내기에만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를 통하기 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극빈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서민·중산계층의 고령화 및 출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미래의 노동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근원이 될 수 있다. 고소득계층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은 과감하고 강력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출산율이 저하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그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출산율 저하는 직장여성들의 육아의 어려움, 높은 자녀교육비 등에 기인한다. 결국 직장근처의 충분한 탁아시설의 확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육아보조금 등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재정지출이 수반된다

고 하여 이러한 정책을 외면하여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세제개편안의 획기적인 내용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의 월 세소득공제제도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그러나 주거공간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주거비용이 부족한 사람(근로자, 실업자, 영세사업자 모두)은 누구나 지원이 되어야 한다. 방법적으로 볼 때 소득공제 보다는 당사자의 소득수준, 주거공간의 크기, 주거비용, 가족수를 감안하여 지출하는 월세에 대하여 보조금의 형태로 근로자, 실업자, 영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채택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과세취급을 우호적으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한 세제지원 강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행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R&D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물론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지원제도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려준다고 기업이 R&D투자를 끝없이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좋은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 품목 구매지원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개의 경우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은 같은 기능의 저효율 제품에 비하여 고가이다. 따라서 고소득계층이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대해 지원을 하면 결국 고소득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 합병세제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과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외화포시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또한 역외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대상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까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방송업, SW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과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 고용의 창출은 이러한 소규모 지식기반형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세액감면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다. 과표 양성화 등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

지난 1951년 제정된 이후로 그간 부분 개정에만 그쳐 법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에 대하여 거래 1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탈세액 규모나 범칙행위의 상습성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량을 부과하는 조세포탈죄 양형체계를 변경하여 포탈행위 상습 여부, 탈세규모 및 비율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함으로써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오히려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5배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으로 인하하고, 차등화 함으로서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탈세범에 대한 형량은 완화되었다. 이에 비하여 이에 관련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범죄처벌을 강화하였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탈세를 조장한 경우, 벌금 수준을 5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탈세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처벌이 균형을 잃어버렸다.

한편, 상가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이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 구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건전재정 회복을 위한 노력 병행

2009년 세계개편안에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 및 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하였다. 또한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하를 유예하고 2008년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일몰 종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2009년 세계개편안에 포함된 이상의 조치는 2008년 세계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감세 기조와 일정정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한세 강화 등의 정책은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세계개편 방향에 비추어 볼 때 감세정책이 바람직하다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감세정책과 관련하여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한 친성장적 조세개혁의 필요성, 국제간 조세경쟁 등을 고려할 때 세율인하를 포함한 법인세 감세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는 반면, 우리나라 조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소득세율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 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 세율인하를 포함한 감세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 감세정책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과 재정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세율 인하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9년 세계개편안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조절이라는 제도도입 목적과 무

관하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다소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정부가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조절 목적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지속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고소득자 및 대법인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이외에도 다양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 되고,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축소되고,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조치들은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단,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는 3주택 이상 전세물량이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의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 및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택 명의 변경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로 인한 과세형평성 훼손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비과세 일몰은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폐지하여 세제지원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연금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폐지를 2013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금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비중이 아주 작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세제지원의 일몰을 2012년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정부가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 III.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 1. 행정부발표 세수변화 규모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추계는 각 항목들에 대해 적절한 가정을 하고, 과세표준과 소득공제의 차이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2010~2012년 세수변화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2조 4,700억원, 법인세 6조 4,200억원, 부가가치세 4,300억원, 증권거래세 2,700억원 등이다. R&D 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과 비과세·감면 폐지 등에 따른 세수증가 요인을 감안한 순세수 증가는 약 10조 4,900억원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항목에서의 세수증가가 2010년에 5조 2,000억원으로 가장 크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항목과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에 의한 세수증가가 각각 1조원, 5,000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세제개편이 영구적인 세수변화를 가져오는 항목이지만, 금융기관 원천징수 환원(10년 47,700억원, 11년 4,300억원)은 일시적 세수효과에 해당한다.

[표 3]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목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단위: 억원)

세 목	2010	2011	2012	2010~2012
소득세	12,600	8,600	3,400	24,700
법인세	52,300	10,700	1,100	64,200
부가가치세	1,500	1,900	800	4,300
개별소비세	2,100	300		2,400
증권거래세	2,500	200		2,700
인지세	100			100
교통에너지환경세	700	100		800
관세	2,400	400		2,800
교육세	600	100		700
농특세	2,100	200		2,300
총 계	77,000	22,600	5,300	104,900

자료: 기획재정부(2009)

[표 4]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항목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주요항목)

(단위: 억원)

개정 내용		세목	2010	2011	2012	합계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씩 축소	소득세	1467	133		1600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 총급여 1억원 초과분: 5% → 1% - 총급여 8천만원~1억원: 5% → 3%	소득세	1100	100		1200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 의무화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소득세	8300	1700		10000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보증금의 일부(60%)만 과세 - 시행시기: 2011년부터 시행	소득세			1,300	1300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일몰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중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2010.1.1 이후 20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소득세		4000	1000	5000

(단위: 억원)

개정 내용		세목	2010	2011	2012	합계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몰시한을 3년 연장 (2009년말 → 2012년말)하되, 소득공제 폐지	소득세				1260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축소: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소득세		1900		1900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 인하 (8% → 7%, 11% → 10%)하되 100억원 초과 기업은 '08년 수준(13%, 15%)으로 환원	법인세		3200		3200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금융기관에 한하여 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되던 것을 폐지하고,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법인세	52000			52000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 품목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 - 세율: 5%; 시행기간: 5년 한시 시행 (2010.4.1 이후 출고분부터 과세)	개별소비세	500	500		1000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공모펀드 증권거래세 감면,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	증권거래세	4455	405		4860

## 2. 주요항목 검토1)

세수추계에 필요한 과표를 구성하는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가정이나 세수변화를 추계하는 방법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추정하는 비용의 차이는 거의 없다. 여기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 중 몇 가지 개선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정부의 세수변화 규모 발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기준연도 대비 방식과 전년도 대비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세법개정효과 계산방법에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세법개정으로 인해

1) 2009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를 제외한 부분은 이영환·신영임(2009)을 인용하였다.



변동되는 세수의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한 가지 방식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기준과 통일성을 가지기 위하여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세목에서는 전년도 대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인지세법 개정항목 등 일부 항목에서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sup>2)</sup>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세수효과의 규모는 크게 5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항목과 ‘조세지출 일몰기한 연장’ 항목에서 두드러진다. 우선, 2010년에 5조 2,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은 단기적으로는 세수증가가 이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세수 변화 없이 법인세 징수 시점을 당기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일반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14%)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한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sup>3)</sup>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가 부활하여,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14%)와 동일하게 적용된다.<sup>4)</sup>

행정부는 이에 대한 세수효과를 2010년에 5.2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년도 대비 방법’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기준연도 대비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다. 왜냐하면 2011년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어져서 세수가 감소하지만(세수효과가 A라고 가정), 2012년의 세수증가분을 미리 당겨 걷는 증가 효과(세수효과가 B라고 가정)가 나타날 것이므로,

2) 기준연도 대비방식과 전년도 대비방식의 차이점 및 기준연도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영환·신영임(2009) 참고; 예시를 든 세법개정의 비용추계 항목은 부록 참고.

3) 즉, 금융기관이 회사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생길 경우, 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법인이 원천징수 하지 않고, 은행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납부함.

4) 즉, 은행은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며, 법인이 은행에 채권자격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함께 납부함.

A와 B가 상계되어, 2011년의 세수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데, 이것은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납기일 문제와 관련된 세무행정 측면에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일 뿐, 기업의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표 5]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조원, %)

세 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2013
법인세수 (원천징수: 소득발생연도에 징수)	0	+5.2	+5.2	+5.2	+5.2	
금융기관이자소득세수 (소득신고: 소득발생 다음연도에 징수)	+5.2	+5.2	0	0	0	
합계	+5.2	+10.4	+5.2	+5.2	+5.2	
기준년(2009)대비 방식	-	+5.2	0	0	0	+5.2
전년도 대비 방식	-	+5.2	-5.2	0	0	0

기준연도 대비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많이 포함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사점을 지닌다. 정부에서는 일몰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년대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세수효과가 ‘0’이므로 효과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개정이 없었더라면 일몰은 종료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세입 증가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세수증가가 없어졌다면, 이것을 세수감소로 계상하는 것이 세법개정의 효과를 더 잘 나타낸다.

예를 들어, 법인세와 관련하여 일몰이 연장되는 조세지출항목에 한해서, 지난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연평균 3,066억원,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연평균 1,354억원이다. 세법개정을 하지 않아 일몰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매년 이와 같은 규모(약 4,420억원)의 세수증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세수증가가 없어진다면 세수감소를 계

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sup>5)</sup>

둘째, 한 세목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동시에 개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sup>6)</sup> 세금이 다음 식을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T(\text{tax}) = (Y - D)t - C \quad [\text{식 1}]$$

단, Y=소득; D=소득공제; t=세율; C=세액공제

단일세율을 가정할 경우<sup>7)</sup>, 소득공제와 세율이 동시에 개정될 때의 세수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위 식을 전미분하는 것이다. [식 1]을 전미분하면 아래와 같다.

$$dT = \frac{\partial T}{\partial t} dt + \frac{\partial T}{\partial D} dD \quad [\text{식 2}]$$

$$dT = (Y - D)dt - t \cdot dD \quad [\text{식 3}]$$

[식 3]은 세율, 소득공제의 극소변화량과 세수(T)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런데 현실의 세법개정 비용추계에서 [식 3]을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 5) 조세지출 금액의 경우,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원대상의 변화, 지원 내용의 변화가 심한 등 법안의 개정이 잦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연평균 금액만큼 세수감소가 추가로 일어난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6)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최저한세율의 변경과 법인세 공제·감면항목의 조정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 7) 단일세율 가정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정도를 제외하면 소득세·법인세 등의 많은 세금이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세법개정의 효과를 계산할 때 단일세율에 대한 가정은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대부분의 법인이 최고세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에도, 일부 공제항목의 개정으로 인해 자신이 해당하는 과세구간이 변동되어 명목세율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elta T = (Y - D) \times \Delta t - t \Delta D \quad [\text{식 4}]$$

[식 4]는  $\Delta t$ 와  $\Delta D$ 가 극히 작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현실의 세법개정에서는  $\Delta t$ 와  $\Delta D$ 가 상당한 크기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Delta t$ 와  $\Delta D$ 가 크기를 가진다는 것은 변수  $t$ 와  $D$ 의 값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식 4]의  $t$ 와  $D$ 에 행정부와 같이 세법개정 전의 값을 대입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T' = (Y - D + \Delta D)(t + \Delta t) - C \quad [\text{식 5}]$$

$T'$ 은 세법개정 후의 세입

$$\Delta T = T' - T = (Y - D) \Delta t + t \Delta D + \Delta D \Delta t \quad [\text{식 6}]$$

$\Delta t$ 와  $\Delta D$ 가 극히 작을 때는 위 식 중에서  $\Delta t \Delta D$  항은 무시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나 세법개정 비용추계에서는 그 크기를 무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sup>8)</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는 다음 식과 같이,

$$\Delta T = (Y - D) \Delta t + t \Delta D \quad [\text{식 7}]$$

세율변경의 효과인  $(Y - D) \Delta t$ 와 소득공제 변경의 효과인  $t \Delta D$ 를 각각 따로 계산하여 단순 합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elta t \Delta D$  항을 무시하게 된다. 단일세율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여, 더 일반적으로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1), (2), (3)을 모두 더한 것이 언제나 (4)와 같지는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sup>9)</sup>

8) 가령 소득( $Y$ )이 100조원인 경우, 소득공제( $D$ )가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세율( $t$ )가 0.2에서 0.1로 변하는 세법개정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세법 개정 전의 세입은 18조원, 개정 후의 세입은 8조원이 된다. 이때 세수의 변화분( $\Delta T$ ) - 10조원을 분해하여 보면,  $(Y - D) \Delta t = -9$ 조원,  $t \Delta D = -2$ 조원,  $\Delta D \Delta t = 1$ 조원이 된다. 행정부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이 1조원( $\Delta D \Delta t$ )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9) 앞의 각주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되, 세액공제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변화했다고 가

[표 6] 각 파라미터가 변화할 경우의 세입 변화금액

(1) 세율만 변화한 경우	$(Y - D_1)(t_2 - t_1)$
(2) 소득공제만 변화한 경우	$(Y - D_2)t'_1 - (Y - D_1)t_1$
(3) 세액공제만 변화한 경우	$c_1 - c_2$
(4) 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변화한 경우	$[(Y - D_2) \times t_2 - c_2] - [(Y - D_1) \times t_1 - c_1]$

주:  $t'_1$ 은 소득공제가 변화한 후에 적용되는 세율.

자료: 이영환·신영임(2009).

셋째, 향후 5년 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향후 일정시점의 기준을 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년을, 5년을 혹은 10년을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법 개정의 영향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세목별로 그 크기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35호)」 제5조에 따라 법안의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간을 대상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이 기간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작성대상과 동일한 기간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정부의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향후 3년간 비용추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향후 과표양성화나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적인 세입기반의 확대로 세수감소의 크기가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 추정된 결과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수치는 향후 5년을 대상으로 작성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향후 5년에 대해 세수추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세수변화규모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율만 변화했을 경우 세수변화는 -9조원, (2) 소득공제만 변화했을 경우 -2조원, (3) 세액공제만 변화했을 경우 -1조원이다. 이 때, 각각의 경우를 합하면 총 세수변화는 -12조원이지만, (4) 모두 변화했을 경우의 세수변화는 -11조원이다. 행정부는 (1)+(2)+(3)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세수감소는 (4)만큼 일어난다.

넷째, 세수 변화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나타난 금액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효과를 훨씬 밑돌고 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는 대부분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통하여 추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향후 3년간 세수변화분은 10조 4,9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비용추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72%인 7조 6,014억원에 불과하다.<sup>10)</sup> 이것은 비용추계서에 모든 항목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의 효과가 작은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sup>11)</sup> 명시적으로 재정의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의 개정에는 의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이 법률에 규정된 정부의 의무이다.<sup>12)</sup> 따라서 전체 세수변화분의 27%인 약 3조원에 대한 세수변화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것은 정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2009년 혹은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세법에 대한 세수효과에 대한 언급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수증가규모는 2008년도 세제개편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 및 높은 과표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등 2010년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정책의 세수감소 효과가 제

10) 이영환·신영임(2009)에 따르면, 2008년 세제개편의 경우, 정부의 당초 발표는 35조 2,626억원인 반면, 비용추계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금액은 53.2%인 18조 7,742억원에 불과했다.

1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에서도 소요비용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으로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를 추계의 예외사유로 하고 있다. 한편, 약 1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이 항목들에 대한 세수변화 금액도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국회법」 제79조의 2에 따르면 의원·위원회나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형식과 내용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35호)」,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594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무는 「국가재정법」 제87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자세한 형식과 내용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다.

외된 수치이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행정부 발표수치를 기준(전년대비 방식)으로 추정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7조원의 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sup>13)</sup> 물론 이 부분은 2009년 세제개편의 효과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법에 규정된 의무는 아니며,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세입예산안에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고려 할 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를 발표할 때 내년도 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연도의 세법개정에 의한 실질적인 세수변화 분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표 7] 2010~2012년 세수효과(전년도 대비 방식)

(단위: 억원)

	2008년 개편효과	2009년 개편효과	합계
합계	-174,872	104,900	-69,972
소득세	-41,497	24,700	-16,797
법인세	-94,078	64,200	-29,878
부가가치세	-1,903	4,300	2,397
개별소비세	-6,730	2,400	-4,330
증권거래세	0	2,700	2,700
교통에너지환경세	0	800	800
관세	10	2,800	2,810
교육세	-4,860	700	-4,160
종부세	-5,090	0	-5,090
농특세	-20,724	2,300	-18,424
인지세	0	100	10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협조(2009). 2008년 세수효과는 이영환·신영임(2009b) 참고.

13) 이것은 2008년도 세제개편이 2010~2012년에 미치는 효과인 -17.5조원, 2009년 세제개편 효과인 10.5조원을 합친 숫자이다.

14) 예를 들어, IMF의 재정투명성 관련 권고지침(2001)에서 우발채무의 내역 및 부채전환 가능성을 계량화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연장선에서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 제2부

## 주요 쟁점 분석

- I.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유보
- II.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논의
- III.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 IV.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선
- V.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 V. 2009년 세제개편안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VII. 법제도 정비를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
- VIII. 조세범 처벌제도 확대 방안
- IX.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 방안



# I.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유보

## 1. 현황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기 회복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의 결과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sup>16)</sup>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내용 중 하나는 2008년 세계개편을 통해 이루어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중 2010년부터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유보할 것인가이다. 이에 여기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과정에 대해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찬반 논란,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의 효과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sup>17)</sup>

2008년 세계개편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였다. 소득세의 경우 2009년 귀속소득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하하였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을 8%에서 6%로 2%포인트 인하하고,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과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각각 17%와 26%에서 16%와 25%

15)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결과에 따르면 실질 성장률은 2009년 -1%, 2010년 3.8%로 전망된다.

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9년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2.1% 적자이며,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5.0% 적자, 국가채무는 GDP대비 35.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치인 통합재정수지 0.6% 흑자, 관리대상수지 2.4% 적자, 그리고 GDP대비 34.1% 수준의 국가채무와 비교할 때 적자폭이 증가하고 국가채무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17)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유보 문제는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세계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09년 세계개편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이라 그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로 1%포인트 인하하였다. 그리고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35%로 동결하였다. 2010년 귀속소득분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하하였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은 동결하고,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과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각각 16%와 25%에서 15%와 24%로 1%포인트 인하하였다. 그리고 2009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하되지 않은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 2% 포인트 인하하였다.

[표 8]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과세표준 1,200 만원 이하	8	6	6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17	16	15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26	25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35	35	33

주: 소득 귀속 연도에 대한 세율을 의미함

법인세의 경우 높은 과세표준과 낮은 과세표준을 가르는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낮은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08 과세연도부터 11%로 낮추고, 2010년부터는 10%로 추가 인하하였다. 그리고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2009과세연도에는 22%로 2010과세연도부터는 20%로 인하하였다.

[표 9] 법인세율의 변화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5	25	22	2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5	11	11	10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	11	11	10

주: 소득 귀속 연도에 대한 세율을 의미함

한편 행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에 따른 후속대책의 성격을 가지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총급여 8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 하였으며, 이후 총급여 50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액을 10만원 씩 하향조정하여 총급여 1억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5%로 인하하였다.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하였다.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대로 최저한세율을 인하(8%→7%, 11%→10%)하되, 1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는 20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인 13%와 15%로 환원하였다.

[표 10] 최저한세율의 변화

구 분		2008 이전	2009년 → 2010년	
			현 행	개 정
중소기업		10%	8% → 7%	(좌 동)
대법인	과표 100억원 이하	13%	11% → 10%	(좌 동)
	100억원초과 1,000억원 이하			14% → 13%
	1,000억원 초과	15%	14% → 13%	14% → 15%

행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세원을 넓히는 방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일몰종료하기로 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82년 도입되어 2009년까지 28년의 기간 중 무려 20년 동안 운영이 되었던 제도이다. 경기 호황기에도 계속 지원이 되면서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최근 IMF 정책협의단도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주된 수혜대상은 대기업이며, 특히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를 수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찬반의견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유보를 주장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불황과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세 수입 확보차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이 OECD국가들 중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하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5%로, 2006년 OECD국가의 평균 35.1%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법인세율의 경우 최고세율이

2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편 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등을 2009년 세계개편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추가적인 세수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의 소비와 투자 진작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율인하 유보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율의 투자유발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성효용·강병구, 2008), 현재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법인세 부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편 소득세율 인하는 유보하되 법인세율 인하는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 조세정책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율 인하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2009)에 따르면 조세개혁의 우수사례로 인용되는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는 12%대로 낮추었으나,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감세 정책이 갖는 거시경제적 역할을 고려할 때 감세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임주영(2009)은 감세가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제고와 세원증대를 유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제조세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의 해외 투자 유치,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의 인하 유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정부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유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안중범(2009)은 감세 유예 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소득세율 인하 및 법인세율 인하 유보로 인한 부작용은 큰 반면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개선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는 2010년 귀속소득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수효과의 대부분이 2011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법인세율 인하는 추진 하되, 소득세율 인하 유보는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단,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의 경우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안종범, 2009).

### 3. 분석

#### 가. 소득세

##### (1) 소득세율 인하와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지출

2008년 세제개편 중 소득세 세율 인하의 주요 목표는 ‘중산·서민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지원’이었다. 이에 여기서는 소득세율 인하가 실제 중산·서민층 민생안정 및 소비지출 증가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의 변화

소득세율 인하가 실제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지출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여기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2008년 원자료에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분위별 가구의 가처분소득 변화를 계산하였다. 이때 소득세율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2008년 소득세법 기준 가처분 소득, 1단계 소득세율 인하가 이루어진 2009년 소득세법 기준 가처분소득, 그리고

2단계 소득세율 인하가 예상되어 있는 2010년 소득세법 기준 가처분소득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인적공제의 확대 및 근로소득 공제의 축소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세율 인하만을 고려한 가처분 소득과 세율인하와 공제제도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였다.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가구의 경상소득 평균은 3,305.6만원이며, 2008년 세법을 적용할 경우 가처분소득은 3,142.8만원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를 고려할 경우 가처분소득은 3,163.1만원으로, 소득세율 인하에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인적공제 확대를 고려할 경우 가처분 소득은 3,166.7만원으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2010년 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하면 가처분소득은 3,173.2만원으로 증가한다.

[표 11] 세법 개정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변화

(단위: 천원)

	경상 소득	2008년 세법	2009년 세법		2010년 세법
			세율 변화	공제변화+ 세율변화	세율 변화
전 체	33,056	31,428	31,631	31,667	31,732
1	4,295	4,285	4,287	4,289	4,289
2	10,197	10,104	10,128	10,134	10,134
3	16,014	15,774	15,830	15,845	15,846
4	21,661	21,144	21,244	21,276	21,285
5	26,786	26,041	26,174	26,214	26,231
6	32,272	31,254	31,429	31,472	31,500
7	38,356	36,879	37,111	37,162	37,212
8	46,046	44,053	44,347	44,406	44,482
9	56,741	53,643	54,038	54,100	54,237
10	85,870	78,438	79,094	79,162	79,513

주: 각년도 세법은 각년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함

2008년 세제개편에 포함된 소득세율 인하가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도 세법 기준 가처분소득과 2009년과 2010년 소득세법 적용 시 가처분 소득을 비교하였다. 2009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20.3만원(0.65%) 증가하였고, 소득세율 인하와 공제제도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3.9만원(0.76%) 증가하였다. 2010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인하까지를 고려할 경우 가구의 가처분 소득 평균은 304만원(0.97%)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액과 증가율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과세미달자가 많고 소득세 납부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증가규모와 증가율은 그리 크지 않았다. 2008년 세제개편이 모두 반영된 2010년 세법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0.4만원(0.09%) 증가한데 반해, 소득 10분위의 가처분소득은 107.5만원(1.37%)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9년 소득세법 기준 가처분소득과 2010년 소득세법 기준 가처분소득을 비교해 보면, 2008년 세제개편 중 2010년에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세 인하로 인한 저소득층의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sup>18)</sup>, 누진적인 소득세제로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세 인하가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18) 2006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자 중 47.4%, 종합소득자 중 37.5%가 과세미달자이다. 한편 본 분석에서는 과세미달 가구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과세미달자 통계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본 분석은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표 12] 2008년대비 가처분소득의 변화 및 변화율

(단위: 천원,%)

	2009년 세법				2010년 세법	
	세율		공제변화+세율변화		세율	
	변화	변화율	변화	변화율	변화	변화율
전 체	203	0.65	239	0.76	304	0.97
1	2	0.05	4	0.09	4	0.09
2	24	0.24	30	0.30	30	0.30
3	56	0.36	71	0.45	72	0.46
4	100	0.47	132	0.62	141	0.67
5	133	0.51	173	0.66	190	0.73
6	175	0.56	218	0.70	246	0.79
7	232	0.63	283	0.77	333	0.90
8	294	0.67	353	0.80	429	0.97
9	395	0.74	457	0.85	594	1.11
10	656	0.84	724	0.92	1,075	1.37

주 1. 각년도 세법은 각년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세법을 의미함.

2.: 변화는 2008년 가처분소득 대비 변화를 의미.

### 민간 소비진작 효과

행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구간별 소득세율 2%p 인하(8~35%→6~33%)로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연간 3.6조원 증가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이 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전승훈·신영임(2009)이 추정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추정해 본 결과 역시 소득세율 인하가 민간소비를 일정정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한계소비성향 0.3856을 감안하면, 5조 9,000억원의 소득세 감세로 인한 소비증가액은 약 2조 2,750억원으로, 2008년 기준 민간소비지출 557조 5,947억원의 약 0.41% 수준이 된다. 2009년도 민간소비지출이 2008년도의 민간소비지출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소득세 인하 정책은 민간소비지출을 약 0.4~0.5%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3] 가계의 한계소비성향과 감세안의 효과

	한계소비성향	소득세 감세규모	민간소비 진작효과
전체	0.3856	5조 9,000억원	2조 2,750억원

자료: 전승훈 신영입(2009)

위의 분석은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한계소비성향을 고려한 분석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총소득 기준 0.6426(소득 1분위)에서 0.3092(소득 10분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세제개편에 의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층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소득세 인하 시 소비진작효과가 가계의 평균적인 한계소비성향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보다 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율 인하의 경우 그 혜택이 소득수준이 높은 분위에 더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실제 민간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율 인하 유보와 연관시켜 논의해 보면, 2010년에 예상되어 있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의 유보가 당초 세제개편의 중요한 목표였던 ‘민간소비 진작’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4] 가구특성별 한계소비성향(소득수준)

	총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전체	0.3856	0.3235	0.2825
1분위	0.6426	0.6282	0.1593
2분위	0.5180	0.4671	0.1937
3분위	0.4618	0.4082	0.1986
4분위	0.4545	0.3908	0.2491
5분위	0.4317	0.3650	0.2863
6분위	0.4128	0.3456	0.3113
7분위	0.3868	0.3225	0.3101
8분위	0.3673	0.3059	0.2996
9분위	0.3590	0.2959	0.3474
10분위	0.3092	0.2537	0.3277

자료: 전승훈 신영임(2009)

## (2)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소득세제

앞서 2010년 과세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가 민생안정 및 민간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소득세 현황 및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및 바람직한 조세체계를 고려할 때에도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를 타국과 비교해 보면, 현행 4단계 과세구간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6단계, 영국의 2단계, 독일의 4단계, 일본의 6단계와 비교할 때 중간정도에 해당하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2006년 OECD국가의 평균 35.1%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2.6배 수준으로 OECD 평균 2.4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율 구조는 외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19)</sup>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향후 소득세수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소득세수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거나 세원을 넓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율을 높이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노동공급 유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종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소득세의 세원을 넓히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과세구간의 수나 세율 수준이 OECD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세율 인하가 그리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현황을 고려할 때, 2008년 세제개편에 의한 소득세율 인하가 바람직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적조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소득세율의 인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효율성을 고려한 조세원칙을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노동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큰 자본에 대한 세금을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에서는 최근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이중소득세제(Dual Income Tax; DIT)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성공적인 세제개혁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율은 12.5%로 대폭 인하하였지만, 개인소득세율은 42%를 유지하고 있다.

## 나. 법인세율

법인세율 인하 유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와 성장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 연구의 결과는 국가의 발전단계, 법인세 인하 수단, 법인세 인하 시점 등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는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여건 못지않게 중장기 세

19)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2008);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2008); 전병목(2008) 등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제개편 방향과 국가 간 조세경쟁이라는 조세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서는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와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및 국가 간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율 인하 유보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법인세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 인하가 성장률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 경제이론 및 기존 연구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결과이다. Lee and Gordon(2005)은 각 국가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과 해당국가의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성장이 빨랐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Lee, Sung and Kim(2008)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Lee, Sung and Kim(2008)은 세계 70여개 국가의 법인들의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가-산업별 유효 법인세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유효법인세율과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산업과 국가의 성장률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낮은 법인세 부담이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진국에 이르면서 낮은 법인세 부담이 산업과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선진국 진입 이전까지는 (자본) 투입을 통한 자원동원형의 성장이 가능하나 선진국 진입 단계에 이르러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인적자본 등을 통해서만이 성장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all & Jorgenson(1967), Djankov, Ganser, McLiesh, Ramalho, and Shleifer,(2008) 등 국외 연구 뿐만 아니라, 김유찬(2003), 김진수·박형수·안중석(2003), 김현숙(2004), 김우철(2005), 신현대·이정기(2007) 등 국내 연구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Friedman and Lav(2001)은 법인세율 인하로 확보된 자금이 신규투자에 충당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들면서,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적인 투자촉진 정

책으로 적절한 것도 아니며, 반드시 투자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윤재·김경표(2004), 이계원 외(2006), 성효용·강병구(2008) 등의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김우철(2005)의 경우에서도 법인세부담 인하의 투자증대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현대·이정기(2007)는 법인세율보다는 타인 자본비용 및 부채비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 분석에 포함된 시기, 법인세율 인하 수단 등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현·손원익(2006)은 세제혜택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투자인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 및 성장 효과를 중심으로 2010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대한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이상으로 법인세 개편 시 고려해야 할 국제적 조세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및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동향

중장기 세제개편과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개혁과 관련된 여건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황은 고령화와 개방화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수입 기반은 축소되는데 반해 지출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해 조세가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개방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조세경쟁에 노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은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을 낮게 설정하여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낮은 법인세 부담이 경제 환경이 유사한 국가들 간 외국자본 유치에 위한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2008년 기간 중 법인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법인세율을 인소한 나라는 OECD 30개 국가 중 총 27개 국가이며, 이중 20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법인세율을 20%포인트 이상 인하하였으며, 슬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도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이상 인하하였다. 이 기간 중 OECD국가의 법인세율의 평균 인하폭은 5.4%포인트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OECD국가를 법인세율이 낮은 순서로 순위를 매겼을 때 우리나라의 순위는 2000년 11위에서 2008년 16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표 15] OECD 국가의 법인세율(1981년~2008년)

	1981 (A)	1985	1990	1995	2000 (B)	2005	2008 (C)	B-A	C-A
아일랜드	45.0	50.0	43.0	38.0	24.0	12.5	12.5	-21.0	-11.5
아이슬란드	-	-	-	-	30.0	18.0	15.0	-	-15.0
폴란드	-	-	-	40.0	30.0	19.0	19.0	-	-10.0
슬로바키아	-	-	-	40.0	29.0	19.0	19.0	-	-11.0
헝가리	-	-	40.0	18.0	18.0	16.0	20.0	-	2.0
터키	-	-	-	-	33.0	30.0	20.0	-	-13.0
체코	-	-	-	41.0	31.0	26.0	21.0	-	-10.0
스위스	33.0	31.9	30.6	28.5	24.9	21.3	21.2	-8.1	-3.8
오스트리아	55.0	55.0	30.0	34.0	34.0	25.0	25.0	-21.0	-9.0
그리스	45.0	49.0	46.0	35.0	40.0	32.0	25.0	-5.0	-15.0
덴마크	40.0	50.0	40.0	34.0	32.0	28.0	25.0	-8.0	-7.0
네덜란드	48.0	43.0	35.0	35.0	35.0	31.5	25.5	-13.0	-9.5
핀란드	61.5	61.8	44.5	25.0	29.0	26.0	26.0	-32.5	-3.0
포르투갈	48.96	55.1	40.2	39.6	35.2	27.5	26.5	-13.8	-8.7
이탈리아	36.3	46.4	46.4	53.2	37.0	33.0	27.5	-0.8	-9.5
한국	-	-	-	-	30.8	27.5	27.5	-	-3.3
스웨덴	57.8	56.6	53.0	28.0	28.0	28.0	28.0	-29.8	0
영국	52.0	40.0	34.0	33.0	30.0	30.0	28.0	-22.0	-2.0
노르웨이	50.8	50.8	50.8	28.0	28.0	28.0	28.0	-22.8	0
멕시코	42.0	42.0	36.0	34.0	35.0	30.0	28.0	-7.0	-7.0
호주	46.0	46.0	39.0	36.0	34.0	30.0	30.0	-12.0	-4.0
뉴질랜드	45.0	45.0	33.0	33.0	33.0	33.0	30.0	-12.0	-3.0
스페인	33.0	35.0	35.0	35.0	35.0	35.0	30.0	2.0	-5.0
독일	60.0	60.0	54.5	55.1	52.0	38.9	30.2	-8.0	-21.9
룩셈부르크	-	-	-	-	37.5	30.4	30.4	-	-7.1
캐나다	51.8	52.8	44.3	44.6	43.6	36.1	33.5	-8.2	-10.1
벨기에	48.0	45.0	41.0	40.2	40.2	34.0	34.0	-7.8	-6.2
프랑스	50.0	50.0	42.0	36.7	37.8	35.0	34.4	-12.2	-3.3
미국	49.7	49.8	38.7	39.6	39.3	39.3	39.3	-	-0.1
일본	-	-	50.0	50.0	40.9	39.5	39.5	-10.4	-1.3
평균	47.5	48.3	41.2	36.7	33.6	28.6	26.6	-11.6	-5.4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0),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및 국세청 홈페이지, 안중범(2008)에서 재인용.



[표 16]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화

법인세율 변화	1981-2000(㉑-㉒)	2000-2008(㉓-㉔)
인상	이탈리아(2.0), 스페인(0.8)	헝가리(2.0)
0-10% 인하	그리스, 멕시코,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 한국, 프랑스, 스위스, 호주, 스페인, 벨기에, 멕시코, 덴마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10-20% 인하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스
20-30% 인하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30% 이상 인하	핀란드	

한편 법인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주요지표들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GDP대비 법인세 비중을 비교해 보면 2006년 현재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체코, 일본,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 9개국만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며, 나머지 21개 국가는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상의 비교결과에 따르면 국제조세경쟁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표 17] OECD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단위: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캐나다	3.8	3.5	4.3	3.6	2.7	2.5	2.9	4.4	3.5	3.7
멕시코										
미국	4.0	3.6	2.9	2.8	1.9	2.4	2.9	2.6	3.0	3.3
호주	3.4	3.6	3.2	3.2	2.6	4.0	4.2	6.3	6.0	6.6
일본	4.0	5.2	4.3	5.5	5.7	6.5	4.3	3.7	4.2	4.7
한국			1.3	1.9	1.9	2.5	2.4	3.3	4.1	3.8
뉴질랜드	5.0	4.6	3.4	2.4	2.6	2.4	4.4	4.2	6.3	5.8
오스트리아	1.8	1.5	1.6	1.4	1.4	1.4	1.4	2.0	2.2	2.2
벨기에	1.9	2.2	2.7	1.9	2.2	2.0	2.3	3.2	3.5	3.7
체코							4.6	3.5	4.5	4.8
덴마크	1.4	1.0	1.2	1.4	2.2	1.7	2.3	3.3	3.9	4.3
핀란드	2.5	1.7	1.7	1.2	1.4	2.0	2.3	5.9	3.3	3.4
프랑스	1.8	2.1	1.8	2.1	1.9	2.2	2.1	3.1	2.4	3.0
독일	2.5	1.8	1.5	2.0	2.2	1.7	1.0	1.8	1.7	2.1
그리스	0.3	0.3	0.7	0.8	0.7	1.4	1.8	4.1	3.2	2.7
헝가리							1.8	2.2	2.1	2.3
아이슬란드	0.5	0.6	0.8	0.7	0.9	0.9	0.9	1.2	2.0	2.4
아일랜드	2.3	2.5	1.4	1.4	1.1	1.6	2.7	3.7	3.4	3.8
이탈리아	1.8	1.7	1.6	2.3	3.1	3.8	3.5	2.9	2.8	3.4
룩셈부르크	3.1	4.5	5.1	5.8	7.0	5.6	6.6	7.0	5.8	5.0
네덜란드	2.6	2.4	3.1	2.8	3.0	3.2	3.1	4.0	3.8	3.4
노르웨이	1.1	1.1	1.1	5.7	7.3	3.7	3.8	8.9	11.8	12.9
폴란드							2.8	2.4	2.1	2.4
포르투갈						2.2	2.4	3.9	2.8	3.0
슬로바키아								2.6	2.8	3.0
스페인	1.4	1.3	1.3	1.1	1.4	2.9	1.7	3.1	3.9	4.2
스웨덴	2.1	1.7	1.8	1.1	1.7	1.6	2.8	3.9	3.7	3.7
스위스	1.3	1.6	2.0	1.6	1.7	2.0	1.8	2.7	2.6	3.0
터키	0.5	0.6	0.6	0.6	1.1	1.0	1.1	1.8	1.7	1.5
영국	1.3	3.2	2.2	2.9	4.7	3.6	2.8	3.6	3.4	4.0
평균	2.2	2.3	2.2	2.3	2.6	2.6	2.7	3.6	3.7	3.9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친성장적 조세개혁의 필요성과 국제적 조세경쟁을 고려할 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법인세 인하의 단기적 효과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은 법인세가 가장 크며, 그 다음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2008년 세제개편에 의한 법인세율 인하 중 2010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18] 조세제도의 한계초과부담

	일반소비세	수입세	노동과세	자본과세
2000	0.1267	0.0898	0.1658	0.2258
2001	0.1312	0.0840	0.1861	0.2678
2002	0.1526	0.1006	0.2180	0.3146
2003	0.1551	0.0962	0.2120	0.3374
2004	0.1553	0.0963	0.2123	0.2990

자료: 김승래·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4. 검토의견

### 가. 법인세율 인하 기조의 유지

성장적 조세개혁의 필요성과 국제적 조세경쟁을 고려할 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법인세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2008년 세

세제개편에 의한 법인세율 인하 중 2010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 인하 기조의 유지가 단기적으로 투자 촉진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기여할 것이다.

#### 나.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 재검토

2009년 세제개편안의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는 2010년 귀속소득분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20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는 2010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의 후속조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부는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대법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해질 수 있다. 2008년 세제개편에서 최저한세율을 인하한 것은 법인세율이 2단계에 걸쳐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조정한 것이다. 최저한세제도는 조특법상 각종 감면을 받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 수준은 일반 법인의 세부담 수준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 만일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세부담은 감소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해진다.

둘째,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장적 조세개혁의 필요성과 국제적 조세경쟁을 고려할 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는 이러한 조세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 다.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방안에 대한 검토

소득세율 인하가 민생안정에 미치는 효과 및 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현황과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 인하가 시급한 과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할 때 2010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적용되는 높은 과세 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라. 소득세율 인하 유보를 전제로 고소득층에 소득세 감면 축소 폐지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 중 고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축소는 소득세율 인하 유보를 전제로 폐지되어야 한다.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는 고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율 인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율 인하가 유보된다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는 폐지되어야 한다.

## II.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논의

### 1. 현황

최저한세 제도는 조특법상 각종 감면을 받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 감면전 과표 ×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조특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모든 감면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첫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법인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게 되며, 둘째, 과도한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재정 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표 19] 최저한세 계산방법

<p>* 법인의 경우 최저한세: <math>\text{Max}(A, B)</math> A: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적용대상 특별상각비·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계산한 본래의 과세표준×세율) - 최저한세 대상 세액감면·세액공제 B: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전 과세표준×최저한세 세율 (본래의 과세표준+적용대상 특별상각비·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소득공제)×최저한세 세율</p> <p>*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로 함</p>
---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고 담세력 있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예정이다(조특법 제132조). 기존에 2구간으로 되어있던 과표 기준 금액이 3구간으로 세분화되

고, 과표구간이 높은 구간은 최저한세율이 2008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과표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기업은 2009년 14%에서 2010년 15%로, 과표구간이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기업은 2009년 11%에서 2010년 13%로 최저한세율이 인상된다. 과표 구간이 낮은 구간(100억원 이하)은 당초대로 2009년에 비해 세율이 인하된다. 이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표 20]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의 변화

(단위: %)

소득 귀속연도	현행				개정안
	2007	2008	2009	2010~	2010~
법인세율					
과표 2억원 초과-	25	25	22	20	20
과표 1-2억원	25	11	11	10	10
과표 1억원 이하	13	11	11	10	10
최저한세율					
일반기업(과표1000억원초과)	15	15	14	13	15
일반기업(과표100-1000억원)	13	13	11	10	13
일반기업(과표100억원이하)	13	13	11	10	10
중소기업	10	8	8	7	7

주: 굵은 선 안의 내용이 2009년 세계개편안의 내용을 나타냄.

## 2. 기존 문헌

최저한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최저한세 제도가 기업의 세부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둘째, 최저한세율 변경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sup>20)</sup> 이 장에서는 첫 번째 논

20) 또 다른 문제로 최저한세 제도로 인한 기업의 행태변화(이익유연화) 문제를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박춘래·김성민(1995)에 의하면, 최저한세 계산시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점과 관련된 기존 문헌을 정리하고, 다음 장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수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 논점은 다시 두 가지 문제로 분리할 수 있다. 우선 최저한세 제도의 존재로 인해 공평성이 향상되었는가, 다음으로,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조세감면 제도의 유효성이 하락하였는가의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저한세율을 인상할 경우,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최소한의 조세부담을 지게 되거나,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기업들이 부담하는 유효세율이 비슷해질 수 있는 반면, 조세감면제도의 유효성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한세율에 대한 어떤 적정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각 목적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저한세 제도 전후의 기업의 세부담 변화에 대한 자료의 미비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최저한세 적용기업에 대한 통계는 2008년도에 발간된 국세통계연보에 처음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최저한세 제도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1991년부터 도입)되기 이전에는 조세지원 종합한도제가 운영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는 특별비용한도, 소득공제한도, 세액공제한도와 같이 각 항목별로 일정한도까지만 조세감면 제도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김지범(2004)에 의하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방위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 조차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됨으로써 세부담이 수직적으로 공평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라도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최저한세 제도는 특정기업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의 종합적인 한도를 정하고 최소한의 조세부담을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기업들이 부담하는 유효세율이 비슷해지도록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도 달성할 수 있게 한다(전병욱·최원욱, 2007).



[표 21] 최저한세 도입 이전의 제도

〈1990년까지: 조세지원종합한도제〉	〈1991년부터: 최저한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비용한도: 소득금액의 50%</li> <li>- 소득공제한도: 소득금액의 50%</li> <li>- 세액공제한도: 산출세액의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감면전 과표의 12%</li> <li>- 개인: 감면전 세액의 30%</li> </ul>

그러나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지출을 양적인 면에서 통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2006년 최저한세로 인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세수 금액은 1조 7,973억원으로 신고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 26조원의 6.8%를 차지하였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전체 일반기업의 1.2%인 818개의 일반기업이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1조 5,989억원(총부담세액의 7.8%)의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 기업의 과세표준을 전체 신고법인 과세표준의 14.8%인 14조 4,383억원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8.3%인 23,815개의 중소기업이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1,984억원(총부담세액의 3.3%)의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였다.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은 전체 신고법인 과세표준의 8.7%인 3조 811억원이었다.

[표 22] 2006년도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수, 과세표준, 조세감면배제 현황

	(A) 최저한세적용기업	(B) 신고법인	A/B (%)
수(개)	24,633	352,647	7.0
- 일반기업	818	67,235	1.2
- 중소기업	23,815	285,412	8.3
과세표준(억원)	175,194	1,330,566	13.2
- 일반기업	144,383	976,441	14.8
- 중소기업	30,811	354,125	8.7
비감면세수 혹은 총부담세액(억원) <sup>1)</sup>	17,973	265,356	6.8
- 일반기업	15,989	205,559	7.8
- 중소기업	1,984	59,797	3.3

주: 1)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경우, 최저한세로 인해 감면받지 못한 세수를 나타내며, 신고법인의 경우, 총부담세액(신고기준)을 의미함. 총부담세액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자료협조.

최저한세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며, 있더라도 대부분 최저한세 도입을 전후한 기간을 비교하여, 최저한세 도입 혹은 세율변경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향상되었는지와 관련된 연구이다. 박춘래·장호영(1994)은 1991~1992년에 160개 기업의 실제세무자료를 가지고 최저한세를 적용하기 전의 가상의 경우와 적용한 후의 실제 세부담의 진계수 및 변동계수를 비교한 결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권순용·심한택(2000)은 최저한세 도입 전후(1990, 1991년)의 법인의 세무자료를 가지고 조세부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 최저한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sup>21)</sup> 그 결과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또는 부채비율이 증가한 기업이거나 신규기업은 최저한세의 시행으로 조세부담이 증가하였고, 성장성 또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최저한세의 시행으로 조세부담이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도 예상과 달리 조세부담이 감

21) 통제변수(기업특성변수)는 자본집약도의 증감, 수출비율의 증감, 기업연혁, 기업규모, 부채비율의 증감, 성장성, 수익성 등.

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장호영(2003a, b)은 최저한세 도입 전후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법인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니계수, 변동계수, 잔차변동계수 등을 계산한 결과 최저한세 도입 이후 전체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전병욱·최원욱, 2007).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인 전병욱·최원욱(2007)에 의하면, 2003~2004년의 법인세 세무자료를 사용한 결과, 2004년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라 유효세율의 변동계수, 부담세액의 잔차변동계수로 측정된 조세부담의 불평등도지수가 하락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향상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가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의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과거 자료에 치우쳐 있으며, 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Grasso and Frischmann(1992)는 조세부담의 크기를 이용하여 변동계수를 측정할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소득의 크기의 차이 때문에 변동계수가 공평성을 과소평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병욱·최원욱(2007)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납세자의 실제 조세부담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의 크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모형을 추정한 다음 실제 조세부담과 추정된 조세부담의 차이인 잔차에 대한 변동계수인 잔차변동계수를 이용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의 유효세율은 총자산, 부채비율, 감가상각대상자산, 수출비율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저한세로 인한 감면제도의 유효성에 관련된 연구 역시 거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법인세 관련 지원제도들은 첫째, 최저한세 제도로 인하여 감면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나, 둘째, 지원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셋째, 조세행정적인 측면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최저한세 제도의 영향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로 인하여 감면받지 못한 세수의 금액을 포함한 기업의 미시자료가 있어야 하나, 현재 관련된 공개자료는 없는 상태이므로 지원제도의 효과성과 관련된 기존연구에 대해 정리한다.

박기백·정재호(2003)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시에 적용되는 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지원의 경우,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투자 관련 조세지출의 경우, 투자의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므로, 투자라는 이유로 조세지원을 하기보다는 외부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원하거나, 임시투자세액공제처럼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안전·에너지절약 등 외부효과가 파생되는 분야만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수의 손실을 많이 야기한 반면, 경기조절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고, 일몰연장이 꾸준히 연장되어 일관성을 상실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종료시점에 대한 지표 선정 및 활용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조세감면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활용도가 낮은 것부터 가능한 한 축소·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sup>22)</sup>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 63.7%의 기업이 최대한 활용(20.1%) 혹은 적절히 활용(43.6%)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거나(42.7%),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모르기 때문(39.2%)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최저한세(7.6%)와 중복적용의 배제(5.3%) 등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한제도 역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활용이 부진한 이유로 지적되었다.<sup>23)</sup>

[표 23]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 정도

(단위: %)

최대한 활용	적절히 활용	활용부진	미활용	활용여부 모름
20.1	43.6	19.7	6.8	9.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07.12),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22) 중소기업중앙회(2007. 12),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2007년 8월에서 10월까지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제조업 중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23)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2009) 참고.

[표 24]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 부진 이유

활용 부진 이유	비율(%)
지원대상이 아님	42.7
지원제도 내용과 적용방법을 모름	39.2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만 감면	7.6
중복적용의 배제로 감면이 적음	5.3
감면을 낮아 감면혜택이 거의 없음	4.1
기타	1.2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07. 12).

한편, 김우철(2008)에 의하면, 최저한세의 존재가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납세 협력비용을 증진시키므로, 중장기적으로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와 연계하여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납세협력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우철(2008)은 미국을 제외하면 최저한세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를 찾기 어렵고,<sup>24)</sup> 최근 미국의 세제개편안도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최저한세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3년간 연평균 수입 700만 달러 미달 기업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기업의 95% 이상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24) 조사결과, 미국, 캐나다, 대만, 멕시코,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에는 최저한세제도는 없으나, 감면제도 별로 산출세액의 10~20%의 별도 감면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에는 법인세에 대한 최저한세가 없다.

### 3. 검토의견

상기 연구결과들에 비추어보면, 최저한세 제도가 조세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켰다거나, 기업에 대한 공평성 향상에 역할을 하였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된 자료의 공개와 연구가 더 필요하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은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대법인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다해질 수 있는 점, 중장기적 세제개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점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2008년 세제개편에서 최저한세율의 인하는 법인세율의 인하와 맞추어 조정된 것이다. 만일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과다해질 수 있다.

한편 김우철(2008) 등은 최저한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최저한세를 폐지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과 비교할 때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부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저한세제도는 조세의 왜곡을 줄이고 각종 감면지원으로 인한 세법의 허점의 보강장치 역할을 하여, 조세회피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Burman et al, 2002). 때문에 최저한세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각 조세지원제도의 목적과 그에 대한 효과성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폐지는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 기준 중소기업의 8.3%인 23,815개의 중소기업이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1,984억원의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법인세수 29조 3,442억원의 약 0.7%이기 때문이다.

### III.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 1. 현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당기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10%(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를 공제해 주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2008년 감면액(잠정)은 2조 1,035억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세감면금액(29.6조원)의 7.1%, 법인세수(39.2조원)의 5.4%에 달하는 규모로 그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감면내용** :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증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를 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①+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① 당기분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② 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공제율(시행령)** : ① 당기분 : 사업용자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3%  
사업용자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10%  
② 증가분 : 10%
- **공제대상 업종(시행령)**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등 29개 업종
- **공제 대상시설(시행규칙)**
  - 제조업 등 : 모든 설비투자(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 제외)
  - 건설업 : 설비투자 및 포크레인 등 중장비 포함
  - 도소매업·물류산업 : 설비투자 및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포함 등
- **일몰시한(시행령)** : 2009.12.31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당시 경기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한시운용을 전제로 도입되었으나, 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총 28년 기간 중 무려 20년 동안 운영이 되었던 제도이다. 경기 호황기에도 계속 지원이 되면서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기반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종료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가 법인세율 인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상반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임시투자세액공제 연혁 및 운용현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시행초기 제조업과 광업의 설비투자 만이 공제대상이었으며, 공제율에서 국산 및 외국산의 차별이 있었다. 2000년부터 공제율 적용에서 내·외산의 구별 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말까지는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및 제조대기업의 노후시설 대체 투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1999년 이후 모든 사업용 자산 및 비제조업으로 점차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 과학·기술서비스업, 의료기관운영업·노인복지서비스업, 전문·종합휴양업 등14개 업종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되었다.

2008년 말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하여도 공제(3%)를 허용하였고, 올해 5월부터 당기분 투자 이외에 증가분(직전 3년 평균투자 초과금액의 10%)방식에 대하여도 공제를 확대하였다.



[표 25]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혁

구 분	세액 공제율	적용대상
<b>&lt;1 차&gt; : 2.5년</b> 1982.1.1~12.31	10%(6%)	제조업, 광업
<b>&lt;적용중지&gt; : 2.6년</b>		
<b>&lt;2 차&gt; : 1.5년</b> 1985.6.28~1986.6.30 1986.7.1 ~1986.12.31	10%(3%) 10%(3%)	제조업, 광업
<b>&lt;적용중지&gt; : 2.6년</b>		
<b>&lt;3 차&gt; : 5.6년</b> 1989.7.1~1990. 6.30 1990.7.1~1990.12.31 1991.1.1~1991.12.31 1992.1.1~1992.6.30 1992.7.1~1992.12.31 1993.1.1~1993.12.31 1994.1.1~1994.12.31	10%(3%) 10%(3%) 10%(3%) 10%(0%) 10%(0%) 7%, 중소기업(0%) 7%, 중소기업(0%)	제조업, 광업  제조업, 중소기업 *대기업 : 자동화설비 제조업, 중소기업
<b>&lt;적용중지 &gt;: 2.6년</b>		
<b>&lt;4 차&gt; : 3년</b> 1997.6.3 ~ 1998.6.30  1998.7.1 ~ 1999.6.30  1998.8.10  1999.7.1 ~ 1999.12.31 2000.1.1 ~ 2000.6.30	10%(10%)  10%(10%)  10%(10%) 7%(외국산차별 없음)	중소기업: 모든 설비투자 제조대기업: 노후시설(내용연수 80% 이상) 개체 투자 제조대기업: 에너지절약·생산성 향상 시설 추가 제조대기업: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비제조업 포함
<b>&lt;적용중지&gt; : 6월</b>		
<b>&lt;5 차&gt; : 9년</b> 2001.1.1 ~ 2001.12.31 2002.1.1 ~ 2002.12.31 2003.1.1 ~ 2003.6.30 2003.7.1 ~ 2004.6.30  2004.7.1 ~ 2004.12.31 2005.1.1 ~ 2005.12.31 2006.1.1 ~ 2006.12.31 2007.1.1 ~ 2007.12.31 2008.1.1 ~ 2008.12.31 2009.1.1 ~ 2009.12.31  2009.5.21	10% 10% 10% 15%  15% 10% 7% 7% 7% 10%,3%(수도권 과밀업제한역내 투자)	8개 업종추가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뉴스 제공업 등  2개 업종추가 : 의료기관·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개 업종추가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추가 공제대상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추가(3%) 증가분방식 공제 허용: 직전3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의 10%

주: ( )는 외국산

2008년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감면액(잠정)은 2조 1,035억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세감면금액(29.6조원)의 7.1%, 법인세수(39.2조원)의 5.4%에 달하는 규모이다. 2008년도 임시투자세액감면액 2.1조원 중 2조원(96.7%)은 법인에 대한 귀속분이며, 691억원(3.3%)은 개인에 대한 귀속분이다.

[표 26] 국세감면액·법인세수·임시투자세액공제감면액 추이

(단위: 억원)

	총국세감면액	법인세수	임시투자세액 감면액		
			합 계	법인세	소득세
2000	132,824	178,784	4,388	4,117	271
2001	137,298	169,751	7,025	6,778	247
2002	147,261	192,431	6,528	6,309	219
2003	175,080	256,327	13,019	12,778	241
2004	182,862	246,783	18,134	17,806	328
2005	200,169	298,055	25,439	24,577	862
2006	213,380	293,622	20,681	19,894	787
2007	229,652	354,173	18,247	17,538	709
2008	296,321	391,545	21,035	20,344	691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2007년 귀속소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8,664개 신고법인 중 중소기업이 7,872개, 일반기업(대기업)이 792개 법인으로 각각 전체의 90.9%, 9.1%의 비중을 보였다. 신고법인 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15.8%인 2,764억원, 일반기업이 84.2%인 1조4,774억원의 감면을 받아 1개 법인 당 중소기업은 평균 35백만원, 일반법인은 평균 18억 65백만원의 감면실적을 보였다.

[표 27]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법인세)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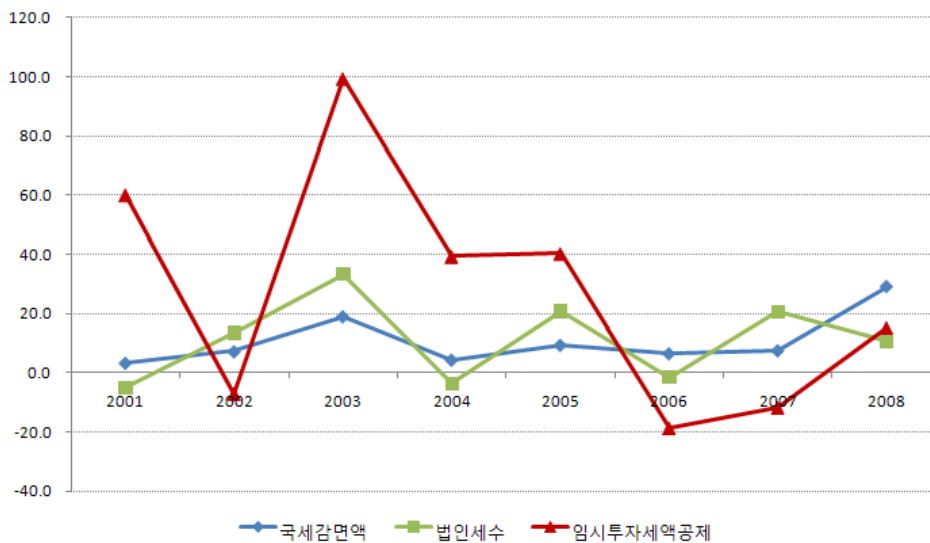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개)

	신고 법인수	감면금액	금액/법인수
합 계	8,664(100.0)	1,753,806(100.0)	202
중소기업	7,872(90.9)	276,362(15.8)	35
일반기업	792(9.1)	1,477,444(84.2)	1,86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

2000년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 등 연평균증감률 추이를 보면, 국세 감면액이나 법인세수 증감률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변동폭이 매우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 증감률은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면 법인세수와 대체로 동조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변동폭은 더욱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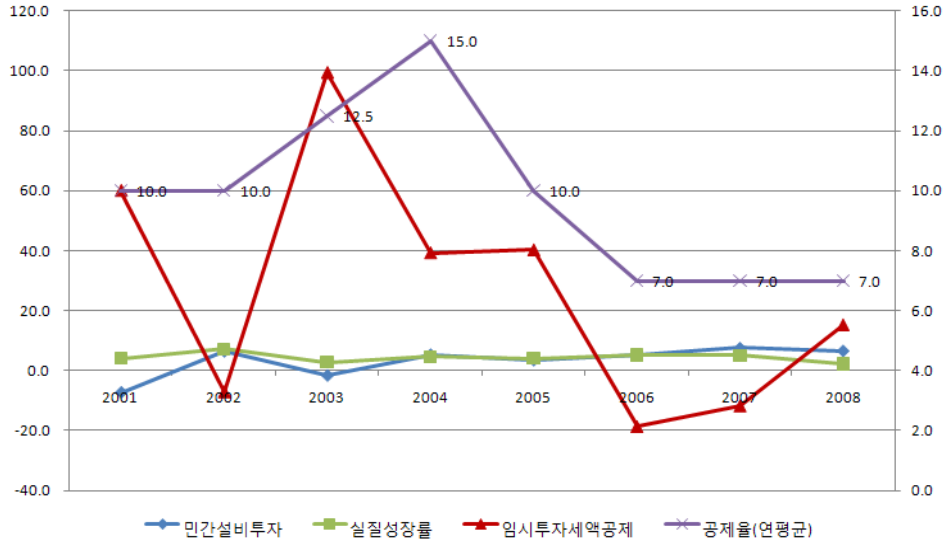
[그림 2] 국세감면액·법인세수·임시투자세액공제감면액 연평균증감률 추이



한편 아래 표와 그림의 2001년 이후 민간설비투자 증감률·실질성장률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감면액 증감률 및 공제율 추이에서도 같은 기간 민간설비투자 증감률이나 실질성장률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 증감률의 변동폭이 상당히 큰 경향을 보여준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율과 공제대상 설비투자추이를 반영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과의 관계도 공제율의 변화가 공제대상 설비투자의 변화를 견인하였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해연도 공제율이 주로 다음연도 공제 감면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율의 변화가 다음연도 임시투자세액 감면액과 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그림 3] 민간설비투자·실질성장률·임시투자세액감면액 증감률 및 공제율 추이



김유찬·주기중(2004)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나 유효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설비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는데, 그 이유로 첫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공제대상 및 제도(존폐)의 잦은 변화를 겪었고,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수혜대상 투자의 범위가 전체 설비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좁아 투자를 촉진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박명호(2008)는 총 민간설비투자에서 임시투자대상 투자의 비중이 2006년 기준으로 35.8% 정도이며, 1997년 이후 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 28] 민간설비투자·임시투자세액감면액 및 공제율 추이

	민간설비투자 증감율	실질성장률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 증감율	공제율(연평균,%)
2001	-7.4	4.0	60.1	10.0
2002	6.5	7.2	-7.1	10.0
2003	-1.7	2.8	99.4	12.5
2004	5.3	4.6	39.3	15.0
2005	3.5	4.0	40.3	10.0
2006	5.3	5.2	-18.7	7.0
2007	7.5	5.1	-11.8	7.0
2008	6.6	2.2	15.3	7.0

주: 1. 2003년 상반기 공제율 10%, 하반기 15%

2. 민간설비투자는 2005년 계열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년도.

### 3. 문헌연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기조절효과나 투자촉진효과 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제도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철인 외(1999)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경기조절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세수 손실을 많이 야기시키는 반면, 제도시행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경기변동 폭을 더욱 크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기조절효과가 낮다고 보았다. 고종권(2004)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개별적 유효성과 제도 상호간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에 비해 시행된 기간에 자본지출액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투자유인과는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기간에 나타나는 자본지출액 감소 현상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에 반하는 증거라기보다는 해당 기간에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설비투자 감소현상을 포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대로 김유찬·주기중(2004)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나 유효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설비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다. 분석결과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수혜대상 투자가 자주 변화였고, 수혜대상 투자의 범위가 전체 설비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좁아 투자를 촉진하기에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모든 설비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개별기업에게 최저한세의 제한을 없앤다면 법인세율 인하에 비하여 투자유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의 정책시차(time lag)로 인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기조절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기조절용이 아닌 항구적인 투자지원제도로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명호(2008)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 및 총민간설비투자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공제적용 대상 투자간의 안정적인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2001~2006년 기간에 민간설비투자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 제도가 경기에 상관없이 공제 적용대상기업의 투자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그 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경기조절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완방안으로 박기백(2003)은 제도 시행기간을 원칙 6개월로 하고, 종료시점에 경기선행지수 등을 기준으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4. 검토의견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종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가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경제인연합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다

음해의 설비투자가 3.5% 감소할 수 있다며,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제도의 일몰종료는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절을 목적으로<sup>25)</sup>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되어 실제 경기 조절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가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됨에 따라 설비투자증가율과 실질성장률이 높은 시기에도 대규모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루어져 왔다.<sup>26)</sup>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과잉투자로 이어져 경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손원익 외(2006), 박기백 외(2006) 등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가 하강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지금처럼 상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할 때, 일몰 종료의 시점이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종료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경제성장률이 2009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현재의 경기 상황을 경기 하강기로 볼 수는 없으며, 현재의 경기상황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

25)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2009.5.21>

26) 이철인 외(1999); 임주영(2004); 김유찬(2004); 박기백 외(2006) 등 많은 연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기조절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27)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 실질성장률을 -1.0%, 2010년 실질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가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기업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긍정적인 외부성을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sup>28)</sup>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투자의 수익이 개별기업에 귀속되므로 단순히 투자라는 이유로 조세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 중에서도 첨단설비, 노후설비개체, 생산성 향상시설 등은 정부가 별도의 세제지원을 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보다 효율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박기백·정재호, 2003). 따라서 고용·환경·안전·에너지 절약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파생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신성장동력 산업 등 R&D, 에너지·환경 분야 등에 대한 투자지원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8) 전승훈(2004)에서는 조세지출의 활용을 외부효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치유하는 데에 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표 29] 2008년 이후 투자·R&D 세제지원 확대 현황

지원 항목	주요 내용	개정연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 제11조) 확대	· 기업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조정(7%→10%)	2008.9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 제25조의2) 확대	· 투자금액의 10%→20% · 일몰연장(2008년말 → 2009년말)	2008.9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제9조신설)	· 제도 재도입(일몰:2013.12.31)	2008.1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 제10조) 확대	· 일몰영구 폐지 · 중소기업 당기분 방식 세액공제율 상향(15→25%) 등	2008.12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 제25조의3) 확대	· 감면율 확대(7→10%)	2008.12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영 제37조)	· 일몰연장(2008년 말→2010년 말)	2008.12
대학의 R&D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조특 제73조)	· 대학시설비·연구비 등 기부금손금산입한도 확대(50→100%)	2008.1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제10조)	·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당해연도 지출 × 20%(중소기업 30%) · 원천기술 획득을 위한 R&D: 당해연도 지출 × 25%(중소기업 35%)	세제개편안(2009.9)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제10조의2)	· 적용시한 3년 연장 : 2012.12.31까지	세제개편안(2009.9)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 대한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적용시한 3년 연장 : 2012.12.31까지	세제개편안(2009.9)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감면(조특법 제12조의2)	· 적용시한 3년 연장 : 2012.12.31까지	세제개편안(2009.9)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 적용시한 3년 연장 : 2012.12.31까지 · 적용대상 확대 :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팅프로그램 추가	세제개편안(2009.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2)	· 적용시한 3년 연장 : 2012.12.31까지 · 대기업에 대한 한도액 설정(산출세액의 30%)	세제개편안(2009.9)

## IV.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선

### 1. 현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그 부담을 줄여주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역시 일부 경감해 주기 위한 일종의 편의적 과세제도이다. 현행법 상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소액부징수자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소매업,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감된 부가가치율의 일몰을 연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 이후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조제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종사자는 20%,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종사자는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종사자는 4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④항의 조항에 의거 2009년 12월까지 각각 15%와 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원래 이 조항은 2007년 12월로 일몰이 정해져 있었으나, 2007년 세제개편 당시 일몰이 연장된 바 있다.

[표 30]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1.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소매업은 2009.12.31까지 거래분 15% 적용	20%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3.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음식·숙박업은 2009.12.31까지 거래분 30% 적용	40%

## 2. 관련 쟁점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제 상의 중요한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영세사업자에게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나, 현재에는 납세편의의 목적 이외에도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도 간이과세제도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간이과세제도가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세부담을 경감 또는 탈세하는 장치로 인식되어 간이과세제도의 순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김주택, 2006).

이처럼 간이과세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된 조세체계에 기인한다. 현행 부가가치세제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실제 부가가치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 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는 영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자격을 유지할 유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소득축소보고 및 탈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업종이라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세율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로 인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율을 높이는 정책을 구사하는 반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납부의무 면제금액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의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조화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간이과세자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감면된 부가가치율의 일몰 연장 등을 통해 간이과세자로 남을 유인을 오히려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김승래 외, 2007).

이에 여기서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제 상의 지원이 타당성 및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감된 부가가치율 일몰연장의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

세자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현행과 같은 부가가치세율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해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의 하나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 3. 분석

#### 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의 부가가치세율 인하의 타당성 검토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20%, 30%, 40%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맞추어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업종을 배치하고 있다. 현재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11개 업종이 있다. 그런데 이들 11개 업종 중 행정부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대해서만 2006년 이후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 주고 있으며,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이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한 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들을 실제 부가가치세율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의 적정성 및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논의를 위해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text{부가가치율} = [(\text{매출 과세표준} - \text{매입 과세표준}) / \text{매출 과세표준}] \times 100$$

$$\text{매출과표} = \text{과세분매출} + \text{영세율 매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동일 업종이라도 연도에 따라 부가가치율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2003년에는 부가가치율이 27.44%였지만, 2004년 이후에는 35~37%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음식업의 부가가치율은 2004년에는 49.10%이지만, 2005년과 2007년은 26% 수준이고, 2006년에는 6.22% 수준이다.

두 번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동일한 업종 간에도 부가가치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20%로 동일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 소매업의 2007기준 실제 부가가치율은 제조업이 36.86%, 전기·가스·수도업이 16.67%, 소매업이 9.46%로 차이가 컸다.

셋째, 법령에서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의 괴리가 심하였다. 최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 농림수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실제 부가가치율이 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실제 부가가치율보다 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율이 더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실제 부가가치율과 법령 상의 부가가치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제조업, 농림수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현행 간이과세제도 하에서 사업자의 세부담이 감소하지만,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현행 간이과세제도 하에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일반과세자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파악된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일정정도 완화시켜줄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표 31]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3년 평균
제조업	27.44	36.23	37.47	35.30	36.86	36.54
전기·가스·수도업	18.69	21.59	25.26	-	16.67	20.96
소매업	-	9.11	9.12	10.43	9.46	9.67
농·임·어업	54.90	54.17	54.01	49.97	53.01	52.33
건설업	-	37.79	49.36	49.22	49.70	49.43
부동산임대업	-	-	11.18	30.66	25.89	22.57
서비스업	55.15	53.76	57.84	54.76	54.44	55.68
음식업	-	49.10	26.12	6.22	25.95	19.43
숙박업	-	-	24.23	30.01	33.09	29.11
운수·창고·통신업	-	-	41.31	37.31	39.15	39.25

주 1. 표 안에서 ‘-’는 부가가치율이 음수인 경우를 의미하며, 3년 평균을 구할 때에는 ‘-’는 고려하지 않았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 나. 일몰연장의 효과 분석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감면된 부가가치율의 일몰 연장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여기서는 김승래 외(2007)에 사용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간단한 모의실험을 진행한다.<sup>29)</sup> 분석 자료는 2008년 국세통계연보 상의 2007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자료를 사용하였다. 신고인원은 업태별 과세분 매출 인원에서 업태별 납부의무 면제자 인원을 뺀 수치이다. 그리고 과세분 과세표준은 각 업태별 과세분 매출 과세표준에 납부의무 면제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그런 다음 각 과세기간 별 과세분 과세표준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였다. 이때 감면된 부가가치율의 일몰 연장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부가가치율은 정상적인 부가가치율 수준과 감면된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한시적 인하로 인한 매출세액의 차이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간이과세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29) 분석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김승래 외(2007)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정리하였다.

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경감,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여기서는 우선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액을 납부의무 면제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후 여기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경감,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합계에 납부의무 면제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비율을 곱한 액수를 더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였다. 이때 계산된 공제세액은 감면된 부가가치율이 적용된 상황에서의 공제세액이 된다. 그런데 감면 부가가치율 일몰 종료로 인해 정상적인 부가가치율이 적용될 경우의 공제세액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여기서는 우선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액을 납부의무 면제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액수에 감면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대비 정상 부가가치율의 비중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후 여기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경감,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합계에 납부의무 면제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비율을 곱한 액수를 더하여 정상 공제세액을 계산하였다.

이상과 같이 계산 결과를 사용할 경우, 감면된 부가가치율 일몰을 연장할 경우 약 437.6억원의 추가적인 세수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의 경우 대략 81.3억원, 음식업은 348.1억원, 숙박업은 8.2억원의 추가적인 세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감면된 부가가치율 일몰을 연장 시 세수규모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감면 부가가치율 일몰 종료에 따른 신고인원 1인 당 세부담 증가 규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반기 당 세수 증가액은 소매업의 경우 약 3.1만~3.4만원 규모이며, 음식업은 약 10.3만~10.5만원, 숙박업은 약 6.5만~7.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감면된 부가가치율 적용 시의 세부담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소매업은 약 56~60%, 음식업은 100~106%, 그리고 숙박업은 약 45~46%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인하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일정정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감면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에 따른 정책효과 모의실험

(단위: 백만원, 명)

	신고 인원	과세분 과세표준	매출세액			공제세액			정책 효과
			정상	감면	차이	정상	감면	차이	
2007년 제 1기 자료									
소매업	123,966	1,354,735	27,095	20,321	6,774	16,277	13,398	2,879	3,895
음식업	165,419	2,213,273	88,531	66,398	22,133	54,387	49,337	5,050	17,083
숙박업	5,752	48,122	1,925	1,444	481	721	614	107	374
2007년 제 2기 자료									
소매업	126,444	1,401,218	28,024	21,018	7,006	16,695	13,925	2,770	4,236
음식업	169,254	2,297,063	91,883	68,912	22,971	57,370	52,126	5,243	17,727
숙박업	6,206	54,657	2,186	1,640	547	788	682	105	441

- 주 1.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중 정상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이고, 감면은 감면된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임.  
 2. 인원은 업종별 과세분 매출 신고인원에서 납부의무 면제자 인원을 제한한 것임  
 3. 과세분 과세표준은 업종 별 과세분매출의 과세표준액에 (1 - 납부의무면제자 인원 비율)을 곱한 것임

[표 33] 감면 부가가치율 일몰 종료에 따른 신고인원 당 세부담 증가

(단위: 백만원, 원, 명, %)

	신고인원	총 규모		신고인원 당 평균		비중 (B/A)
		감면 세액	정책효과	세액 (A)	정책효과 (B)	
2007년 제 1기 자료						
소매업	123,966	6,923	3,895	55,848	31,416	56.25
음식업	165,419	17,061	17,083	103,139	103,269	100.13
숙박업	5,752	830	374	144,277	65,061	45.09
2007년 제 2기 자료						
소매업	126,444	7,093	4,236	56,098	33,503	59.72
음식업	169,254	16,785	17,727	99,173	104,738	105.61
숙박업	6,206	957	441	154,269	71,081	46.08

- 주 1. 감면세액은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규모임.  
 2. 정책효과는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에서 감면부가가치세율 일몰 종료를 가정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제한 값임.  
 3. 비중은 감면 부가가치세율 일몰 종료 시 증가하는 세부담의 비중을 보여줌.



## 다.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지원 방식의 타당성

앞서 논의에 따르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제 상의 혜택은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며, 부가가치율 인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일정정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이들 세 개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일괄적으로 25%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소매업의 경우 30%의 부가가치율 적용을 통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세부담을 공평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음식업의 경우 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도 여전히 간이과세자가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된다. 즉, 감면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업종 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에게만 부가가치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시켜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체계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잦은 세법 개정애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특정 업종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별로 인한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며, 특혜업종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을 수도 있다(김승래 외, 2007).

셋째,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인하한다면, 당연히 일반과세자보다 더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제조업, 농림수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상향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형평성이 훼손되고, 이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업종으로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을 수도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감면 부가가치율 인하가 아니라, 전면적인 부가가치율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 그리고 간이과세자 업종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부가가치율 적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3가지로 분류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다 세분화하고, 간이과세자

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실제 부가가치율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해 규정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업종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라. 부가가치세 면제점의 적정성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해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의 하나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원래 영세사업자의 지원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sup>30)</sup>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가가치세 세수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sup>31)</sup>, 이들이 납부하는 세수가 이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발생하는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보다 작을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규모 사업자가 납부하는 추가적인 세수와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부가가치세 면제점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1977년에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도입되었다. 1977년부터 1999년까지는 납부세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소액부징수제도를 사용하였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 최저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매출액에 세액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sup>32)</sup>

---

30) 김승래 외(2007)에 소개된 Zee(2005)의 논의를 재정리하였음

31) 법인사업자의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과세분 매출을 신고한 393,806명의 사업자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비중은 37.3%이나, 이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전체 과세분 매출 과세표준의 0.13%에 불과함

32)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 공급대가가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면제점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표 34]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변화 추이

연도	면제점	면제기준	면제방법
1977년	7,500원	납부세액	소액부징수
1978~1988년	1만원		
1989년	2만원		
1990~1993년	4만원		
1994년	6만원		
1995년	12만원		
1996~1999년	24만원	공급대가	과세최저한제도
2000년 이후	1,200만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은 2000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고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점이 동결된 것은 면제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탈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과세기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면제점이 낮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김승래 외(2007)에 소개되어 있는 Keen and Mintz(2004)의 간단한 모형을 이용한 적정 면제점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면제점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sup>33)</sup> Keen and Mintz(2004)는 세수와 조세 운영비용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다음과 같은 단순 공식을 이용하여 최적 면제점을 측정하였다.

$$z^* = \frac{\delta A + \Gamma}{(\delta - 1) \tau v}$$

33) 김승래 외(2007)에서는 Keen and Mintz(2004)의 간단한 모형 이외에도 Zee(2005)의 모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두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의 시사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적 단순한 Keen and Mintz(2004)의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만을 소개한다.

- $\alpha^*$ : 최적 면세점
- $A$ : 세정당국의 징세 행정비용
- $\Gamma$ :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 $v$ : 부가가치율
- $\tau$ : 부가가치세율
- $\delta$ : 1원의 초과적 조세수입이 가져오는 한계후생비용(marginal welfare cost)  
인 공적자금의 한계비용(marginal cost of public finance)

김승래 외(2007)은 위의 식을 사용하여 최적면세점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수값을 사용하였다. 징세행정비용은 국세청 결산기준 지출액에 국세청 징수세액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후, 법인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사업자 당 납세협력비용은 곽태원(1994)의 연구결과인 185만 6천원을 기본값으로 하고 90만원과 10만원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부가가치율은 산업연관표 상의 국내총산출 대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45%를 기본값으로 하고 40%와 50%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금의 한계비용은 김승래·김우철(2007)의 연구에서 추정된 1.155를 기본으로 하고 1.1과 1.2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표 35] 사용된 모수값

모수	정의	지정된 값
$A$	사업자당 징세행정비용	10만 5천원
$\Gamma$	사업자당 납세협력비용	185만 6천원, 90만원, 10만원
$v$	부가가치율	40%, 45%, 50%
$\delta$	공적자금의 한계비용	1.10, 1.115, 1.20
$\tau$	세율	0.1

자료: 김승래·박명호·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적정면제점 추정결과 최적 면제점 수준은 모든 경우에서 연간 기준 환산 시 2,400만원인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납세협력비용을 연 10만원으로 낮게 가정하고, 공적자금의 한계비용을 1.2로 높게 설정한 후, 50%의 부가가치율을 가정한 경우의 최적 면제점 수준이 2,300만원으로 측정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점이 매출액에 세액을 더한 공급가액인 반면 계산된 최적 면제점은 매출액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300만원의 최적 면제점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sup>34)</sup> 따라서 Keen and Mintz(2004)의 공식을 이용하여 측정한 최적 면제점 측정 결과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이 적정 수준보다 아주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의 경제적 효율성 및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제의 면제점 수준을 일정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36] 적정 면제점 수준 계산 결과

(단위: 백만원)

		$\delta=1.1$	$\delta=1.155$	$\delta=1.2$
$\Gamma=185$ 만 6천 원	$v=40\%$	493	319	248
	$v=45\%$	438	283	220
	$v=50\%$	394	255	198
$\Gamma=90$ 만원	$v=40\%$	254	165	128
	$v=45\%$	226	146	114
	$v=50\%$	203	132	103
$\Gamma=10$ 만원	$v=40\%$	54	36	28
	$v=45\%$	48	32	25
	$v=50\%$	43	29	23

자료: 김승래·박명호·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34) 매출액이 2,300만원이고 부가가치율이 50%, 부가가치세율이 10%인 경우 세액은 115만원이 된다. 따라서 최적 면제점 2,300만원의 공급가액(=매출액 +세액)은 2,415만원이 된다.

## 4. 검토의견

### 가.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인하 일몰 기한 준수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 이 세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200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율 인하의 일몰 기한은 예정대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없이 부가가치율 인하의 일몰을 종료할 경우, 해당업종의 일반사업자에 비해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과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 방안 수립을 전제로 1년 정도 부가가치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 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조정 필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해당업종에 대한 한시적인 부가가치율 인하 방식 보다는 전면적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업종은 법정 부가가치율이 실제 부가가치율 보다 높은 데 반해, 제조업, 농림수산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은 실제 부가가치율이 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형평성이 훼손되고, 간이과세자 간의 과세형평성도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보다 세분화한 후 해당 업종의 실제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도록 법정 부가가치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과다하였던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과소하였던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커다란 세수부담 없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의 부가가치세 세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과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 다. 부가가치세 면제점에 대한 논의 필요<sup>35)</sup>

김승래 외(2007)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제점 수준은 실제 적정수준보다 아주 낮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면제점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경우 면제점 인상을 통해 사회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면제점 인상으로 세수손실이 발생하지만,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 등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세자영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면제점과 적정 면제점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 고려할 수 있다. 우선 현행 면제점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줄일 경우 적정 면제점 수준이 낮아지면서 현행 면제점 수준과 적정 면제점 수준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현행 면제점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현행 면제점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줄여나가는 국세행정개혁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 가지 방안 중에서는 단기간에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과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틀 안에서 면제점을 큰 폭으로 인상하기 어렵다는 점<sup>36)</sup>을 고려할 때 세 번째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점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우선 2000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점을 소폭 증가시킨 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점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부가가치

35) 이상의 논의는 김승래 외(2007)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36) 우리나라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당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점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점이 과세기간(6개월) 당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세 면제점 수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에 맞추어 매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물가연동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승래 외(2007)는 면제점을 반기 당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할 경우 2005년 2기 신고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자의 수는 약 10만 7천건(8.05%)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세수는 부가가치세수 대비 약 0.09%에 해당하는 약 355억 5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면제점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중 향후 조세환경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세목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세의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2005년 기준 OECD국가 부가가치세율의 단순평균인 17.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경우 적정 면제점 수준은 하락하게 된다. 한편 올린 부가가치세 면제점을 다시 낮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부가가치세율의 변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면제점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면제점 상향 조정에 따른 탈세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제점을 상향조정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동기가 없는 면제사업자의 수가 증가하여 일반 사업자의 매출 축소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 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간이과세제도는 당초 영세사업자에게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납세편의의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세부담을 경감 또는 탈세하는 장치로 인식되어 간이과세제도의 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김주택, 2006) 또한 동일한 업종이라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세율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유용성 및 유지필요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V.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 1. 행정부발표 세제개편안의 내용<sup>37)</sup>

2009년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

우선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2013년까지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때문에 행정부는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37] 지방세목 변경내용(2009년 세제개편안)

변경전	변경후	과표 및 세율
주민세 소득할	지방소득세	소득분: 본세의 10%
사업소세 종업원할		종업원분: 월급여총액의 0.5%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균등분: - 개인: 10,000원 이내/ 사업장 50,000원 - 법인: 50,000~500,000원
사업소세 재산할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250원/m <sup>2</sup> (오염물질배출사업소, 500원/m <sup>2</sup> )
(신설)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의 5%
농업소득세	폐지	

- 주 1. 신설되는 경우가 아닌 세목 통폐합의 경우, 과표 및 세율은 기존과 동일.  
2. 현행 농업소득세는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3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09. 9. 16),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등.

한편,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 (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첫째,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둘째, 지방세 비중의 확대에 의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증가하고, 셋째, 소득소비과세의 확대에 의한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증가하며, 넷째,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노력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 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와 같은 재정지표 개선효과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나아가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2. 문헌 연구 및 도입 후 기대효과

여기서는 기존의 문헌연구와 도입 후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첫째, 과세자주권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 둘째, 지방세입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시 지방세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 가. 과세자주권의 확립

다음 표는 지방자치 도입 이후 세입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재정 총수입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이전재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총세입 중 자체재원 비중은 90년대 78% 수준에서 2007년 69%대로 하락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의존재원 비중은 20%대에서 30%대로 상승하였다. 이전재원 중에서도 중앙의 통제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8.5%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및 부동산교부세 도입 등의 영향으로 2003년 이후 13~15%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OECD국가의 지방정부 수입 구성의 추이와 원인을 분석한 Blöchliger and Petzold(2009.7)에 따르면, 1995~2005년 사이에 정부의 총 지출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서 33%로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총 세입에서 지방정부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지방정부가 정부간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부금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혜택의 형평성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의 교부금 시스템은 형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보다 더욱 큰 규모였으며, 교부금은 자체재원에 비해 지방정부의 수입이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부금은 지자체의 세입징수노력을 줄이고, 지자체의 지출을 증가시켜, 적자와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표 38] 우리나라 지방정부 세입구조(순계규모)

(단위: 조원, %)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22.9	52.4	77.2	94.0	110.5	122.7	125.8	128.4	139.8	151.8
지방세 (비중)	6.4 (27.8)	15.3 (29.2)	20.4 (26.4)	26.6 (28.3)	31.6 (28.6)	33.1 (26.9)	34.2 (27.1)	36.0 (28.0)	41.3 (29.5)	43.5 (28.7)
세외수입	9.3	20.7	31.5	36.0	42.3	53.1	56.4	51.9	51.8	56.8
지방교부세 (비중)	2.8 (12.1)	5.7 (10.8)	8.4 (10.9)	12.4 (13.1)	12.5 (11.3)	15.0 (12.3)	14.5 (11.5)	20.0 (15.6)	21.7 (15.6)	25.2 (16.6)
지방양여금 (비중)	- (-)	1.9 (3.6)	3.7 (4.8)	4.6 (4.9)	4.2 (3.8)	4.4 (3.6)	3.8 (3.1)	- (-)	- (-)	- (-)
보조금 (비중)	2.1 (9.3)	4.1 (7.8)	9.9 (12.8)	11.2 (11.9)	16.2 (14.7)	14.3 (11.6)	13.5 (10.7)	16.94 (13.2)	21.1 (15.1)	22.4 (14.7)
지방채	2.3	4.5	3.2	3.2	3.8	2.8	3.5	3.6	3.9	3.8
자체재원 비중 <sup>1)</sup>	78.4	77.4	71.4	70.0	70.2	72.5	74.7	71.2	69.3	68.6
의존재원 비중 <sup>2)</sup>	21.4	22.2	28.6	29.9	29.8	27.5	25.3	28.8	30.7	31.4
(특정재원 비중 <sup>3)</sup> )	(9.3)	(11.4)	(17.6)	(16.8)	(18.5)	(15.2)	(13.8)	(13.2)	(15.1)	(14.7)

주 1: 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

주: 1)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지방정부 총수입

2)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보조금)/지방정부 총수입

3) (지방양여금+보조금)/지방정부 총수입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호.

이와 같이 지방정부 세입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의존재원보다는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하고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나 세수 증대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유인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책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실질적인 자체재원과 과세자주권의 확대를 가져오기 보다는 단순한 세목 변경으로 인한 조세 복잡도에만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자체 세원 확보 노력이 탄력세율의 활용으로 이루어져 과세자주권의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레저세, 면허세, 농업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전 세목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sup>38)</sup> 그러나 탄력세율은 재산세율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주민세의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심혜정(2008)에 의하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은 외형적으로는 평균 이상의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지방정부 과세자주권을 액면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16개 지방세 세목 중 11개의 세목에 대해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탄력세율 제도의 활용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거를 의식하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할 유인이 거의 없다. 또한 중앙에 의존적인 지방재정 구조와 함께 그 제도 운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재량성이 높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탄력세율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재정분권화 원리나 일부 다른 OECD 국가들의 상황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과세자주권이란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세율결정권 행사를 통해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부담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과세자주권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둘째,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의 감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조세경쟁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sup>39)</sup> 배상석·김대진(2007)은 비교경쟁이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산세 탄

38) 레저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 역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율의 가감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39)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정

력세율 인하경쟁을 설명하였다. 2004년 중앙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재산세 과표를 상승시킨 이후 서울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탄력세율인하를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낮추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공간회귀분석을 응용하여 지리적으로 이웃한 자치단체의 세금변화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자치단체도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세금을 변화시킴을 확인하였다. 오병기(2009)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어려움이 크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방소득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재정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력 격차에 따라서 투자인센티브가 차이가 날 가능성이 지적하고 있다.

셋째, 실질적인 자체재원의 증가 없이 단순히 징세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의 세목변경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의 증대효과는 없으면서, 상당한 규모의 징세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중은 변할 수 있으나, 지출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징세비를 유발하지 않는 기존의 교부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체재원의 증가라기보다는 단순히 징세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 다른 정책 대안과의 심도있는 비교가 필요하다.

## 나. 지방세입의 안정성

지방세수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작게 받고, 안정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수는 보통 세원의 영향을 받는다. 기존 지방세의 문제점은 세원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다른 국세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 표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소득과세가 16%, 재산과세가 50%, 소비과세가 22%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산과세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산과세가 지방세로 적합한 세목이기 때문이다.<sup>40)</sup>

부가 세율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산세 중에서도 거래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수입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안정적 세수입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세의 문제점 중 하나는 소득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세의 재원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나타난다. 소득할 주민세의 독립세 전환이 아니라, 명칭만 지방소득세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국세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소득할 주민세의 감소는 2010년부터 매년 1조 7,000억원 이상의 감소를 가져올 예정이었는데, 지방소득세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40) 재산세가 보통 국세가 아닌 지방세의 형태를 띠는 이유는 티부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티부모델은 지방정부에서 공급되는 공공재는 세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는 납세-혜택간의 연계이다. 즉, 주민이 자신들이 낸 세금이 자신들이 받는 재화 및 서비스와 곧바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도로와 같이, 재산세를 많이 낼수록 도로의 질이 좋아져서 지역 대부분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화는 세입과 지출의 연계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요소는 외부효과의 크기이다. 만약 이 효과가 다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면, 어떤 지역에서도 지방공공재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이러한 공공재들의 공급은 더 상위의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요소는 공공재가 규모의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만약 규모의 경제가 크다면(국방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공급할 유인이 없다. 규모의 경제가 작은 공공재의 경우에만 티부 경쟁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티부 가설은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중요한 수입원이다(Gruber, 2005).

[표 39] 지방세입의 구조

(단위: 십억원, %)

	세입금액					비중			
	합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1981	914	242	572	90	10	26.4	62.6	9.8	1.1
1982	1119	266	738	104	12	23.7	65.9	9.3	1.1
1983	1397	298	960	128	12	21.3	68.7	9.1	0.8
1984	1508	325	1015	152	16	21.5	67.3	10.1	1.1
1985	1658	281	1108	249	20	16.9	66.9	15.0	1.2
1986	1810	311	1201	280	18	17.2	66.4	15.5	1.0
1987	2192	375	1473	319	25	17.1	67.2	14.6	1.1
1988	3085	497	1965	591	32	16.1	63.7	19.2	1.0
1989	4936	604	2505	1792	35	12.2	50.8	36.3	0.7
1990	6366	678	3521	2120	47	10.7	55.3	33.3	0.7
1991	8035	852	4653	2472	57	10.6	57.9	30.8	0.7
1992	9462	1141	5414	2822	84	12.1	57.2	29.8	0.9
1993	11026	1280	6516	3081	148	11.6	59.1	27.9	1.3
1994	13231	1562	7737	3769	163	11.8	58.5	28.5	1.2
1995	15316	1941	8960	4218	198	12.7	58.5	27.5	1.3
1996	17395	2439	9883	4746	327	14.0	56.8	27.3	1.9
1997	18406	2571	10304	5191	340	14.0	56.0	28.2	1.8
1998	17150	2918	8823	5131	278	17.0	51.4	29.9	1.6
1999	18587	2824	10242	5017	504	15.2	55.1	27.0	2.7
2000	20600	3688	10980	5458	474	17.9	53.3	26.5	2.3
2001	26664	3916	12785	5920	4043	14.7	47.9	22.2	15.2
2002	31526	4282	16366	6337	4541	13.6	51.9	20.1	14.4
2003	33133	4983	17072	6537	4541	15.0	51.5	19.7	13.7
2004	34201	5386	16880	7259	4676	15.7	49.4	21.2	13.7
2005	35978	6014	17928	7561	4474	16.7	49.8	21.0	12.4
2006	41293	6777	20977	8533	5007	16.4	50.8	20.7	12.1
2007	43524	8031	20814	9494	5186	18.5	47.8	21.8	11.9
00-07 증가율·평균 <sup>3)</sup>	11.5	14.2	9.7	8.3	96.6	16.1	50.3	21.7	12.0
탄력성	1.7	2.2	1.4	1.3	12.9	-	-	-	-

주: 1) GDP대비 지방세수 탄력성은 세수증가율/GDP증가율로 구하였으며, 대상기간은 2000~2007년임

2)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의 분류는 OECD의 분류기준을 따른 것임

3) 세입금액은 증가율, 비중은 평균을 나타냄



한편,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소비과세의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표는 2000년 이후의 세수탄력성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세수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경상GDP는 6.9%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지방세는 11.5%의 증가율을 보여 탄력성은 1.7로 측정되었다.<sup>41)</sup> 소득과세의 탄력성은 2.2로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반면, 소비과세는 1.3으로 그렇지 않다.<sup>42)</sup>

#### 다. 지방소비세 도입시 세수효과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입에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 세입 중 자체재원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해당 금액만큼의 내국세 계상분이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의 법정률(19.24%)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감소한다. 셋째, 내국세의 법정률(20.0%)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다.<sup>43)</sup>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을 증가시키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감소시키게 된다.

41) 1981년부터의 탄력성을 구하면 반대로 소득과세의 탄력성이 가장 낮고(0.9), 소비과세의 탄력성이 가장 크다(1.8). 엄밀히 하면 세수의 탄력성은 세계개편이 없는 기간을 대상으로 구해야 하며, 세계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행동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간략하게 추산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세계개편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2000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구한 것이다.

42) 이것은 국세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는 총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지방세의 소비세로 분류되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은 상대적으로 총수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 여기서 자동차세는 OECD의 기준에 따라 소비과세로 분류하였으나, 세금의 성격상 재산과세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법정률을 인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대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방재정 세입 증가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부터 지방세로 계상될 지방소비세의 규모는 2010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액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총 2조 4,334억원이 될 전망이다. 반면에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세로 계상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549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한 지방재정의 순증감액은 2010년 한 해 동안 1조 4,785억원이 될 전망이다.<sup>44)</sup>

### 3. 검토의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수효과나 세목체계 단순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존의 개편안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설계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체 세원 확보 노력이 탄력세율의 활용으로 이루어져 과세자주권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면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의 감소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질적인 자체재원의 증가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의 증가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 다른 정책 대안과의 심도 있는 비교가 이루어진 후에 정책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세수효과 및 지역간 격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분석은 김경수(2009) 참고.

## VI. 2009년 세제개편안과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1.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관한 논의

비과세·감면제도는 국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세율 등 세법상 일반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례규정의 형식으로 개인 또는 기업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를 보조금지원 등 예산을 통한 직접지출과 대비하여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고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도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지방세 부문을 제외한 국세감면 금액)을 총 29조 6,32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sup>45)</sup>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 대비 15.1%, GDP대비 2.9%에 달하는 규모이며, 조세지출 중 그 규모가 추정되지 항목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조세지출이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는 정책대상 집단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유인기제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부담의 불평등, 과세기반의 약화, 조세체계의 복잡성 증대, 시장기능의 저해 등 그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조세지출은 한 번 설치되고 나면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폐지되지 않고 항구화하는 속성이 강하다(임주영·정지선, 2006).

특히 최근 ‘조합예탁금의 비과세 한도 확대’, ‘노후자동차의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올 해 상반기까지 비과세·감면의 신설 및 확대에 의해 추정 가능한 세수감소 규모만 2009년 3.1조원, 2010년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5) 기획재정부, 「2008년도 조세지출보고서」.

더욱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2008년 말 대규모 감세조치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세입기반의 약화는 물론 세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래 각국 정부들이 각종 세율인하 및 조세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비과세·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을 축소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세입기반(tax base)을 넓히고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요인을 최소화하였던 국제적인 흐름에도 배치되는 것이다(고영선, 2009).

이에 따라 행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비롯하여 올해 말 일몰도래 항목 등 다수의 비과세·감면 항목들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과세·감면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인지, 비과세감면제도의 중장기적인 운용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한 후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 2.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주요 내용

### 가. 전체항목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136개 항목으로 이중 감면신설, 기존감면의 확대, 일몰연장 등 감면확대 항목은 총 85개, 일몰종료 및 폐지, 감면축소 등 정비항목은 총 51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개정안 중 2010년부터 신규로 도입하는 항목은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조특안 제10조)’와 ‘녹색펀드·예금·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안 제91조의13)’, ‘영세 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안 제99조

의5) 등이다. 기존의 감면항목에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등 감면이 확대되는 주요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대상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과 법인이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3조·63조의2)을 ‘수도권 외 지방’으로 이전 시 그 감면기간 등을 확대(최장 7년 → 10년)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2009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 중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등 총 64개 항목의 일몰이 연장되거나, 일몰을 연장하면서 감면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감면이 폐지되거나, 일몰이 종료되는 항목은 총 34개 항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가 대표적이며,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 등 국외상장주식 평가·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해외펀드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2②)’, ‘투자신탁 등 공모펀드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117조①3·4·5·10)’ 등의 일몰종료가 제안되었다. 2009년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 항목의 주요 개정방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0] 2009년 세제개편안 비과세·감면 항목 주요 개정 방향

개정 방향		비과세·감면 항목
감면 확대 (85)	신설 (13)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신용회복기금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104조의12),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조특안 제104조의9),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119·120조),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조특법 제67조④),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제85조의9),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조특령 제81조), 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조특안 제9조의13),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안 제99의5) 등
	감면 확대 (8)	여수세계박람회 행사관련 국내제작 곤란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경감(조특법 제118조①11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63조의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등
	일몰 연장·확대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 제29조), 기부금 특별공제 및 손금산입(조특법 제73조, 소득세법 제34조②·52조⑥, 법인세법 제24조), 농협 등의 당해 조합원 용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특법 제116조①5) 등
	일몰 연장 (6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조특법 제101조),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조특법 제105조①3), SOC시설로 제공한 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조특법 제105조①3의2),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조특법 제106조의5),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121조의1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조특 제4806조 부칙 제17조),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관세법 제95조①1-2),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관세법 제95조①4), 소매업·음식숙박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부가령 제74조의3④) 등
감면 축소 (51)	폐지·일몰 종료 (34)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5), 국외상장주식 평가·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91조의2②),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특법 제91조의9),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11),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104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제111조의2),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제117조①3·4) 등
	감면 축소 (10)	전자신고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8②),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88조의2·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조특법 제89조의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조특법 제18조의2①) 등
	일몰 연장·축소 (7)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14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제8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조특법 제108조),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조특법 제118조①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등

## 나. 2009년도 일몰도래 항목

현재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일부 부가가치세·관세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009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수는 집계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sup>46)</sup>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총 106개로 집계되었다.<sup>47)</sup>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이 101개, 관세법 및 소득세법이 각각 2개, 소득세법이 1개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다수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비과세·감면 항목의 연도별 일몰도래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83개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2009년 101개, 2010년 14개, 2011년 21개, 2012년 16개, 2013년 2개, 2014년 3개 항목의 일몰이 각각 도래 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전체 일몰항목 중 54.6%가 올해 말 일몰도래할 예정인 것이다.

[표 41]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 현황

(단위 : 개,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항목수	101	41	21	16	2	3	184
(비중)	(54.9%)	(22.3)	(11.4)	(8.7)	(1.1)	(1.6)	(100.0)

46)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계개편안(2009.8.24)을 보면, 올해 말 일몰도래 항목을 총 87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NABO의 집계 항목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계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히려 기획재정부 집계 항목수 87건에는 올해 말 일몰도래 예정이었으나 2009년 상반기에 일몰이 연장된 8개의 구조조정 관련 조세지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NABO는 근거법의 조문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조세지원 내용이 의미상 구분이 가능하고 조세지출보고서의 감면 규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위(필요한 경우 항 또는 호 단위)를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올해 말 일몰도래하는 106개 항목의 세부내역은 보고서의 부록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47) 올해 일몰도래 항목은 총 106개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8조의2①)’의 경우 일몰을 종료하더라도 제2항의 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감면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하 분석에서는 105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함.

전체항목에 대한 분석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행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총 105개 일몰도래 항목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총 31개 항목에 대하여 일몰종료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총 74개 항목의 일몰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 3. 주요 분석

#### 가. 비과세·감면 정비의 세수효과(전체항목)

##### (1) 2009년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에 따라 관련 비과세·감면항목을 개정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는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안 비용추계서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조세감면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136개 항목 중 의안 비용추계서 및 국회 제출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31개 항목의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2] 2009년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 관련 항목 개정 효과(전년대비)

(단위 : 개, 억원)

개정방향		항목수	세수효과(비용추계)					합계
			전체(추계)	2010	2011	2012	2013	
감면 확대	신규도입	13(6)	-2,877	-9,117	0	0	0	-9,994
	감면확대	8(4)	0	-122	0	0	0	-122
	일몰연장 감면확대	4(1)	-5	-85	0	0	0	-90
	일몰연장	60(0)	0	0	0	0	0	0
<b>소 계(세수감)</b>		<b>85(9)</b>	<b>-882</b>	<b>-9,324</b>	<b>0</b>	<b>0</b>	<b>0</b>	<b>-10,206</b>
감면 축소	일몰종료·폐지	34(14)	12,082	14,579	1,174	174	174	28,183
	일몰연장 감면축소	10(4)	107	2,007	107	107	1,277	3,605
	감면축소	7(2)	0	367	33	0	0	400
<b>소계(세수증)</b>		<b>51(20)</b>	<b>12,189</b>	<b>16,953</b>	<b>1,314</b>	<b>281</b>	<b>1,451</b>	<b>32,188</b>
<b>합 계</b>		<b>136(31)</b>	<b>9,307</b>	<b>7,629</b>	<b>1,314</b>	<b>281</b>	<b>1,451</b>	<b>19,982</b>

주: 1. 136개 항목에는 비과세·감면 항목이지만 세수효과와 직접 관련 없는 일몰폐지, 일몰 신설 2개 항목은 제외

2. 이 수치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총 세수효과 10.2조원 중 일반적으로 비과세·감면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제도'의 부활로 인한 일시적 세수효과(5.2조원),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3,200억원), 양도세 예정신고제도 폐지 효과(8,300억원) 등이 제외된 것임

자료: 연도별 세수효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등 비용추계서 및 국회제출자료 참조.

추계 대상이 되는 136개 항목 중 세수 전망액이 제시된 항목이 31개에 불과한 주요 이유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는 전년도 대비 방식으로 세법 개정효과를 추계하기 때문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중 60개 항목에 달하는 일몰 연장안이 모두 세법개정(시행)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차기연도 이후 세수의 증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행정부 추계방식에서는 세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올해 일몰 도래하는 총 105개 항목 중 74개 항목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이연되는 조세지원 규모는 약 5.3조원 정도이다. 그 밖에 47개 항목은 기술적인 이유로 추정이 곤란하거나, 비용추계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세수효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부 추계에 따를 때, 2009년도 비과세·감면 항목 관련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2010년 9,307억원이 증가하고, 2011년 및 2012년 각각 7,621억원, 1,314억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2014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세수 증가효과의 주된 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종료에 따른 효과가 가장 크다. 행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일몰종료될 경우 2010~2011년 1조5천억원의 세수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투자신탁 등 공모펀드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 및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종료에 따라 2010~2011년 및 2011~2012년 각각 약 5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주요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설로 인해 2010~2011년 약 8천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행정부 추계를 기초로 작성한 개별 항목별 세수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3] 2009년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비용추계)

(단위 : 억원)

비과세·감면 항목	개정안의 세수효과(비용추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 신설	-480	-7,520				-8,000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24	-376				-400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270					-270
녹색펀드·예금·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103	-321				-424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900				-900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2,00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등		-120				-120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		-1.8				-1.8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5	-85				-90
산업재해·직업병 예방용품 관세감면 폐지		0.09				0.09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5,000	10,000				15,000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4,000	1,000			5,000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일몰종료	158					158
장기채권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일몰종료	537					537
투자신탁 등 공모펀드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일몰종료	4,400	400				4,800
연기금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	55	5				6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저당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일몰종료	0.2					0.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 으로부터 취득재산의 등기 취·등록세 감면 일몰종료	8					8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750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일몰종료	174	174	174	174	174	870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일몰종료	1,000					1,000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과 중복 가입 배제		367	33			400

(단위 : 억원)

비과세·감면 항목	개정안의 세수효과(비용추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및 감면혜택 축소	17	17	17	17	17	85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일몰연장·감면축소					1,260	1,260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일몰연장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단계별 축소	90	90	90	90		36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 및 소득공제한도 축소		1,900				1,900
합 계	9,307	7,629	1,314	281	1,451	19,982

## (2) 2008년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세제개편

2009년 개편안의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도입된 비과세·감면 제도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8년 이후 대규모 감세조치와 함께 각종 조세지원 정책 역시 크게 확대됨에 따라 향후 세입여건의 악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노후자동차 교체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총 38개의 감면제도가 신설되거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총 60개 항목에 이르는 기존 감면제도가 확대되거나 일몰이 연장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폐지 또는 축소(일몰연장 후 감면축소 포함)된 항목은 22개에 불과하다.

[표 44] 2008년 이후 2009. 5월까지 비과세·감면제도 개정의 세수효과(전년대비)

(단위 : 개, 억원)

개정방향		항목수	세수효과(비용추계)					합계
			전체(추계)	2008	2009	2010	2011	
감면확대	신규감면	38(18)	-27,478	-11,273	-11,902	-5,560	-3,534	-33,247
	감면확대	30(20)	-2,850	-12,689	-8,620	0	0	-21,509
	일몰연장 감면확대	8(5)	-50	-13,480	-22,290	0	0	-35,820
	일몰연장	22(0)	0	0	0	0	0	0
	<b>소계(세수감)</b>	<b>98(43)</b>	<b>-30,378</b>	<b>-37,442</b>	<b>-42,812</b>	<b>-5,560</b>	<b>-3,534</b>	<b>-117,076</b>
감면축소	일몰종료 단순폐지	9(1)	0	0	50	0	0	50
	감면축소	5(3)	0	2,570	753	0	0	3,323
	일몰연장 감면축소	8(3)	0	750	600	600	0	1,950
<b>소계(세수증)</b>		<b>22(7)</b>	<b>0</b>	<b>3,320</b>	<b>1,403</b>	<b>600</b>	<b>0</b>	<b>5,323</b>
<b>합계</b>		<b>120(50)</b>	<b>-30,378</b>	<b>-34,122</b>	<b>-41,409</b>	<b>-4,960</b>	<b>-3,534</b>	<b>-111,753</b>

주: 세수효과부분은 이영환·신영임 (2009),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중 비과세·감면제도 부분 등 참조하여 작성

최근 비과세·감면의 확대로 인해 추정 가능한 세수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방식으로 2009년 3.1조원, 2010년 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추계가 불가능한 다수의 항목 등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나. 2009년말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실태 및 감면금액 현황

2009년 세제개편안의 비과세·감면 관련 항목(136개) 중 올해 말 일몰도래 예정인 항목은 총 105개로 전체의 75%에 해당한다.<sup>48)</sup>

2009년 말 일몰도래 예정인 전체 항목들을 대상으로 개별 항목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9년까지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연장경험이 있는 경우 그 연장회수를 분석한 결과 총 105개 항목 중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은 전

48) 올해 일몰도래 항목은 총 106개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8조의2①)’의 경우 일몰을 종료하더라도 제2항의 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감면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체의 59.0%인 62개 항목,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었거나 일몰규정이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2009년 10월 현재 아직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항목은 전체의 41%인 43개 항목으로 집계되었다.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들(62개) 중 일몰 연장 회수는 2회 및 1회가 각각 30개, 1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5] 2009년말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회수

(단위: 항목수, %)

구 분		소계	일몰연장 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 계 (105)	일몰연장(경험)	62(59.0)	11	30	9	9	3
	일몰미도래 (신규도입 항목)	43(41.0)	-	-	-	-	-
일몰종료안 (31)	일몰연장(경험)	14(13.3)	5	4	0	3	2
	일몰미도래	17(16.2)	-	-	-	-	-
일몰연장안 (74)	일몰연장(경험)	48(45.7)	6	26	9	6	1
	일몰미도래	26(24.8)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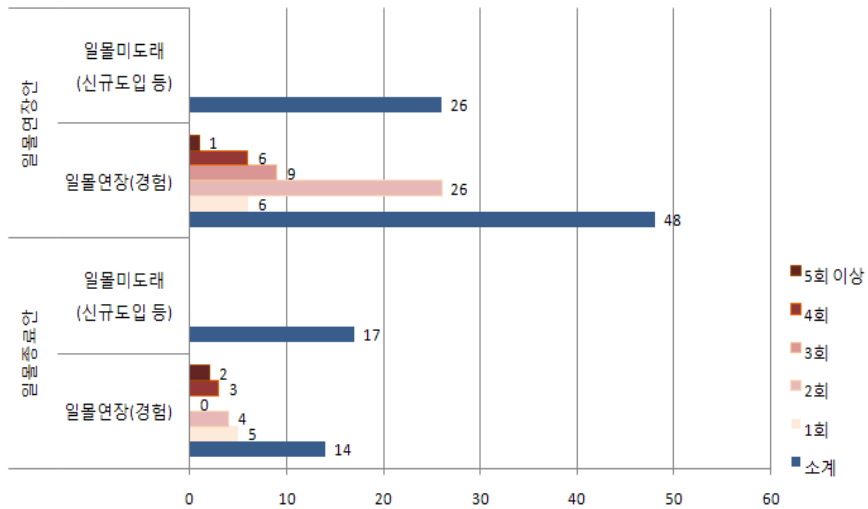
주1: 올해 일몰도래 항목은 총 106개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특례(조특 제18조의2①)’의 경우 일몰을 종료하더라도 제2항의 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감면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석에서 제외

주2: 일몰 연장안 74건은 단순 일몰연장안(60건), 일몰연장 및 감면확대안(4건), 일몰 연장 및 감면축소안(10건)을 모두 포함

세제개편안 중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개정방향에 따라 ‘일몰연장안’이 제시된 경우와 ‘일몰종료안’이 제시된 경우로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제개편안의 총 74개의 일몰연장안 중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은 각각 48개(45.7%), 26개(24.8%)로 일몰연장 경험 있는 항목의 비중이 높고, 이 중 연장회수는 2회가 26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몰종료가 제안된 총 31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은 각각 14개(13.3%), 17개(16.2%)로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항목이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일몰연장 경험 있는 항목들 중 연장회수는 1회가 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2009년 세제개편안의 개정방향 따른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회수



총 105개의 일몰도래 항목의 연간 감면금액에 대한 정보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보고서(2007~2008)」상의 과거 3년(2006~2008) 간 감면세액의 평균을 기초로 감면금액을 산출한 결과 전체 항목 중 추계금액 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은 75개(69.5%), 추정근란으로 집계되는 항목이 3개(2.9%), 신규도입, 지방세 감면, 정보누락 등을 이유로 감면금액 정보를 알 수 없는 항목은 29개(27.6%)로 나타났다.

[표 46]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정보 현황

감면금액 정보양태		항목 수	비율
추 계		73개	69.5%
추정근란		3개	2.9%
정보없음 (29개, 27.6%)	신규도입	8개	7.6%
	지방세	10개	9.5%
	누락	9개	8.6%
	기타	2개	2.0%
합 계		105개	100.0%

주: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은 조세지출보고서를 기준으로 과거 3년(2006~2008) 추정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

아래의 표와 그림은 올해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을 2009년 세제개편안의 개정방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우선 감면금액 정보가 있는 총 73개 항목 중 감면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항목이 34개(4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감면금액이 10~100 억원인 항목이 17개(23.3%)로 감면금액 100 억원 이하인 항목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감면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전체의 4.1%인 3개 항목이다.

[표 47] 2009년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 현황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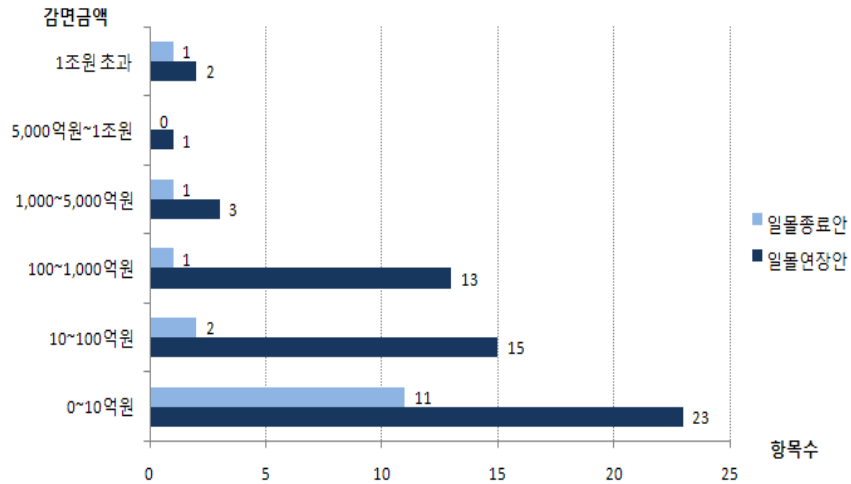
	일몰연장안	일몰종료안	전체 항목
0~10억원	23(40.4)	11(68.8)	34(46.6)
10~100억원	15(26.3)	2(12.5)	17(23.3)
100~1,000억원	13(22.8)	1(6.3)	14(19.2)
1,000~5,000억원	3(5.3)	1(6.3)	4(5.5)
5,000억원~1조원	1(1.8)	0(0.0)	1(1.4)
1조원 초과	2(3.5)	1(6.3)	3(4.1)
계	57(100.0)	16(100.0)	73(100.0)

2009년도 감면금액 정보가 있는 일몰도래 항목(73개) 중 일몰연장안 및 일몰종료안이 제시된 항목은 각각 57개와 16개이다. 각각의 감면금액 분포는 전체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일몰종료안의 경우 감면금액 10억원 이하인 항목의 비중이 전체(16개) 항목의 68.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몰종료안 중 감면금액 1조원 초과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고, 감면금액 1,000~5,000억원 및 감면금액 100~1,000억원 항목은 모두 ‘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공모펀드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이다.

한편 일몰연장안 중 감면금액 1조원 초과 항목은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항목이며, 감면금액 5,000~1조원인 ‘항목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항목이다.



[그림 5] 2009년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



## 4. 평가 및 개선과제

### 가. 총괄 평가

비과세·감면제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하에 일관성 있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향후 재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고 조세제도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1%에 이르는 조세감면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R&D, 환경개선·에너지 절약 분야 등 외부효과가 있어 조세지원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측면에서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재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박기백, 2006). 이러한 운용원칙 하에 기존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지원의 타당성이 낮은 제도, 제도가 복잡하고 이용실적이 미미하여 존속의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책대상 집단에

감면혜택이 귀속되지 않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 등이 우선적인 정비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박기백, 2006; 임주영·정지선, 2006)<sup>49)</sup>.

이러한 증장기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과 정비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감면제도에 관한 2009년 세제개편안은 조세지원의 실질적인 효과와 관련 없이 상당기간 고착화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 감면규모가 큰 기존의 조세지출 항목들을 폐지하고, 물류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한 조세지원 등 조세지원 실적 및 효과가 미미한 다수의 지원항목들에 대한 정비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조세지출의 신규도입을 억제하면서 신성장 동력산업 등 R&D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증장기 국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R&D 세액공제 및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준비금 제도의 재도입 등 최근 R&D 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경향과 관련하여 조세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R&D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 기술분야의 경우 시장실패 우려가 커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큰 분야에 선별적·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선정될 경우 일몰종료(안)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원대상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말 재도입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제도는 감면효과에 비해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기장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이용이 어려우며, 외국에 운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2006년 말 폐지되었던 제도이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녹색펀드·예금·채권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신설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

49) 박기백(2006); 임주영·정지선(2006)은 그 밖에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기준으로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되거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가능한 제도, 부당공제·불법유통 등 부정감면 혜택이 우려되는 제도,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 등을 들고 있다.

요성은 인정되지만, 각종 비과세금융상품에 대한 정비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투자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를 함께 허용하고 있으나 중복·과다 지원의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올해 일몰 도래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도 중복·과다지원을 이유로 비과세 혜택이 외에 소득공제 적용을 축소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에 비추어도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조세감면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나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문은 외부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투자 등의 효과가 개별기업에 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지원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박기백·정재호, 2003). 이에 대한 일몰연장을 제고하거나 감면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 재정건전성 확보

이 번 세제개편안 중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효과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감면 확대규모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등 정비되는 규모가 커 순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추정가능한 세수 증대규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최근 감세와 조세감면의 확대로 인해 크게 위축된 세입여건을 호조시키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한 조세지출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감소 효과가 2010년도에만 최소 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년도 방식의 행정부 추계방식에서는 세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올해 일몰 도래하는 총 105개 항목 중 74개 항목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이연되는 조세지원 규모가 약 5.3조원에 이르고 있다.

[표 48] 2009년 세제개편안과 2008년 이후 확대된 비과세·감면의 세수효과

(단위 :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009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감면의 세수효과	9,307	7,629	1,314	281	1,451	19,982
2008년 이후 확대된 조세감면의 세수효과	-41,409	-4,960	-3,534	-	-	-49,903

주: 이 수치는 비과세·감면 항목들 중 의안비용추계 등을 통해 확보 가능한 추계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추정근란·추계누락 항목은 제외한 수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세정책 등으로 위축된 세입기반의 약화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용방향으로 다음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임시투자세액공제·각종 소득공제 제도 등 감면규모가 큰 주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감면 제도는 지원항목수가 2008년 조세지출보고서 기준으로 189개 항목에 이르지만 감면규모는 지원규가 지원규모가 큰 소수의 항목들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보험료·신용카드·교육비 공제’ 등 감면금액이 큰 상위 20개 항목의 2008년도 총 감면액은 22조 6,763억원으로 이는 2008년도 총 189개 비과세·감면금액의 76.5%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 신용카드 공제 한도의 축소안 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조절 목적으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운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학계의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철인 외, 1999; 김유찬·주기중, 2004). 또한 최근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R&D·환경·안전·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투자지원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능을 축소할 여지가 더욱 크다고 본다.

둘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원칙에 입각하여 올해 말 일몰도래하는 105개 조세감면 제도에 대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행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총 74개 항목의 일몰연장을,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31개 항목의 일몰 종료안을 제시하였다.

세제개편안에서 일몰연장안이 제시된 74개 항목의 일몰연장 실태를 보면, 과거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48개 항목 중 1회 연장이 6건, 2회 연장이 26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고, 3회 이상 연장도 16건에 이른다. 중소기업, 농어민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일몰연장이 반복되는 등 조세지원의 항구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더욱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행정부는 일부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하여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sup>50)</sup> 그러나 조세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의회의 주기적인 심사를 거쳐 조세지원의 항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몰규정의 폐지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만약 조세지원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일몰규정을 폐지하기 보다는 일몰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최근 신규로 도입된 감면항목들이 항구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하여 상당수 비과세·감면제도들이 신규 도입되거나 기존감면이 확대·시행되었다. ‘미분양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는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등 경제적 효율이 증진되는 방향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지원 제도를 경기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조세를 통한 재정정책은 재정의 직접지출과 달리 정책시차가 크기 때문에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쉽지 않으며, 한번 설치된 감면항목은 정책목적의 달성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여 세수손실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일몰연장 되는 등 항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약화된 항목에 대하여는 일몰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정비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0) 2008년말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일몰규정을 폐지하였고,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일몰폐지안 제출하였다.

## 다. 조세체계의 간소화

특정 활동이나 특정 과세계급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제도는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복잡한 지원절차에 비해 감면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꾸준히 정비함으로써 조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도 조세 지출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189개 조세지출(비과세·감면)항목들 중 연간 감면실적이 전혀 없거나(25개), 감면실적 1억원 이하인(14개) 항목이 39개로 전체의 21.1%에 달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소액 감면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실적(잠정)기준으로 1억원 이하인 39개 전체 감면제도 중 2009.10월 현재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 6개 항목은 이미 폐지·종료된 상태이며, ‘물류사업 분할·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등 8개 항목(20.5%)에 대해 일몰종료안이 제출되었다. 25개 항목(64.1%)의 경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대하여 일몰연장안 등 현행유지가 제안되었다. 감면실적이 거의 없으나 일몰연장 등 현행유지가 제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편안은 ‘SOC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채권만기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1999년 제도 도입이후 개인투자자가 이 제도를 활용한 실적이 전무하지만, 일몰연장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SOC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이전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채권발행 계획 등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49] 감면실적 1억원 이하 항목에 대한 세제개편방안

(단위: 개, %)

일몰종료·폐지안	8	20.5
일몰연장, 유지안	25	64.1
기폐지	6	15.4
합 계	39	100.0

한편 비과세·감면제도에서 조세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지원업종 등 감면대상에 대한 포지티브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광업·제조업 등 22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각 31개 업종 및 28개 업종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근거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중소기업 일반, 설비투자 일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서 업종 간 감면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야기 할 수 있다. 조세지원 체계를 단순화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가급적 조세지원 방식을 지원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박기백·정재호, 2006).

## VII. 법제도 정비를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

### 1. 개관

2009년 세계개편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위기를 극복한 이후의 미래 도약을 준비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도 높이고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기침체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및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민생안정), 둘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등 미래 대비를 위한 분야의 지원 강화(지속 성장), 셋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한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 추진(과세 정상화), 넷째 고소득자와 대법인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등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재정 건전성)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세계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이에 수긍하지 못하거나 과세당국의 시책에 불신을 나타낸다면 종국적으로는 정책의 효율성도 반감되고 경기회복의 추세도 위축될 소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9년 세계개편안은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에서 기업의 납세 편의도 제고하고, 상속·증여세 제도도 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여기에 더해 알기 쉬운 세법을 구축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조사제도를 보다 정비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도 줄여 나간다면 납세순응도 제고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알기 쉬운 세법 구축을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 가. 필요성

통상적으로 세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복잡하다거나 그 내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그리고 세법이 어려울수록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진다. 일상의 경제활동은 반드시 세법적인 문제와 연관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세법의 난해성과 복잡성 때문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따르는 조세효과를 가늠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며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당국의 세무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종래 우리 정부가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이와 같은 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방안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나. 정부의 동향<sup>51)</sup>

정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특히 조세법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가 전신인 재정경제부 시절부터 매년 세제개편안 발표시마다 알기 쉬운 세법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6년도에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및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세법체계 개편을 시도하였으며, 2007년에도 이와 같은 기초를 이어받아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구축’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조세법 체계 정비와 알기 쉬운 세법 마련에 필요한 작업을 시행한 바 있다.

51)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황진영(2007) 참조.

또한 법제처에서는 법령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09년 7월에는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55건의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도 최근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알기 쉬운 세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50]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실적 및 계획(2009. 6월말 현재)

		국회 제출	국회 통과	임기만료 폐기
17대 국회	2006년	63건	60건	3건
	2007년	216건	122건	94건
	소 계	279건	182건	97건
18대 국회	2008년	229건	150건	
	2009년(계획)	67건(290건)	7건(290건)	
	2010년(계획)	(300건)	(300건)	
총 계(계획)		(1,000건 <sup>1)</sup> )		

주: 1. 총 1,200여개의 현행 법률 중 정비 필요성이 낮은 법률(정비사항이 극히 적은 최근 제정·전부개정 법률, 한시법, 폐지예정 법률 등) 200여건은 정비대상에서 제외

1) 5년간 국회제출 건수(계획)의 합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97건을 뺀 수치

자료: 법제처, 업무참고자료, 2009.

#### 다. 입법 과제

조세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현진권, 1998). 따라서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을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세법체계가 복잡하고 지나치게 어려울 때에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즉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은 납세협력 비용과 조세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세금 자체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박기백, 2000).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조문의 문장이나 단어만을 순화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중국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체계’부터 개편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세법 체계 자체를 개편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어서 보다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지만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즉 현행 세법이 조세법통칙과 각 개별세법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취하고 있다면, 이를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와 같이 ‘단일법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세법을 보다 알기 쉽게 개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이와 같은 체계를 취할 경우 세법의 분량이 지나치게 비대화될 우려도 없지 않으나, 각 조문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납세자의 혼란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 또한 법의 제·개정이나 조문의 내용을 검색하는데 있어서도 단일법체계가 보다 수월하다.

끝으로 세법의 체계를 개편함과 함께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도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의 변화가 급변한 현대사회에서 매년 세법 개정이 필요함은 부인할 수 있지만,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는 가능하면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매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때마다 일관성 없는 정책기조가 변변이 논란거리고 대두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혼선이 세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 3. 세무조사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

#### 가. 필요성

알기 쉬운 세법이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전항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탈세를 적발하는 기능 외에도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세무조사 제도의 지나친 활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적지 않게 조세저항을 불러 왔던 경우도 많았다. 적절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당국이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집행한다면 결국 이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검토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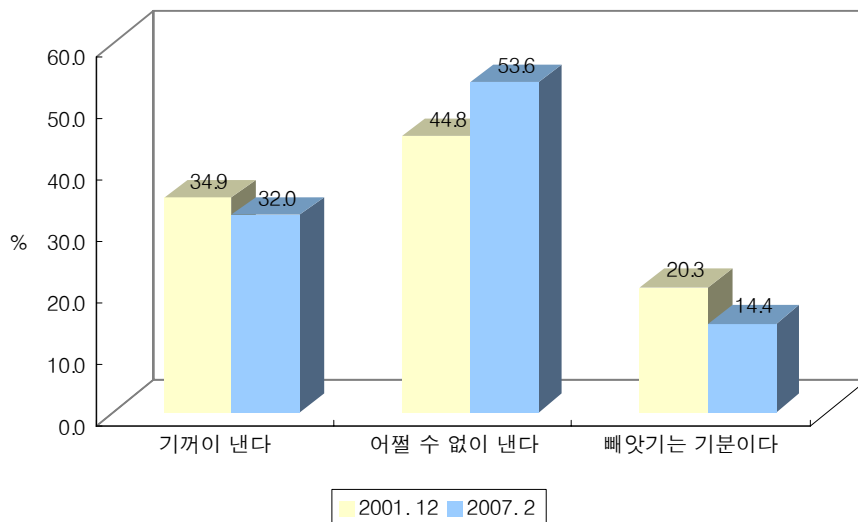
이번 항에서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실시한 납세순응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 세무조사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제도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는 바, 이 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나. 현황 및 원인분석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를 증진하는 것은 과세당국에게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들 중 최우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들의 자발적 납세순응의 모습은 세무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납세순응도가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전병목·박명호(2007)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실이 정확히 드러나는데(아래 표 참조),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기꺼이 낸다.”라는 납세자의 비율은 약 32%

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낸다.”는 비율이 과반 이상인 53.6%, “빼앗기는 기분이다.”라는 비율이 14.4%로, 부정적인 답변이 거의 70%에 다다르고 있다. 동 연구원이 2001년 실시한 조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 세금을 기꺼이 내는 납세자는 약 34.9%에 불과한 반면, 어쩔 수 없이 내는 납세자의 비율은 44.8%, 빼앗기는 기분으로 내는 납세자의 비율은 20.3%로, 부정적인 답변은 65.1%로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그 추이는 비슷한 실정이다.<sup>52)</sup>

[그림 6] 납세에 대한 순응도 추이



자료: 전병목·박명호(2007).

이처럼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과세당국이 국민에게 일종의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한다. 특히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대표되는 과세당국의 권위는 국민에게 다가서기 쉽지 않은 거리감을

52) 세부적으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10명 중 6명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며, 1.7명은 빼앗기는 기분으로 내고, 나머지 2.3명은 기꺼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10명 중 5명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며, 1.2명은 빼앗기는 기분으로 내고 나머지 3.7명은 기꺼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하며, 이는 결국 납세순응도의 저하로 이어지는 요인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과세당국의 문턱을 낮추는 세정의 실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다행히도 우리 정부 특히 과세당국은 지난 몇 년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실히 수립·이행하여 오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2009년도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입장에 귀 기울이는 진일보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그 결과가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기존의 국세청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의 명칭을 폐지하고 기능을 재조정하여 만든 기관으로, 기존 납세지원국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개괄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여기에 더해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히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에 준해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불만 제기시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향후 그 활용도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순응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업무를 잘못 수행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세무조사에 있어서 부당한 권한행사가 줄어드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무조사’로 대표되는 과세당국의 절대적 권위는 향후 우리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또한 세무조사제도에 있어서도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향을 바꾸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 다. 검토 의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최근에 제시된 대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3)</sup> 첫째 납세자 유형별 및 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납세자 유형별·계층별로 각양각색의 납세순응 위험요소를 세밀히 관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차별화된 조사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무작위 추출조사를 도입하여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Compliance

53)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오윤·박명호(2007) 참고

Analysis Function System, CAF)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통계분석에 기초한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가산세의 차별화 및 증과, 금융실명거래 정상화, 금융거래자료 수집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즉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주의 과세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넷째 세무조사 운영의 정기적·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세목별로 비정기적이고 개략적인 조사운영방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납세자의 유형 및 계층에 따른 탈세위험영역 및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사전략 및 조사운영방침을 제시한 연간보고서 등을 발간·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최근 도입된 납세자보호관제도처럼 세무조사 과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아니할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안·운영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납세순응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VIII. 조세범 처벌제도 확대 방안

### 1. 필요성

조세범(租稅犯)이란 형식적으로는 「조세범처벌법」에 범칙행위로 규정된 벌칙조항의 위반행위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안대희, 2005). 조세범에 관해서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있고,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관한 규정은 모두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죄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sup>54)</sup> 하지만 실제로는 조세포탈죄·체납죄·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만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 나머지 범죄에 관해서는 그 적용례가 거의 없어 동 법에 대해서는 ‘사문화(死文化)’되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기도 하다.

조세범처벌제도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몇 죄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실무적인 특징 때문에 일부에서는 동법의 사문화를 지적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소극적인 실무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다만 조세범에 있어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조세범의 경우 친고죄(親告罪)로(같은 법 제6조 참조)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과세당국으로서의 굳이 조세범처벌법에 문의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그 활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사회적 현실과 이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반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2009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도 조세범과 관련된 많은 개선안이 마련되어 있어, 이 분야의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조세범처벌제도의 활성화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한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입법적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도 있어 이하에서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54) 조세범처벌법은 지방세에도 준용되고(지방세법 제84조 참조), 관세법에는 별도로 형벌규정이 있다(관세법 제268조의2 이하 참조).



## 2. 현황 및 문제점

조세범처벌법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내 5개 법원이 2006. 1.부터 2006. 7.까지 선고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 중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84%를 차지하고, 조세채납사건이 12%, 조세포탈이 5%를 차지해, 일부 유형의 범죄만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용주, 2006).

과세당국의 통계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 표는 기본적으로 조세포탈의 경우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자료상)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두 범죄유형 모두 개인보다는 법인 형태의 범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조세포탈죄의 증가 추세가 매우 꾸준함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조세범 고발실적

(단위: 건, %)

연 도	합 계			조세포탈범			자료상		
	소계	법인	개인	소계	법인	개인	소계	법인	개인
2003	2,272	**	**	164	**	**	2,108	**	**
2004	4,006	**	**	308	**	**	3,698	**	**
2005	4,002	2,117	1,885	277	160	117	3,725	1,957	1,768
2006	2,164	1,170	994	328	128	200	1,836	1,042	794
2007	2,136	1,212	924	434	159	275	1,702	1,053	649

주: 1. 해당연도 중에 고발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2. \*\*는 통계생산을 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한국조세연구원(2007).

전항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나 조세포탈죄 등 일부 죄목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이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고, 이 법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한 조세환경에 따른 법률의 제·개정이 오래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구성요건의 체계나 형량 등 전체

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이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세범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도 아울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 3. 검토 의견: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종래 동법의 활용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법규정이나 체계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나, 아울러 조세범 형사처벌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사유에 대한 유력한 견해가 있어서, 이를 조세범처벌제도의 한계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sup>55)</sup> 즉 형사처벌은 수사-소추-심판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나, 조세범죄의 경우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범칙조사가 통상적인 형사절차보다 앞서 진행되기 때문에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언제든지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로서 기능하는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는데, 조사의 실질은 세무조사나 범칙조사나 거의 같다. 또한 범칙조사를 한 결과 통고처분으로서 부과되는 범칙금은 벌금 또는 과료로서 형벌(형법 제41조 6호·8호)이 되며,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동일한 사건으로 검사에 의해 소추되지 않는다. 즉 범칙조사절차는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절차를 대체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조세포탈죄에 관해서는 조세당국의 고발 없이 소추가 가능하므로, 수사기관들은 세무조사와 범칙조사와 별개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법을 해석한다.

55) 이상돈, 「조세형법론: 조세범처벌의 형사실무와 형법이론적 제한」, 세창출판사, 2009, 126면 이하.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의 적용과 특가법 적용의 차이가 단지 포탈세액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포탈세액의 규모는 법원의 심리에 의해 비로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범칙사건임이 밝혀지기도 한다. 또한 이와 정반대로 과세당국은 범칙사건으로 보고 통고처분을 했지만, 수사기관은 특가법상 조세포탈사건으로 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여 소추하며, 법원은 특가법사건으로 보고 통고처분을 무효화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첫째 절차적으로 보면 범칙사건과 특가법사건의 구별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둘째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의해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심판까지 받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 질 수 있다. 특히 그런 이중의 부담이 기업의 경영진에게 가해질 때에는 기업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지기도 한다. 셋째 이와 같은 부담은 형벌 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세범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즉 과세당국과 사법당국의 권한분배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여 이중처벌 내지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반하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입법이나 제도개선에 있어서 유력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IX.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 방안

### 1. 필요성

세금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조세쟁송제도는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확대되어짐에 따라 과거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 법원이 내놓은 조세관련 사건의 처리 건수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그 추세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계량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세금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은 우리 일상을 통해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더구나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세제도에 대해 많은 개편과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와 같은 조세쟁송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의 중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문제는 ‘재정조세 전문법원’의 설치에 대한 것이다. 특히 2008년부터 종래의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확대·개편되어 조세쟁송제도의 개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sup>56)</sup>

### 2. 현황 및 문제점

조세쟁송절차란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가 있다. 조세심판원의 경우는 조세불복절차와 관련된 기구로서 종래 국세심판원이 조세심판원으로 확대·개편된 것이고, 재정조세 전문법원의 설치는 조세소송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절차를 현재는 ‘행정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56)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황진영(2008)참조.

조세소송절차를 포함한 행정소송절차는 민사소송절차 등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취하고 있으며, 제1심사건의 경우는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9조 제1항·제13조, 법원조직법 제40조의 4·제28조 2호·제14조 제2호 참조). 다만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의 행정사건의 관할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의 본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소송법 부칙 제2조).

이처럼 현행법상 조세소송절차는 행정법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별도의 재정조세 전문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에 조세 불복절차를 담당하던 ‘국세심판원’이 확대·개편되어 지방세의 심판까지도 아우르는 ‘조세심판원’이 창설되었는데, 조세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일반 행정법원이 조세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법률관계의 경우 전문성·기술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법원의 접수사건 중 최근에는 거의 17~18% 정도에 이르는 사건이 조세사건에 해당할 정도로 그 양적인 규모도 적지 않은데다, 향후 관련사건의 증가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어서 이제는 조세심판원에 그치지 않고 조세소송절차를 담당할 재정조세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조세사건이 행정법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그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행정법원 내에서 조세사건은 연평균 약 14% 정도(제1심 접수사건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공무원관련 사건 비중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법원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도의 경우 그 비중은 15%를 넘어서 17.43%에 이를 만큼 양적인 성장도 눈여겨 볼만하다.

[표 52] 제1심 행정소송사건 중 조세사건의 비중(접수기준)

(단위: 건, %)

종 류 \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11,241	11,411	12,357	13,600	14,397
조 세	1,745 (15.52)	1,602 (14.04)	1,336 (10.81)	1,720 (12.65)	2,509 (17.43)

주: ( ) 안은 조세사건이 행정소송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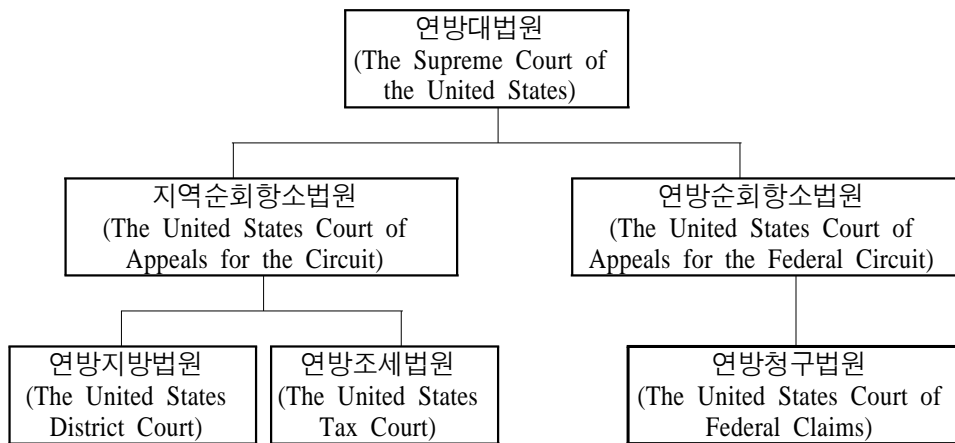
이처럼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그 비중도 적지 않은 조세사건을 별도의 전문기관의 설치 없이 일반 행정법원에서 모두 담당하도록 한 것은 특허사건이나 해사사건(海事事件) 등이 특허법원이나 해양안전심판원 등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에 의해 기술적이고 수준 높은 판단을 받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재정조세 전문법원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볼 시점에 다다랐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재정조세 전문법원의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 외국의 경우는 'Tax Court'라고 하여 '조세법원'으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조세사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건도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입안할 경우에는 '재정법원'이라는 명칭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3. 검토 의견: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재정조세 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미국의 경우는 조세쟁송제도를 담당하기 위해 '조세법원(U.S. Tax Court)'·'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의 3가지 법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조세쟁송제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크게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의 두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하여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우선 국세청 내부의 불복심사기관(Appeals Office)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조세법원의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그림 7] 미국 조세법원의 체계



자료: 이천오(2003).

독일의 경우도 독립된 ‘조세법원’을 두어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은 미국의 경우와 같다.<sup>57)58)</sup> 또한 조세법원을 통한 구제의 방법 외에도 이의신청 등의 행정적 불복절차가 있는 것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행정적 불복절차는 독일 「국세기본법(Abgabenordnung, AO)」에 의거한 이의제기(Einspruch)를 의미하며,<sup>59)</sup> 종래 존재하던 행정청원(Beschwerde)은 이의제기제도에 통합되었다.

57) 독일의 조세쟁송제도에 대해서는, 김유찬(2004); 법무부(법무실)(2004) 등 참고

58) 독일 조세법원의 명칭에 있어 간혹 ‘재정법원’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하게는 ‘조세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의 면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59) § 347 AO.

독일 기본법<sup>60)</sup> 제108조 6항에서는 조세법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즉 “재정재판권(Finanzgerichtsbarkeit)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였고,<sup>61)</sup> 국세기본법에는 조세법원의 조직이나 심리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으며, 별도로 특별법인 「조세법원법(Finanzgerichtsordnung, FGO)」을 두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독일의 연방재정에 대한 재판권은 조세법원이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두 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하면 우리나라의 제도 고안시 시사하는 바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제도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60) 독일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해당한다.

61) § 108 Abs. 6 GG.



## 제3부

# 중점 추진 과제별 분석

- I.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II.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 III.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 IV. 재정건전성 확보
- V.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 I.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세제지원 개편내용은 [표 57]에 요약되어 있으며, 크게 4 가지 부문-영세 자영업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취약계층 지원 및 기부문화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으로 나뉜다.

###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영세 자영업자 세제지원 내용은 크게 (1)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2)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연장, (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으로 나눌 수 있다.

#### 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우선,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현재는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킨다. 이것은 무재산 결손처분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기결손 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박명호(2009)는 이러한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 저하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시적으로 동 방안을 적용

할 예정이라면, 한시성 규정에 대한 준수 의지를 보다 강력히 표명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53]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

부문별	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말까지 사업재개 또는 취업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500만원까지 소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패자부활의 기회제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해 허용하는 의료비·교육비 공제 일몰2년 연장(2012.12.31까지)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특례 2년 연장(2012.12.31까지) (소매업) 2% → 1.5%, (음식·숙박업) 4% → 3%	영세자영업자 지원 연장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등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감면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 감면한도: 월세 지급액의 40%, 300만원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불 입액 소득공제 신설	2009.5.6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 허용 • 감면한도: 연 120만원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2년 연장(2009.12.31 → 2011.12.31)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면세 3년 일몰연장(2009.12.31 → 2012.12.31)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섬 주민의 생활여건 지원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공장·광산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2012.12.31까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배설 촉진제, AIDS 치료제 등 7종	학생·근로자의 식비 부담 경감 희귀병환자 치료제 구입비 경감
취약계층 지원 기부 활성화	휴먼에코관리재단 출연금 손비인정 확대 (개인 20%)에서 50%로 확대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 (개인 20%)에서 50%로 확대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기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경쟁력있는 장수기업의 기업상속 지원
	중소기업 주식 상속 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1년 연장(2009.12.31 → 2010.12.31)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 하는 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기타 중소기업 지원 제도 일몰 3년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지원 연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담 소득공제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일몰규정 (현행, 2010.12.31까지) 삭제	제도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또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을 축소한다. 현재 세무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하여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되고, 체납세금 총당순위가 가산금이 아닌 본세부터 총당하도록 변경하여 체납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나.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현재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금년 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 성실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자,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이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표 54] 소득공제제도의 현황(2009년 기준)

항 목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	○
연금노후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	○
기부금 공제		○	○
표 준 공 제		○	○
특별 공제	보험료	○	×
	의료비	○	× (단, 성실사업자는 ○)
	교육비	○	× (단, 성실사업자는 ○)
	주택자금	○	×
	혼인·장례·이사비	2009부터 폐지	×
근로소득공제		○	×
기타 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불입금	○	○
	중소기업창투조합 출자등	○	○

주: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게 적용

#### 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현재 간이과세자<sup>62)</sup>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까지 2년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감안한 별도의 세율은 소매업의 경우 1.5%, 음식·숙박업의 경우 3%이다. 박명호(2009)는 이러한 조치가 간이과세자를 축소하려는 정책들과 상충하는 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62)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표 55] 업종별 부가가치율

(단위: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2002	20	25	30
2003	20	27.5	35
2004~2005	20	30	40
2006~2009 (2012까지 연장예정)	20	30	40
	소매업 15%, 음식점업·숙박업 30%		

##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가. 저소득 근로자 지원

#### (1) 개정내용

첫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원 한도)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전세와 마찬가지로 월세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예정이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이다. 월세 가구는 약 300만 가구,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약 9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09년 5월 6일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어린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2) 검토의견

정부에서는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된 세수감소가 2011년에 약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시행상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과약이 가능해지면서 월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둘째, 전세세입자와의 형평성 셋째, 월세 사용 고소득자와의 형평성이다.

우선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월세 및 사글세 세입자는 전체 가구의 19.2%로 약 301만 가구에 달하지만, 2006년 기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임대가구수는 약 101만 가구에 그친다.<sup>63)</sup>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인한 소득 과약이 가능해지면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높아지고, 임대사업자는 높아진 세부담을 주택시장에서의 탄력성에 따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

63) 건설임대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건축법허가자)와 매입임대사업자를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표 56] 2005년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가구 현황(일반가구)

(단위: 가구, %)

	합계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일반 가구	15,887,128	8,828,100	3,556,760	2,394,557	333,206	284,092	490,413
비중	100.0	55.6	22.4	15.1	2.1	1.8	3.1

자료: 통계청 (<http://www.kosis.kr/>)

또한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성명재(2009)에 의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우선, 전세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이에 대해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공제할 경우 자가주택 거주자와의 불형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시가 1억원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만 주택구입 목적의 차입금 이자비용 일부를 공제하고 있을 뿐, 임차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사례는 없다.

#### 나. 농어민 지원 및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 첫째,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가 신설된다. 현재 농어업인이 2009.12.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한다. 둘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된다. 현재 금년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되고 있으나,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적용시한을 2011.12.31까지 2년 연장



한다. 이 외에도 농어업 대항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연장되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가 연장되며,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을 완화한다.

한편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근로자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시한이 금년 말에서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둘째, 현재 일부 희귀병치료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구입비 경감을 위해 7가지 희귀병 치료제(① 보행장애 치료제, ② 구리 배설 촉진제, ③ AIDS 치료제, ④ 삼킴장애 제거제, ⑤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⑥ 성장 지연 치료제, ⑦ 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를 면제대상에 추가한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 수는 총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지원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외에도 체대군인 전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중부세를 비과세하여, 노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할 예정이다.

### 3. 취약계층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비율이 확대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연장되며 사회복지시설이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현재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 내에서 손비를 인정하고 있으나,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50%로 확대한다.

둘째, 현재 사업자가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예로는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이 있다.

#### 4. 중소기업 지원<sup>64)</sup>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첫째,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완화된다. 2008년 세제개편시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100억원 한도)하도록 상속세 감면이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 재직요건 80%가 너무 엄격하여 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완화된 조건은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 등이다.

64)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승훈(2009.9), 「III. 조세지출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예산정책보고서 제4호,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둘째,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현재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으나, 이 적용시한이 2010년까지 1년 연장된다.

셋째, 이 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일몰이 연장된다.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이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되는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등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 등이다.

이 외에도 국세신용카드 납부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가 영구화된다. 또한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탁·약주 제조시설은 발효조 6kl, 제성조 7.2kl 이상이어야 하나, 각각 3kl, 2kl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II.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행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중점 추진 과제의 하나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미 추진한 법인세 등 세율 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하면서, R&D분야에 대한 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기초를 밝히고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세액공제 등 R&D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녹색펀드·녹색예금 등 녹색금융 가입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를 보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간 과세정보 교환규정을 보완하여 등 국제조세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 밖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기존의 SOC투자지원 제도에 대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 인력공급업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등 각종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표 57] 2009년 세제개편안의 미래성장동력 확충지원 과제 주요 내용

개정내용		개정 주요내용
R&D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 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동력 산업: 3~6% → 20%(중소기업 : 25% → 30%)</li> <li>• 원천기술: :3~6% → 25%(중소기업 : 25% → 35%)</li> <li>• 일몰시한: 2012.12.31까지(3년 한시)</li> <li>*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의 범위 : 시행령 규정</li> </ul>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li> </ul>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한해 일몰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li> </ul>

개정내용		개정 주요내용
저탄소 녹생 성장 지원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대상: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li> <li>부과기준: 품목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li> <li>세율: 5%      • 시행기간 : 5년 한시 시행</li> </ul>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펀드: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li> <li>녹색예금·채권: 이자소득 비과세</li> </ul>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 2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li> <li>품목확대 : LED, 플라즈마조명 등 추가</li> <li>공제 한도신설 : 산출세액의 30% 내</li> </ul>
원활한 기업 구조 조정 지원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mp;A에 대하여 합병 지원세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범위 확대</li> </ul>
개방회를 위한 국제 조세 제도 개선	이슬람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면제</li> </ul>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li> </ul>
SOC  투자 세제 지원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 과세(14%) 일몰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시한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li> <li>대상채권의 요건완화</li> </ul>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li> </ul>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li> </ul>

개정내용		개정 주요내용
서비스 산업 세제 지원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사업의 범위 확대	• 방송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추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 인력 공급업·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 케팅업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호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  •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 소비세 감면 1년 연장(2010.12.31까지)

## 1. R&D 지원확대

### 가.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 (1) 주요내용

이번 R&D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중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개편안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 25%(중소기업은 30%,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은 당해연도 R&D 비용에 대해 3~6%(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수준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편안의 세액공제 대상 산업은 녹색관련 산업,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교육서비스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폐지한 것과 달리 이번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지원에 대하여는 2012.12.31까지 일몰 기간을 두고 있다.

## (2) 검토의견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면서 R&D에 대한 정부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신성장 동력산업 등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가 기업의 R&D투자에 미치는 정(+)의 효과에 관해서는 기존의 다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손원익, 2002; 고종권, 2004; 원중학·김진수, 2006).

다만 최근의 R&D분야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지원확대 추세 및 현재 우리나라의 R&D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sup>65)</sup> 이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시장실패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부문과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외부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를 선별적·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선정될 경우 일몰종료(안)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원대상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R&D분야에 대한 세제 및 예산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가능성이 있거나 연구성과가 미흡한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R&D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예산 및 금융지원 등 다른 지원수단과 연계한 적정지원 수준과 지원방법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예산안 중 신성장 동력부문에 대한 예산은 2조 8,621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0.2%, 2009년도 추경 대비 9.0% 증가한 수준이다.

---

65) 2007년 기준으로 R&D 총 투자규모(민간부문 포함)는 GDP대비 3.47%로 세계 3위 우리나라의 R&D투자 규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R&D분야)” 공개토론회(2009.6.24), 기획재정부·KDI 주최.

[표 58] 2010년 예산안의 신성장동력 관련 지원 규모

(단위: 억원, %)

	2009		2010	증 감		증가율	
	본예산 (A)	추경 (B)	예산안 (C)	(C-A)	(C-B)	(C-A) /A	(C-B) /B
신재생에너지	4,101	4,101	6,292	2,191	2,191	53.4	53.4
탄소저감에너지	814	1,384	1,229	415	-155	51.0	-11.2
고도 물처리산업	944	1,175	1,060	116	-115	12.3	-9.8
LED 응용	473	473	139	-334	-334	-70.6	-70.6
그린수송시스템	992	1,542	1,295	303	-247	30.5	-16.0
첨단그린도시	1,796	1,796	1,795	-1	-1	-0.1	-0.1
녹색기술산업 소계	9,120	10,471	11,810	2,690	1,339	29.5	12.8
방송통신융합산업	2,798	2,998	2,919	121	-79	4.3	-2.6
IT융합시스템	2,867	3,067	2,989	122	-78	4.3	-2.5
로봇응용	866	966	990	124	24	14.3	2.5
신소재·나노융합	2,205	2,205	3,000	795	795	36.1	36.1
바이오제약·의료기기	1,770	2,070	1,667	-103	-403	-5.8	-19.5
고부가 식품산업	299	299	722	423	423	141.5	141.5
첨단융합산업 소계	10,805	11,605	12,287	1,482	682	13.7	5.9
글로벌 헬스케어	354	354	378	24	24	6.8	6.8
글로벌 교육서비스	670	670	420	-250	-250	-37.3	-37.3
녹색금융	-	-	36	36	36	순증	순증
콘텐츠·SW	2,460	2,760	2,982	522	222	21.2	8.0
MICE·관광	405	405	708	303	303	74.8	74.8
고부가서비스산업 소계	3,889	4,189	4,524	635	335	16.3	8.0
합 계	23,814	26,265	28,621	4,807	2,356	20.2	9.0

자료: 국무총리실, 2009. 10.

그리고 감면규모가 1.5조원(2008년도)에 달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갖은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개편안의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R&D세액공제 지원강화로 예상되는 세수효과와 이로 인해 수혜를 받는 부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동 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09.9.27)’의 비용 추계서에서 신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시 2010년 480억원, 2011



년 7,520억원으로 총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 근거를 단순히 기존의 R&D세액공제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의 절반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9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큰 폭으로 인상(10%→20%)한 이후 그 감면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 해 세제개편안에서 동 제도의 보완조치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세수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지원 확대에 의한 효과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07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R&D세액공제 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8,313개 신고법인 중 중소기업이 7,818개, 일반기업(대기업)이 495개 법인으로 각각 전체의 94.0%, 6.0%의 비중을 보였다. 신고법인 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36.4%인 5,110억원, 일반기업이 36.6%인 8,927억원의 감면을 받아 1개 법인 당 중소기업은 평균 1억 22백만원, 일반법인은 평균 32억 59백만원의 감면실적을 보였다.

[표 59]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의 R&D세액공제(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신고 법인수	감면금액	금액/법인수
합 계	8,313(100.0)	1,403,720(100.0)	3,381(100.0)
중소기업	7,818(94.0)	510,987(36.4)	122(3.6)
일반기업	495(6.0)	892,733(63.6)	3,259(96.4)

주: 이 수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2007년 총 감면세액 (1조 4,080억원) 중 소득세(43억원)부분을 제외한 수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

## 2.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1)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한 주요 개정내용으로 우선 에어컨, 냉장고, TV 등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기준은 품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제품에 대하여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5년 한시로 과세하며, 이를 통해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계획이다.

#### (2) 검토의견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에너지소모가 큰 가전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경우 이를 통해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보다 오히려 가격 왜곡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책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근본대책이라기보다 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어 과세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근 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교토의정서 체제하에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환경오염의 사회적 피해비

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외부성 교정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므로 기존의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탄소세의 도입과 같은 환경관련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김승래, 2007).

## 나.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 (1) 주요내용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의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 지원대상 녹색금융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이다. 녹색펀드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 1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녹색예금 및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지원시한은 2012년 말까지이다.

### (2) 검토의견

녹색펀드, 녹색예금·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각종 비과세금융상품에 대한 정비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크다. 특히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투자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를 함께 허용하고 있으나 중복·과다 지원의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올해 일몰 도래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도 중복·과다지원을 이유로 비과세 혜택이 외에 소득공제 적용을 축소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에 비추어도 녹색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3.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국제조세 제도개선

#### 가.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 (1)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로 우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인수·합병(M&A)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등 면제 등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과세특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업의 동질성 요건을 강화하면서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한다. 그 밖에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구조조정기금 사업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올해 일몰도래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한다.

##### (2) 검토의견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과세제도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경제적 실질에 적합하게 과세제도가 규정되어야 한다(김진수·이준규, 2006).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M&A)합병이 가능하도록 과세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실질이 인수·합병(M&A)과 유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 인수·합병(M&A)에 대한 과세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국가간 과세정보 교환대상 확대 등

### (1) 주요내용

국제조세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 외에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도 제공대상에 포함한다. 그 밖에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20% → 10%이상)하고,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을 완화(발행주식등의 50% → 40%이상)한다.

### (2) 검토의견

국가간 과세정보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최근 다국적 기업 등 기업의 해외진출이 점증하는 가운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의 중요성과 국가간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을 완화할 경우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4. SOC투자 및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 가. 주요내용

우선 SOC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으로 첫째, SOC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대상채권의 요건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둘째,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공

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국가·지자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원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주요내용으로 수도권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방송업, SW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을 포함한다. 그 밖에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고,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2010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 나. 검토의견

SOC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중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SOC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채권만기기간을 현행 1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1999년 제도 도입이후 개인투자자가 이 제도를 활용한 실적이 전무하지만, 일몰연장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SOC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이전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채권발행계획 등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III.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대해서는 지난 1951년 제정 이후 그 동안 일부규정의 부분적 개정에만 그치고 그 활용도도 매우 낮아 법의 사문화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금번 세제개편안이 고소득 전문직 등이 과표양성화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동법에 대해 여러 가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시사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 60]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개선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개정내용: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일정액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미발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고소득 전문직(자격사) 및 일부 세원투명성 취약 업종 발급기준 거래금액: 건당 30만원 이상 처벌내용: 위반자에게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실효성 확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제도 합리화	조세포탈죄(제9조) 양형체계 변경(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한 처벌 강화) : 조세포탈의 상습성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 등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 ① 기본형량: 현재의 과도한 형량수준을 전반적으로 완화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이하 벌금(자수할 경우 형의 1/2 감경).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을 대상, 5억원 이상 고액 포탈범은 특기법을 적용② 일정 탈세액·탈세비율 이상시 형량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개선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형량 가중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이하 벌금. 상습범 가중: 「상습범」인 경우 상기 형의 1/2을 가중 처벌·조세포탈죄 구성요건 명확화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	<p>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과태료 처벌 신설: 소액뇌물 수수자·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 부과</p> <p>세무대리인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지시 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벌금형 수준 상향조정: 50만 원이하 → 1,000만 원이하 -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p>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상가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 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화·실효 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 출·부실기재 가산세(1%) 신설·시행: 2010.7.1이후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 산세 세분화	<p>법인사업자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 시행: 2011.1.1이후</p> <p>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를 전송기간별로 세분화: 1% → 0.5%, 1%</p>

## 1.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 개선

종래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동법의 제·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거나, 사회 변화에 따르는 법정비가 되지 않아 처벌 필요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고소득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조세범죄에는 대응이 미흡하다는 등의 점들이었는데, 금번 세제개편안은 우선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법을 개선하였다. 즉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일정액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미발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대상 업종은 변호사업·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감정평가사업·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VAT 과세대



상)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의료 관련 업종, 입시학원·골프장업·예식장업·장례식장업 등 기타 업종이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상의 죄목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세포탈죄(동법 제9조)에 대해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법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액뇌물 수수 및 공여행위, 세무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에게 과태료 처벌을 신설하고, 세무대리인 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 수준을 상향하고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하였다.

신종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최근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 면세유 부정 유통, 가짜 주류 제조·판매 등의 범칙행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경우 제조자와 판매자를 구분하여 3년 이하의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면세유 부정유통과 가짜주류 제조·판매의 경우에도 그 처벌을 대폭강화 하였다.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는데, 현실적으로 탈세 행위를 한 하수인은 엄벌에 처해지는 반면, 이익귀속자인 법인은 과소 처벌되는 문제를 금번에 해결하였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대상인 법인의 범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범죄행위자인 개인과 이익귀속자인 법인 간의 처벌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그 동안의 사회환경 변화로 처벌의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결손금과다계상죄 등의 범칙유형을 정비하여 각 범칙유형 간 경중을 감안한 과형을 균등하게 조정하였다.

## 2.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현행법상 상가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역학관계 등으로 인해 과표 노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번 세제개편안은

상가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이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에 대해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일 지역 내의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하여 임대료 과소신고 여부 등을 파악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정상화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총 매출액이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를 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여로 임대소득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확대

현행법은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세제개편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교부의무사업자에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과표양성화 추진을 현재 신용카드를 통한 소매단계에서 생산·유통 등 중간단계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자료상을 통한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통이 억제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편안은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를 전송기간 별로 세분화하여(1% → 0.5%, 1%), 전송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조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할 유인을 부여하였다.

### 4. 기타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 제고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하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변호사의 경우 현재 법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소송 수입자료가 민사사건 위주로 원고 승패여부 등만 표시되고 있어 과세자료로 활용이 미흡하였으나, 향후에는 이를 법원이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등을 했는지의 여부도

구분·표시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형사사건 수입금액의 파악에 적극 활용 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도 강화하여, 현재 미제출 및 부실기재시 관련 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1%로 강화하였다.

끝으로 현재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업종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하던 것의 범위를 확대하여, 약사·한의사·수의사·공인노무사 등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하였다.

## 5. 검토 의견

종래 조세범처벌법에 대해서는 일부 죄목을 제외하고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아 법이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금년도 세제개편안이 조세범처벌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개편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범처벌제도에 대한 개편은 단기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번 세제개편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차원에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반적인 조세범처벌제도의 체계나 구성 요건, 양형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처벌제도의 개편과 함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사정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르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기능도 병행될 것으로 보여,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할 경우 일정한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소위 ‘세파라치제도’의 도입은 종래 각종 ‘파라치’제도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 전례를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V. 재정건전성 확보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점 추진 과제의 하나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소득자·대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축소되고, 금융관련 과세체도가 정비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와 지원목적 달성 감면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고소득자·대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방안으로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예정신고 의무화,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등이 추진된다.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 ETF수익증권 증권거래세과세, 장기주식형·회사채형 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및 비과세 일몰 연장, 생계형저축과 조합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 배제,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 등이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방안으로는 성인대상 영리학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강화,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정비,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확대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지원목적 달성 감면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 등이 추진된다.

[표 61] 2009년 세제개편안의 재정건정성 확보 주요 내용

개정 내용		개정 주요 내용
고소득자·대법인·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li> <li>•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를 축소</li> </ul>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li> <li>• 양도 후 2개월 내 예정신고 의무화</li> <li>• 2개월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li> </ul>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억원 초과 기업은 13%, 15%로 환원</li> </ul>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li> </ul>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금의 일부(60%)만 과세</li> <li>• 과세최저한 설정(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li> <li>• 시행시기 : 2011년부터 시행</li> </ul>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원천징수율 14%)</li> </ul>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종료</li> </ul>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부터 증권거래세 과세</li> </ul>
부가세 과세기반 확대	ETF수익증권 증권거래세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세율(0.1%)로 증권거래세 과세</li> </ul>
	금융상품 비과세·감면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주식형·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li> <li>•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비과세 일몰연장</li> <li>• 생계형저축과 조합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 배제</li> <li>•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li> </ul>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적으로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부터 과세</li> </ul>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부가가치세 과세전환</li> </ul>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세액공제율 10/110에서 6/106으로 단계적(매년 1%) 축소</li> </ul>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li> <li>•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li> </ul>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업소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제외</li> </ul>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대상 축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정부업무대행단체</li> <li>• 면세대상업무 축소 : 산림조합 등 4개 단체</li> </ul>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간 연장: 구매일 15일 이내→3월 이내</li> <li>• 금액 상한: 건당 5백만원 이내→모든 거래</li> <li>• 신청건수 제한 : 월 2건 이내 → 제한 폐지</li> </ul>	

개정 내용		개정 주요 내용
지원목적 달성 비과세 감면 제도정비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연간 300만원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 일몰 종료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축소: 5년간 100%면제→2년간 50%감면 • 외국법인의 Royalty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폐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과세특례 개선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정비사항	• 경형 승용·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에 대한 교통세·개소세 환급 • 벤처·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 1. 고소득자·대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 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1) 개정내용

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 등 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총급여 50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한도액을 10만원씩 하향조정하였다.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2010년 귀속소득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5%에서 1%로,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5%로 인하하였다.

## (2) 검토의견

2010년 귀속소득분에 적용되는 고소득 과표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세수 감소를 고려한 정책이다. 즉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방안은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하의 후속대책으로써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율 인하유보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 정책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단, 특정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세수확보와 과세미달자 비중의 축소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1) 개정내용

현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 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은 2006년 0.9조원, 2007년 1.2조원, 2008년 0.9조 원 등 매년 1조원 내외 규모이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만일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가산세율은 과소신고 시 10%, 무신고 시 20%, 납부불성실 시 연 10.95%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2) 검토의견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는 1975년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제도이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국세전산화와 금리수준, 그리고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매월 또는 매분기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가 없고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세목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 존치의 이유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세제개편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자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한 바 있다. 2008년 세제개편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의 이유는 ‘불합리한 조세체계의 개선’이었다. 즉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간에 형평성이 훼손되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예정신고에 대한 유인(incentive)에 적용하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에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행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감소시킨 바 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위한 비용감소와 양도소득세를 주로 납부하게 되는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의 폐지 및 가산세의 도입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 1975년 이후 장기간 동안 운용이 되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확정신고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중단이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고, 2011년 양도분부터 세액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75년 이후 의무조항이 아니었던 예정신고가 의무화되고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미신고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산세 부과 경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 (1) 개정내용

현재 주택 월세 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되고 있으며, 1주택의 경우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해 2011년 이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으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의 일부인 60%만 과세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과세최저한으로 설정하여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실질적으로는 제외되도록 하였다.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3\text{억원 초과 보증금} \times 60\%) \times \text{이자율} - \text{임대관련 발생 이자} - \text{배당}$$

이때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2) 검토의견

전세보증금은 전세주택소유자의 실질적인 소득이다. 따라서 월세 임대 소득과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과세가 되고 있는 여타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세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01년 이전에는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와 임대보증금으로 창출하는 다른 소득과의 이중과세 문제, 그리고 낮은 과세포착율 등을 감안하여 2001년에 과세가 폐지된 바 있다. 2001년 폐지 이유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3주택 이상자에게만 과세를 하고, 임대관련 발생 이자 및 배당을 과세표준

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담 전가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에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과세시기를 2011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세보증금 과세가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전세보증금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최저한을 3억원으로 두고 있다. 실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하는 전세 물량은 전국의 전체 전세물량과 비교할 때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8월 기준 3주택이상 보유자는 주택보유자 중 1.6%인 약 16.5만 세대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 중 약 8.3%에 해당하는 93만호이다. 93만호에서 3주택 이상 주택보유세대수를 제한 76.5만 호가 임대차 물량이라고 가정한 후,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면 대략 전세물량의 수는 46만호 정도가 된다.<sup>66)</sup> 이 중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주택이 주로 주거선호지에 분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실질적으로는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이 되는 전세물량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과세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피하거나 소득세수를 줄이기 위한 반전세 형태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할 경우 공급부족현상 및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보유 주택 수가 부부합산으로 3채인 경우라도, 주택 보유 명의가 가구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와 분산되어 있는 경우 세부담에 차이가

66)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2월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이다.

날 수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수는 주택 월세와 같이 부부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부부합산으로 주택 2채 이하 보유 시 전세보증금에 대해 미과세하는 것이다. 반면 3억원의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때에는 인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부가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2채를 각각 3억원에 전세로 임대(전세보증금 합계 6억원)하였으며 임대관련 이자나 배당은 없는 가정해 보자. 만일 2채 모두 가구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3억원을 제한 3억원의 60%에 이자율을 곱한 액수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1채는 가구주 명의로 되어 있고, 1채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와 배우자 각각에게 귀속되는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셋째, 다양한 조세회피로 인해 전세보증금 과세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 보유 명의 변경이나,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과세로 인한 세수보다, 전세 보증금 과세로 인한 전세시장의 변동 등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 2.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 가.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의 일몰 종료

#### (1) 개정 내용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의 일몰이 종료된다. 이 제도는 2008년 10월 금융위기에 따른 증시 안정대책으로 도입되었다. 주 내용은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 1인당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며, 만기 3년 이상의 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가입한도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 (2) 검토의견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에 세제지원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세제지원 제도가 도입된 후 2009년 7월 31일까지 장기주식형펀드는 약 3,133억원, 장기회사채형펀드는 약 3,333억원 수준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8년 10월 1113.06이었던 KOSPI지수가 2009년 9월말 기준 1673.14로 상승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시장도 상당 수준으로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예정대로 세제지원 일몰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 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및 소득공제 폐지

### (1) 개정 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되, 연간 300만원의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던 것은 폐지한다. 이때 소득공제의 폐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되, 연 급여가 8,8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한다.

### (2) 검토의견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및 소득공제 폐지의 이유로 과도하고 중복적인 비과세·감면의 합리화를 들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2중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고, 동 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을 향후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처음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모두 일몰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득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여론을 고려하여 비과세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고, 소득공제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2009년 세제개편안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하되, 연 급여가 8,8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급여가 8,800만원 이하자의 비중은 2%에 못 미치는 아주 작은 수준이다.<sup>67)</sup> 즉,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후라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농어촌의 저가주택 소유주가 면적초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 시가 5천만원 이하 저가주택의 경우 면적요건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 다.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을 배제

### (1) 개정 내용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현재 생계형저축의 예금과 농협 조합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각각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67)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준으로 급여가 보고된 근로소득자의 수는 13,376,254명이고, 이중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보유자는 13,292,795명, 각종 공제제도 적용 후 과세표준이 보고된 근로소득자의 수는 7,748,670명이다. 과세표준이 보고된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208,484명으로 급여가 보고된 근로소득자수 대비 1.56%, 과세대상 근로소득 보유자수 대비 1.57%, 과세표준이 보고된 근로소득자 대비 2.67%이다.

## (2) 검토의견

현재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서민층에 대한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동시에 받는 것은 유사한 지원제도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중복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부부기준 총 1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저축 상품 가입이 가능해져서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생계형 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 배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3.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 가.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1) 개정내용

현재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교육용역 중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1차적으로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2010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 (2) 검토의견

OECD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 공통적으로 면세되는 분야를 정한 후 ‘표준면세’라고 칭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편서비스, 환자 우송, 의료서비스, 인간의 혈액, 세포조직 및 장기, 치과치료, 자산사업, 교육, 비영리기관의 비상업적 활동, 스포츠, 문화서비스(TV와 라디오 제외),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 임대, 금융서비스, 도박 및 복권, 토지 및 건물의 공급, 특정 자금 모집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익 목적의 교육용역 역시 OECD 표준면세의 범위에 포함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목적의 교육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교육용역의 범주에 포함하여 면세해 왔다. 이처럼 면세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세원을 축소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대한 과세 전환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대한 과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 사설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귀착효과, 물가상승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과세 전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과세의 경우 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리목적의 사설학원과 공익목적의 교육기관에 대한 구분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성인 남녀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시험인 면허시험을 대행하는 등 공익적인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과 영리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나.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1) 개정 내용

현행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액의 일정비율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9년 세제개편 안에서는 유흥주점 등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2) 검토의견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유흥주점 등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을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까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목적을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전에 ‘조세원칙’과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유흥주점 등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흥주점 등에게 과도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즉, 유흥주점 등에게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세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의 예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거래 단계 중 채취 단계에서는 채취한 원재료를 상품가격 100원에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10원을 정부에 납부한다. 일차가공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10원을 포함한 110원에 원재료를 매입한 후 일차가공품을 생산하여 이를 상품가격 150원에 부가가치세 15원을 합한 165원에 판매한다. 이후 일차가공단계에서는 15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매출세액)한 후, 채취단계 생산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10원을 환급(매입세액 환급) 받는다.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완제품 단계를 거쳐 면세가 이루어지는 도매 단계에서는 완제품 가격 250원에 세액 25원을 합한 275원에 상품을 매입한다. 이후 도매판매자는 300원에 완제품을 판매하는데, 이때 상품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면서 도매판매자의 매출세액은 0원이 되며,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25원을 환급받지도 못한다. 따라서 도매판매자의 최종 납부세액은 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판매자는 300원에 도매상품을 매입한 후, 이를 상품가격 330원과 부가가치세 33원을 합산한 363원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33원을 세정당국에 납부한다. 이때 최종판매자가 매입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의 과정을 보면 최종판매자가 창



출한 부가가치는 30원(330-300)뿐인데, 최종판매자가 납부한 세액은 33원이 된다. 또한 사회 전체로 볼 때 창출된 부가가치는 330원인데 국고수입은 총 58원이 된다. 정상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최종판매자의 세부담은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 30원의 10%에 해당하는 3원이고, 국고수입은 창출된 부가가치 330원의 10%인 33원이다.

[표 62] 중간단계 면세에 따른 문제점: 누적효과

거래단계	매입		매출		납부세액	부가가치	국고수입
	대금	세액	대금	세액			
채취	-	-	100	10	10	100	10
일차가공	100	10	150	15	5	50	5
완제품	150	15	250	25	10	100	10
도매	250	25	300	0	0	50	0
최종판매	300	0	330	33	33	30	33
합계	-	-	-	-	58	330	58

자료: 광태원·현진권(2007).

이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거래 단계 중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예에서처럼 도매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매출액이 곧 부가가치인 것처럼 계산된다. 그런데 채취, 가공 및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이미 납부된 상태이다. 즉 최종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에 따라 이전 단계의 납부세액을 환급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판매자의 세부담과 국세수입은 부당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중간단계 면세에 따른 ‘누적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제도가 누적효과를 가져올 우려에 대응하여 면세 공급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을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업종별로 이러한 면세 재화 사용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누적효과의 시정

을 통해 부가가치세제와 면세제도가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제도인 것이다.

즉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배제는 누적효과를 발생시켜 부당하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세원을 확보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이는 적절한 조세원리에 입각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배제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V.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 1.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 보완

금번 세제개편안은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기타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개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매수인의 공매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의 처리방식도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를 연장하여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업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시행에 앞선 제도 보완을 시행토록 하였고,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합병에 따른 법인의 폐업신고에 있어서도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이외에 개별소비세의 환입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주세가 면제되는 공업용 주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 63]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개인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	신고지: 관할세무서 → 전국 어느 세무서 인·허 가 업종의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각각 신고 → 세무서나 인·허가기관 중1곳에만 신고·신청방법: 서면신청 → 서면신청 외 온라 인 신청 가능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이민 등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의 경우중합소득세 신고기한 출국일 전10일까지 → 출국 전(前)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 연장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 45일 → 2개 월(현행) 소득세 확정신고시2개월, 중간예납시 45일로 이원화
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연결납세제도 시행 (10년) 전 제도 보완	금융기관 등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가 어 려운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를 자법인의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 적용 요건 ① 법령등에 사업 연도가 규정되어 있고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 일치 ② 법령 등에 의해 연결사업연도의 결산 및 외부감사인 확인 강제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 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 허용(단서 있음)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 신청만 으로도 적용
	개별소비세 환입신고 개선	세금환급을 위한 환입신고 기한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일과 일치: 제품의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매분기의 다음달 25 일까지
	세금환급을 위한 혼유 환입 장소 편의 제고	당초 반출한 제조장 외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 입할 경우 세금 환급 (현행) 수송·저장 과정에 서 발생한 혼유에 대하여 당초 반출한 제조장 으로 환입할 경우에만 세금 환급
	주세가 면제되는 공업용 주정범위 확대	주세면제되는 공업용 주정의 범위: 합성주정 외 에 발효주정 추가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상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	증여세 공제 대상 보완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상속·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 허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5년내 분할납부하는 제도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요건 완화	(개정)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업 의무 사용비율: 현행 90% → 80%로 완화. 성실공익법인: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포·체육 등 비영리 공익법인 중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결산서류의 공시의무 등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목적세 폐지 유예	교통세법 폐지시기 3년 연기,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既통과한 법률 당초대로 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제도 개선	기업의 관세담보 제공의무 일부 기업으로 한정 - 의무대상 기업: 최초 수입업체, 관세채납업체, 관세법 위반업체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대한 양도세 특례 보완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이상 사용)을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일몰시한: 2012.12.31까지. 물류시설의 범위: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조립·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 등
기타 과세 제도 정비 및 보완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서민생활과 관련된 전세권·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전자문서·기프트카드·체육시설 이용권·승마회원권 등 추가(현행)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총 14개 문서에 대해 과세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물품 용도변경 신고기한 신설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의무 신설

세제개편안은 또한 상속·증여세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증여세 공제대 상을 보완하고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를 보완하였으며, 배우자 상속 공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을 확대하였

다. 또한 과세제도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목적세 폐지를 유예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과세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FTA 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 특례법」을 통합하고, 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감면(50%), 고속철도 건설용품 감면(50%) 등에 대한 지원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나, 기타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대책을 내놓았는데, 공익사업의 경우 현재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 이상 사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과세로 조정하기로 하였고,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도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였다.

기타 과세제도 정비 및 보완 방안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물품 용도변경 신고기산 신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개선,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파생상품형 ETF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명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검토 의견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제도 정비·보완을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검토 중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은 목적세 폐지 유예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3개의 목적세 즉, 교육세, 에너지·교통·환경세, 농어촌특별세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에너지·교통·환경세 폐지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한 반면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특히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과 농

어촌특별세법의 폐지법률안은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상황에서,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기통과한 법률들을 당초대로 환원하는 개편안을 제안한 것으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었다.

당초 정부가 에너지·교통·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폐지하고자 하였던 것은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인데, 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 등으로 인해 그 처리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목적세의 경우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일으키고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도 초래한다는 점 때문에 그 폐지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목적세 폐지는 유예되고만 것이다. 그러나 기통과된 에너지·교통·환경세의 경우도 다른 목적세와 마찬가지로 폐지가 유예된 점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으며, 더욱이 정부가 1년 만에 종래의 입장을 번복한 점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보인다.

## 참고문헌

- 고종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 「회계학연구」, 제29권, 제2호, 2004, pp.1-28.
- 고영선,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작업반, 2009.
- 곽대원,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4
-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 권순용·심한택,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13권, 2009, pp125-146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김경수,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9
- 김승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재정포럼」, 7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7. pp. 23-48.
- 김승래·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승래·박명호·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우철,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향”,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8.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김유찬·주기중,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효과 분석”, 「경영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산업경영학회, 2004, pp.27-55
- 김지범, “세법변경이 기업의 조세부담과 조세감면비율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최저한세 도입을 중심으로”, 「오산대학 논문집」, 제24집, 2004, pp.55-74
- 김진수 외,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세법연구 07-14」,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7.
- 김진수·이준규, 「기업인수·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김형준·박명호,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 박기백, “알기 쉬운 세법: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00년 1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0.



- 박기백·정재호,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박기백,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박명호, 「2009년 세계개편안 평가: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9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박춘래·장호영, 최저한세제도의 과세공평성 향상 분석, 회계학 연구, 제19호, 1994, pp275-297
- 박태승,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구너 제1호, 2009, pp.77-122
- 법무부(법무실), 「각국의 국가송무제도(Ⅱ)」, 법무자료 제246집, 법무부, 2004.
- 배상석·김대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제17권 제1호, 2007, pp.85~108
- 서희열·김형상, “법인세조사 실태분석을 통한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무학연구」, 제 19권 제 1호, 2002, pp. 45-75
- 성명재,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손원익·박기백·김우철, 「기업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방안」, 지식경제부 용역보고서, 2006
- 심혜정,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08.
- 안대회, 「조세형사법: 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서울: 법문사, 2005.
- 안종범, 「감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2008
- 안종범,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 발표자료집, 국회예산정책처, 2009.
- 오기수, “언론에 비친 세무조사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20권 제3호, 2003, pp. 197-230
- 오기수, “지방국세청별 세무조사에 대한 분석”, 「세무학 연구」, 제21권 제3호, 2004, pp. 155-187
- 오병기, 「지방소득·소비세 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 리전인포, 전남발전연구원, 2009
- 오윤·박명호,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원종학·김진수,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 분석: 기업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19권, 제4호, 2006, pp. 1653~1679
- 이상돈, 「조세형법론: 조세범처벌의 형사실무와 형법이론적 제한」, 서울: 세창출판사, 2009.
- 이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과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과 개혁과제」, 2009년 한국 금융학회-한국재정학회 공동세미나 발표자료집, 2009
- 이영환·신영임, “2008년 이후 세계개편의 세수효과”, 「경제현안분석」 제41호, 국회 예산정책처, 2009.
- 이전오, “미국의 조세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변호사」, 제33집, 서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 이전오·김완일·이강오,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2008
- 임주영,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 두가지 의문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9권 1호, 2004  
 \_\_\_\_\_,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 제헌 61주년 기념 국가재정포럼 발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
- 임주영·정지선,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용역보고서, 2006.
- 장호영, “조세정책과 소득세 공평성”, 「회계연구」, 제8권 제1호, 2003a, pp79-93  
 \_\_\_\_\_, “최저한세의 실증분석-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산업경제연구」, 제16권 제3호, 2003b, pp241-254
- 전병목·박명호, “납세자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전병욱·최원욱, “최저한세가 기업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경영학연구」, 제36권 제4호, 2007, pp.981-1007
- 전승훈,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경제현안분석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2004
- 전승훈·신영임(2009),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09
- 정덕주·김광윤, “조세 징수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212권 제4호, 2004, 39-61
- 정진오·정지선,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조세법 연구」, XV-1, 2009, pp.46-91
- 조용주, “조세법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양형을 위한 연구”, 「조세연구」, 제6집, 세경사, 2006.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2007.
- 최명근,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세무절차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최임수, “세무조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인식차이”, 한국경영학회 통합 학술대회, 2009
- 현진권, 「조세행정의 개혁방향과 정책과제」,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한국조세연구원, 1998.  
 \_\_\_\_\_, 「한국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1권 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5
- 현진권·박창균,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 황진영,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복잡성과 난해성 개선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07  
 \_\_\_\_\_,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적 검토”, 「예산춘추」, 2008년 여름·가을호

(통권 제12호), 국회예산정책처, 2008.

- Burman, Gale, Rohaly and Harris, “The individual AMT: problems and potential solutions,” *Discussion paper*, No.5, The Urban – Brookings Tax Policy Center, 2002
- Evans, C. and Walpole, M., *Compliance cost control: a review of tax impact statements in the OECD*, Sydney: Australian Tax Research Foundation, 1999
- Grasso, L.P., and P.J.Frischmann, “Measuring Horizontal Equity: A Regression Approach,”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No.14, 1992, pp.123 – 133
- Hansjörg Blöchliger and Oliver Petzold, “Taxes or Grants: What Revenue Source for Sub – central Governments?,” *OECD working paper*, 2009
- Keen, M.J., and J. Mintz, “The Optimal Threshold for a Value – Added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4, pp. 559~576
- OECD, “Program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ax Regulations in Selected Countries,” *Forum on Tax Administration: Tax Payer Services Subgroup*, CTPA/CFA (2007)68/REVI, 2008
- Schneider, Friedrich “The Size of Shadow Economies of 145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First Result over the Period 1999 to 2003,” mimeo., The Size of Shadow Economies of 145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First Result over the Period 1999 to 2003, IZA DP No. 1431, Dec. 2004
- Schneider, F., “Shadow Economies and Corruption All Over the World : New Estimates for 145 Countries”, mimeo, 2007.7.24
- Zee, H. H., “Simple Analytics of Setting the Optimal VAT Exemption Threshold,” *De Economist*, 153(4), 2005, pp.461~471.

## 부 록

- I. 2009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
- II. 2009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제도 현황
- III. 2008년 이후 비과세·감면 항목 개정현황

## I. 2009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 전년대비 방식

다음은 행정부의 비용추계서 자료를 재정리한 것으로,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재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한 총계수치와 합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세법개정효과에 대한 모든 세수효과를 비용추계서에 첨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1부의 III장에 자세히 소개하였다.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소멸	추정곤란(부가가치세 포함)						0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해 허용하는 의료비·교육비 공제 일몰연장: 2009.12.31 → 2012.12.31							0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월세 지급액의 40%, 3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통계청의 가구별 월세 통계, 국세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900					-90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2009.5.6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 허용(연 120만원 한도) (현행)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가입계좌수(900만) × 근로자 비율(59%) × 무주택 세대주 비율(15%) × 과세자 비율(56.2%) × 연간 공제금액(48만원) × 근로자 실효세율(12.6%) = △270억원	-270					-270
자녀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 →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							0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농어업인이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양도하는 어용용 토지 등의 규모와 양도차익, 실거래가 등을 알 수 없어 추정근란	0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2년 연장(2009.12.31 → 2011.12.31)							0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상속받는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	효과미미 및 추정근란						0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동거봉양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현행)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전직지원금: 장기복무(10년~19년) 제대군인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지급	'09년 전직지원금 규모(14억원) × 근로자 실효세율(12.6%) = △ 1.8 억원	-1.8					-1.8
소액 서민금융재단 (휴먼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손비인정 확대	소액 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 -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추정곤란						0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 연장	지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 연장 등 - 3년 → 5년 -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 허용	추정곤란						0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009.12.31 → 2012.12.31	효과없음						0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연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2009.12.31 → 2012.12.31	효과없음						0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연장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2009.12.31 → 2012.12.31	효과없음						0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연장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2009.12.31 → 2012.12.31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일몰규정 삭제 (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일몰시한 : 2010.12.31까지							0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일몰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중소기업에 한해 일몰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연구개발출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특례일몰연장	일몰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녹색펀드 :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 가입 한도 : 1인당 3천만원 *녹색예금·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한도: (예금) 1인당 2천만원, (채권) 1인당 3천만원 *요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 프로젝트에 투자 *가입기간: 3년이상 *일몰시한: 2012.12.31까지	-녹색펀드 소득공제 : 1조원(녹색펀드 조달액 가정) × 10%(공제율) × 20%(한계세율 가정) = △200억원 -녹색펀드 비과세 : 1조원 × 8%(연간수익률 가정) × 14%(세율) = △100억원 -녹색예금·채권 비과세 : 2조원(예금·채권 각 1조원 조달 가정) × 4%(이자율 가정) × 14%(세율) = △100억원	-103	-321				-424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 일몰 2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 공제 대상품목 확대 : LED, 플라스마조명 등 추가 * 세액공제 한도신설 : 산출세액의 30% 내에서 공제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낙후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확대 *감면기간 확대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정)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 :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시행령 규정)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에만 10년으로 감면 기간 확대 - 낙후지역외 지방 이전시 현행세제 적용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14%) 일몰연장	*SOC채권 분리과세 적용시한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대상채권의 요건완화 : 만기 “15년 이상” →“7년 이상”							0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사업의 범위 확대	수도권 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지원 대상인 지식기반산업 범위 확대 : 방송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추가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기타 서비스 산업 세제 지원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3년 일몰연장 : 2009.12.31 → 2012.12.31							
기타 서비스 산업 세제 지원	각종 특구지역 입주기업 지원제도 3년 일몰연장 : 2009.12.31 → 2012.12.31 *각종 특구지역 :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 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 구역, 농공단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문턱효과 방지를 위해 총급여 8천만원부터 단계적 축소 : 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를 10만원씩 축소	모형설정하여 모의실험(Simulation)한 결과치임	1,467	133				1600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 총급여 1억원 초과분: 5% → 1% - 총급여 8천만원~1억원: 5% → 3%	모형설정하여 모의실험(Simulation)한 결과치임	1100	100				120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 부동산 등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 신고 의무화 -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하여 확정 신고할 의무 부여 -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1단계) 최근 3년('06~08년) 평균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0.9조원+1.2조원+0.9조원)/3년 = 1조원/년 ○(2단계) 연도별 세수효과 구분 -2010년: 총세수효과(1조원) × '10.1.1~'10.10.31 양도분 비중 (10월/12월) ≒ 8,300억원 - '10년 : 총세수효과(1조원) × '10.11.1~'10.12.31 양도분 비중 (2월/12월) ≒ 1,700억원	8300	1700				10000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종료	일몰 종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보증금의 일부(60%)만 과세 *과세최저한 설정(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 :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행시기 : 2011년부터 시행	통계청의 총전세금액, 국토해양부 의 가구별 주택보유현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1,300			130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일몰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중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을 2010.1.1 이후 20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42조원(해외펀드 순자산 총액) × 8%(연간수익률 가정) × 14%(세율) = 약 5,000억원		4000	1000			5000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 - 장기주식형펀드 : 불입금액 5~2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 장기회사채형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							0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 일몰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폐지	가입계좌수(210만) × 근로자 비율 (59%) × 과세자 비율(56.2%) × 평균 공제금액(144만원) × 근로자 실효세율(12.6%) = +1,260억원						1260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중복적용 배제 -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을 현행 1억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조정 - 적용 : '10.1.1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 *생계형저축 가입대상 : 65세이상 노인(재산 및 소득규모 불문), 장애인 등 *조합 등 예탁금 가입대상 : 농*수*신협, 새마을 금고 조합원*회원 등	- '08년말 생계형저축액 85조원 중 한도초과 중복가입액은 16조원 (전체의 19%) - 2,080억원('08년 조세지출보고서 에 따라 추정)한 생계형저축으로 인한 세수감) × 19% = 약 400억원		367	33			40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 - 기 설정분에 대해서는 3년간 현행 세제지원 유지							0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강화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0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모형설정하여 모의실험(simulation)한 결과치임		1900				1900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과세 합리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축소: 5년간 100% 면제→2년간 50% 감면 *2년간 일몰연장 : 2009.12.31 → 2011.12.31	170억원('08년 동 제도 면제액) × 5년간 면제분 중 감면축소 대상분(10%)	17	17	17	17	17	85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개선: 1)총급여액의 30%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15% 단일세율 제도만 유지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벤처·물류기업의 전략적 체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거주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추정곤란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신축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시 임대소득 6년간 50% 세액감면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新보육시설 취득을 위한 舊보육시설용 토지양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09년말까지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 공제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 주택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자금(5%)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이 지급받는 지원금 및 출어비용에 대한 비과세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미분양주택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0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 폐업 절차 간소화	*신고지 : 관할세무서 → 전국 어느 세무서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시 :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각각 신고 → 세무서나 인·허가기관 중 1곳에만 신고 *신청방법: 서면신청 → 서면신청 외 온라인 신청 가능	효과없음	0	0	0	0	0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사업종류의 변경, 사업장의 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의 변경 등: 신청일로부터 7일 내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상호변경 : 신청일로부터 2일 내 → 신청일 당일	효과없음	0	0	0	0	0	0
매수인의 공매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공매물건 매수인이 낙찰 받은 물건을 매수 포기한 경우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공매물건 소유자인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2009.4.30 헌법재판소는 동 사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0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	효과없음	0	0	0	0	0	0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이민 등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출국일 전10일까지 → 출국 전(前)일까지	효과없음						0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 연장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 : 45일 →2개월 (현행) 소득세 확정신고시 2개월, 중간예납시 45일로 이원화	효과없음						0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다음연도 2월말일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효과없음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이상 사용)을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일몰시한: 2012.12.31까지 *물류시설의 범위: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조립·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	추정곤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시한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0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토지등의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일몰시한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0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 일몰시한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0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행복·혁신도시 내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시한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	동 제도 최초 적용시에도 증가분에 대해서만 3% 세액공제 - 단, 직전연도에는 50% 미만이었으나 당해연도에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가분이 아닌 50%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 (현행)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각각 50%를 초과하면서 직전 대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단, 최초 적용하는 경우 50% 초과분 전체에 대하여 3% 세액공제							
파생상품형 ETF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명확화	파생상품형 ETF의 결산시 실현이익도 분배·과세의 유보 허용, 매도시 배당소득세를 과세 (현행) 펀드의 결산(연 1회 이상)시 평가이익은 투자자에게 분배·과세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으나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하여야 함							0
	기장세액공제율 합리적 조정	○'08년 추정 기장세액공제 세수 지원액(간편장부: △290억원) -(10년): 290억원(간편장부기장세액 공제액) × 1/2 = 145억원 -(11년): 290억원(간편장부기장세액 공제액) × 1/2 = 145억원	145	145				290
	고소득 전문직 등의 일정금액이상 거래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추정곤란						0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추정곤란						
소득세 소계			10511	7139	2495	17	1277	21439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 신용회복기금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손실 보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 발생시 상계하여 법인세 과세 문제 해소	추정곤란						0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 관리재단) 출연금 손비인정 확대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0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 연장	- 지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 연장: 3년 → 5년 -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 허용	추정곤란						0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인정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추정곤란						0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009.12.31 → 2012.12.31							0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연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009.12.31 → 2012.12.31							0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연장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2009.12.31 → 2012.12.31							0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연장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2009.12.31 → 2012.12.31							0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연장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2009.12.31 → 2012.12.31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 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신설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 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동력 산업 : 3~6% → 20%(중소기업: 25% → 30%) *원천기술 : 3~6% → 25%(중소기업: 25% → 35%) - 일몰시한 : 2012.12.31까지(3년 한시)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의 범위 : 시행령에서 규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규모를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곤란하나 기존 세수감 규모(1.6조원)의 절반 정도 수준인 △8,000억원 정도로 추정 (소득세 포함 감소금액)	-480	-7520				-8000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일몰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0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중소기업에 한해 일몰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0
연구개발출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일몰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일몰 2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공제 대상품목 확대 : LED, 플라즈마조명 등 추가 *세액공제 한도신설: 산출세액의 30% 내에서 공제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창업한지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확인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100여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동 기업이 4년간 평균 1억원 정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	-24	-376				-400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포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가 하는 사업 추가 : 5~30% 세액감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매출규모는 약 5,000억원 수준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매출규모 5,000억원 × 영업이익율 14% = 700억원(과세표준) - 감면율 15% → 700억원 × 15% = 100억원(소득세 포함 감소금액)		-100				-100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하여 합병 지원세제 적용 *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등 면제	추정곤란 기업 구조개편은 개별기업의 사정, 경제환경 등에 따라 발생하므로 사전 예측 곤란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합병·분할(M&A)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무형 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현행)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만 과세이연 혜택 (부분 과세이연)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동질성 요건 강화	추정곤란						0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선진화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 확대 : 주식,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모든 자산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시→증자시에도 적용	추정곤란						0
구조조정기금 법인세 비과세 신설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구조조정기금 사업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0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낙후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총 10년으로 확대 *감면기간 확대 :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정)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 :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시행령 규정) 및 지방 5대 광역시 이외의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에만 10년으로 감면 기간 확대 -낙후지역외 지방 이전시 현행세제 적용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이슬람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 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면제							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외사요건 완화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20% 이상 → 10% 이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자회사 요건 완화에 따른 배당 증대규모 등의 추정이 곤란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 소유요건 완화: 발행주식 등의 50% 이상 → 40% 이상 *조세피난처 세제: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15% 이하인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자회사가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0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연장	일몰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0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사업의 범위 확대	수도권 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지원 대상인 지식기반산업 범위 확대 : 방송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추가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 확대 :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 마케팅업 추가	○인력공급업, 텔레마케팅업은 대부분 영세업종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소기업으로 주로 수 도권에 소재하고 있음 -인력공급업 등의 매출규모 약 1,000억원 × 영업이익율 10% = 100억원(과세표준) -수도권 소재 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20% → 100억원 × 20% = 20억원(소득세포함 감소금액)		-20				-20
기타 서비스 산업 세제지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팅시스템 추가	-적용대상 추가된 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 -투자금액 3,000억원 × 3% = 90억원 (소득세 포함 감소금액)	-5	-85				-90
기타 서비스 산업 세제지원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3년 일몰연장 : 2009.12.31 → 2012.12.31							0
기타 서비스 산업 세제지원	각종 특구지역 입주기업 지원제도 3년 일몰연장 : 2009.12.31 → 2012.12.31 *각종 특구지역: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농공단지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기타 서비스 산업 세제지원	<p>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p> <p>*감면내용: 여수박람회 참가 기업이시설공사 및 문화사업 등에 소요될 비용을 참가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p> <p>*감면기한: 2011.12.31까지</p> <p>*감면방법: 준비금(준비금은 실제 비용발생시 상계하고 잔액은 2012년 익금산입)</p>	추정근란: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기업의 규모 및 준비금 산입액을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움0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p>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 인하(8%→7%, 11%→10%)하되 100억원 초과 기업은 '08년 수준(13%, 15%)으로 환원</p> <p>-최저한세로 인해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p> <p>* 대상기업 : 약 1,000개</p>	<p>-(1,000억원 초과분에 대한 추가세수증) 1,150* × 2%p(13%→15%) = 2,300</p> <p>-(100~1,000억원분에 대한 추가세수증) 150** × 3%p(10%→13%) × 2 = 900</p> <p>* 과표 1,000억원 초과시 최저한세율 1%p 조정시 세수효과</p> <p>** 과표 100억원 초과시 최저한세율 1%p 조정시 세수효과</p>		3200				3200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종료	<p>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되어 '09년까지 그동안 호경기가 있었음에도 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시행(28년중 20년 운영), 기업에 대한 단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p>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14%)와 동일하게 적용 (현행)개인·일반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14%), 금융기관에 한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 금융기관은 '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가 되더라도 '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 없음 * 2010년에 한하여 +5.2조원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안 제73조)할 경우 이자 수입금액 대비 금융기관 원천징 수세액 비중을 감안하여 5.2조원 으로 추정 ○ 2010년도 이자수입금액 총액은 '08년 채권잔액(평균) 증가율 및 최근 이자율 동향 등을 감안하여 추정 ○ 2010년도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최근 3년간 전체 이자수입금액 대비 금융 기관 원천징수세액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	52000					52000
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축소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 -기 설정분에 대해서는 3년간 현행 세제지원 유지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정상화	외국법인의 Royalty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폐지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벤처·물류기업의 전략적 체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물류사업 분할시 분할평가차익 (토지·건물 양도차익) 과세이연	효과없음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물류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일반적인 요건보다 완화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이상 보유 특례(일반기업 10% 이상 보유)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신축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시 임대소득 6년간 50% 세액감면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09년말까지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 공제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이 지급받는 지원금 및 출어비용에 대한 비과세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 감면 정비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연결납세제도 시행( 10년) 전 제도 보완	금융기관 등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가 어려운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를 자법인의 세법상 사업 연도로 간주 *적용 요건 ① 법령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고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 불일치 ② 법령 등에 의해 연결사업연도의 결산 및 외부 감사인 확인 강제							0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 허용 - 단, 연장기간만큼 일 0.03%의 이자 부과 *외부감사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현행)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연결법인은 4월)이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0
합병에 따른 법인 폐업신고 편의 제고	합병후 소멸하는 법인도 폐업신고 가능 (현행) 합병시 피합병 법인의 폐업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한정	효과없음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이상 사용)을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일몰시한: 2012.12.31까지 *물류시설의 범위 :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조립·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시한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토지등의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일몰시한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행복·혁신도시 내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시한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	동 제도 최초 적용시에도 증가분에 대해서만 3% 세액공제 - 단, 직전연도에는 50% 미만이었으나 당해연도에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가분이 아닌 50%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 (현행)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각각 50%를 초과하면서 직전 대비 증가분이 있는 경우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단, 최초 적용하는 경우 50% 초과분 전체에 대하여 3% 세액공제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0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세수감: △200억원('16년) - '08년 감면액은 약 1,950억원 (총 600% : 5년간 100%, 2년간 50%)으로 1% 당 △3.3억원 세수 감소효과 - 감면기간을 7년간 100%, 3년간 50%(총 850%)로 확대하되 기업 이전지역이 수도권, 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등(약 80% 예상)인 경우는 현행 감면수준 유지 ※추가세수감: △2,150* - △1,950 = △200억원 *3.3억원 × (850 × 20% + 600 × 80%) = 약 2,150억원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	○세수증: △870억원('10년) - 433억원('08년 동 제도 감면액) × 5년간 감면분 중 감면폐지 대상분(20%) (소득세 증가분 포함)	174	174	174	174	174	870
법인세 소계			51665	-4727	174	174	174	4746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중소기업 기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 :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현행)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의 기업상속에 대해 기업상속 재산의 40%를 상속공제(100억원 한도)							0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 시한 1년 연장: 2009.12.31 → 2010.12.31							0
증여세 공제 대상 보완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0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상속·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 허용 *상증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5년내 분할납부하는 제도							0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 확대 : 현행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추가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처분예상금액) 산정 기관 확대: 현행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 → 회계·세무법인 추가							0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요건 완화	(개정)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업 의무 사용비율 : 현행 90% → 80%로 완화 *성실공익법인: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 체육 등 비영리 공익법인 중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결산서류의 공시의무 등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0
<b>상속증여세 소계</b>								<b>0</b>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 가치세율 적용특례 2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소매업) 2% → 1.5%, 음식·숙박업) 4% → 3%							0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면세 3년 일몰연장: 2009.12.31 → 2012.12.31							0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한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공장·광산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0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에이즈 등 희귀병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7종 추가 - 추가대상: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배설 촉진제, AIDS 치료제 등							0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일몰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0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일몰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0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일몰 3년 연장: 2009.12.31 → 2012.12.31							0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상가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화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1%) 신설 *시행 : 2010.7.1이후	개정으로 인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금액 수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그 영향을 추계하기 어려움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간이과세 배제업종 확대 :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 추가							0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영리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전환 *1차적으로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부터 과세 *시행시기 : 2010.7.1 이후							0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면세 유지 - 애견미용 등에 대한 과세정상화도 병행 추진 *시행시기: 2010.7.1 이후 시행							0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축소 *매입세액공제율 6/106으로 단계적(매년 1%) 축소 : 10/110 →6/106 '10 : 9/109, '11 : 8/108, '12 : 7/107, '13 : 6/106 *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 '10.1.1 이후 시행	- '08년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공제율 10/110) : 950억원 - 공제율을 6/106으로 축소시: 590억원 ⇒ 950억원 - 590억원 = 360억원	90	90	90	90		36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강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 *시행시기: 2010.7.1 이후 시행							0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현행)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개인음식점 8/108, 법인 음식점 6/106 등 - 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도 음식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정비	*면제대상 축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정부업무대행단체 제외 *국립공원관리공단, 신문유통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무선국관리사업단, 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협력단 *면제대상업무 축소: 산림조합 등 4개 단체 *시행시기: '10.7.1 이후 시행							0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확대	*신청기간 연장: 물품 구매일부터 15일 이내 → 3개월 이내 *거래금액 상한: 건당 5백만원 이내 거래 → 모든 거래 *신청건수 제한: 월 2건 이내 → 제한 폐지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관광호텔·콘도미니엄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폐지							0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 신청만으로 적용							0
<b>부가가치세 소계</b>		<b>90</b>	<b>90</b>	<b>90</b>	<b>90</b>	<b>0</b>	<b>360</b>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p>*과세대상: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p> <p>*부과기준: 품목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p> <p>*세율: 5%</p> <p>*시행기간: 5년 한시 시행 (2010.4.1이후 출고분부터 과세)</p>	<p>- 세수계산의 전제: 품목별로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 소비제품에 한정하여 과세되므로 소비전력량 기준(대통령령에서 규정)에 따라 세수추계 변동가능</p> <p>- 개별소비세: <math>\Sigma(\text{과세대상 제품} \times \text{판매가격}) \times 100/110(\text{VAT부과 전 가격}) \times 5\%</math>(개별소비세율)</p> <p>-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증분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증가금액)</p>	500	500				100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호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 : 1회당 1만 2천원 → 6천원							0
골프장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 2009.12.31 → 2010.12.31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정비	경형 승용*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에 대한 교통세*개소세 환급							
개별소비세 환입신고 개선	세금환급을 위한 환입신고 기한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일과 일치 :제품의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0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의 반입신고기한 연장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 반입신고 기한: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수령)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로 연장 *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일이 매분기의 다음달 25일임을 감안							0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물품 용도변경 신고기한 신설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의무 신설							0
개별소비세 소계		500	500	0	0	0	100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3년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 2009.12.31 → 2012.12.31							0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간 교환·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 2009.12.31 → 2012.12.31							0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공모펀드 증권거래세 감면,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	- '08년 기준 공모펀드 유가 증권 시장 양도금액 : 156조원 - '08년 기준 공모펀드 코스닥 시장 양도금액 : 4조원 - 양도금액 160조원 × 0.3%(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 4,800억원	4455	405				4860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ETF 수익증권에 대해 낮은 세율(0.1%)로 증권거래세 과세 - 일반 세율의 1/3수준인 0.1%의 세율로 과세 :ETF 시장 위축을 고려 *ETF(Exchange Traded Fund): 특정지수(예: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 (현행)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ETF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08년 ETF거래총액 24.3조원 × 50%(거래규모 축소가정)* × 0.1% = 120억원 *공모펀드와 ETF 수익증권이 비과세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ETF 거래규모가 급증하였는데, '10년부터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됨에 따라 ETF 거래규모가 정상수준으로 회귀함에 따라 거래규모가 축소됨				110	10	120
증권거래세 소계			4455	405	110	10	0	498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면세 3년 일몰연장 : 2009.12.31 → 2012.12.31							0
기타 2009년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정비	경형 승용·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 에 대한 교통세·개소세 환급							0
세금환급을 위한 혼유 환입장소 편의 제고	당초 반출한 제조장 외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 할 경우 세금 환급 (현행) 수송·저장 과정에서 발생한 혼유에 대하여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만 세금 환급							0
목적세 폐지 유예	*교통세법 폐지시기 3년 연기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既통과한 법률 당초대로 환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0
<b>교통세 소계</b>								<b>0</b>
관세제도 개선	기업의 관세담보 제공의무 일부 기업으로 한정 - 의무대상 기업 : 최초 수입업체, 관세채납업체, 관세법 위반업체 등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관세제도 개선	「FTA 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 특례법」을 통합 -한-칠레 FTA 특례법은 폐지하되, 한-칠레 특례 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존치가 필요한 조항은 별도 조항을 신설 *현행 이원체제*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한-미 등 일반 FTA)							0
관세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50%) 지원기한 2년 연장 : 2009.12.31 → 2011.12.31							0
관세제도 개선	*고속철도 건설용품 감면 등에 대한 지원기한 2년 연장: 2009.12.31 → 2011.12.31 *고속철도 건설용품 감면비율 축소: 현행 50% → 30%							0
관세제도 개선	산업재해 예방물품 관세감면(50%) 제도 폐지	세수증가액은 연 900만원으로 예상	0.09					0.09
관세제도 개선	관세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완화경감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벌금형에 서 과태료로 전환 *보세공장 반입물품 미신고 사용, 허가없이 보세 지역 이외에서 작업 *미성년자·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 *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1/2로 경감							0
관세 소계			0.09	0	0	0	0	0.09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면세 3년 일몰연장: 2009.12.31 → 2012.12.31							0
목적세 폐지 유예	*교통세법 폐지시기 3년 연기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既통과한 법률 당초대로 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 소계								0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중부세 비과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상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일종							0
종합부동산세 소계								0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완화	탁주·약주 제조시설 기준 대폭 완화 : 발효조 6kl → 3kl, 제성조 7.2kl → 2kl 이상							0
주세가 면제되는 공업용 주정범위 확대	주세면제되는 공업용 주정의 범위 : 합성주정 외에 발효주정 추가							0
주세 소계			0	0	0	0	0	0
목적세 폐지 유예	*교통세법 폐지시기 3년 연기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국회를 既통과한 법률 당초대로 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농어촌특별세 소계								0



(단위: 억원)

개정 사항	개정 주요내용	추계근거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전세권증서와 지상권·지상권증서의 과세대상문서에서 삭제		-2	-2	-2	-2	-2	-10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전자문서의 과세			120	120	120	120	480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종합체육시설·승마장회원권양도증서의 과세		1	1	1	1	1	5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	무체재산권·골프장회원권양도증서 등의 세율조정		60	60	60	60	60	300
인지세 소계			59	179	179	179	179	775
총합계			67280	3586	3048	470	1630	76014

## II. 2009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제도 현황

비과세·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3년평균 감면세액	비 고	2009세제 개편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55	69	96	73		일몰연장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5조의2	4	7	8	6		일몰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1,883	1,758	1,707	1,783		일몰연장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사입 등 특례	조특법 제8조			0	0		일몰연장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 제10조의2			3	3		일몰연장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 투자에대한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511	461	1,128	700		일몰연장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		18	8	13		일몰연장 감면축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조의2			1	1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특법 제13조	42	19	39	33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14조	0.16	0	0	0.1		일몰연장 감면축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18조	17	16	170	68		일몰연장 감면축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액 공제(선택사항)에 대한 일몰 (15%, 제2항)은 2012.12.31까지	조특법 제18조의2①	128	217	288	211		일몰종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제22조	404	276	347	342		일몰연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281	394	321	332		일몰연장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112	128	177	139		일몰연장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283	676	1,304	754		일몰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조특령 제23조	20,681	18,247	21,035	19,988		일몰종료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특법 제29조	누락	누락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2	0	0	0	0		일몰종료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3				0		일몰종료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4			0.5	1		일몰종료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5			0	0		일몰종료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6				0		일몰종료

비과세·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3년평균 감면세액	비 고	2009세계 개편안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7조의3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55조의2	0	0	0	0		일몰종료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4조	51	85	82	73		일몰연장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66조	145	186	327	219		일몰연장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67조	8	11	13	11		일몰연장
농업회사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68조	62	35	30	42		일몰연장
기부금의 과세특례 * 단, 대학의 시설비·교육비· 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일몰기한은 2010.12.31까지	조특법 제73조	10,435	12,724	16,044	13,068		일몰연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 제74조①	758	874	1,195	942		일몰연장
기금 관리·운용법인이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 제74조③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77조	80	465	1,297	614		일몰연장
공공사업을 위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조특법 제77조의2			0	0		일몰연장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2			0	0.4		일몰연장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3			0	0		일몰연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4			0	0		일몰연장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5			0	0		일몰종료
공익사업 수용 등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7			0	0		일몰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87조	377	382*	항목통합	380		일몰연장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2	0	누락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종료
고수익·고위험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7		항목통합	항목통합	정보없음	항목통합	일몰종료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법 제91조의9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10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11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사설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94조	95	110	148	118		일몰연장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제96조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등	조특법 제100조	0.17	0.15	0.15	0.16		일몰종료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법 제101조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비과세·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3년평균 감면세액	비 고	2009세제 개편안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02조	1.0	0	0	0.3		일몰연장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원	조특법 제104조의2	0	0	0	0		일몰종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관리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104조의11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제105조①3	1,504	2,531	1,624	1,886		일몰연장
SOC시설로 제공한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제105조①3의2	4,747	2,497	2,783	3,342		일몰연장
도서지방 자기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①1, 조특법 제111.2조	29	38	34	34		일몰연장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①2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일몰연장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①3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일몰연장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①9	135	58	76	90		일몰연장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법 제106조의5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조특법 제108조	5,846	5,243	5,818	5,636		일몰연장 감면축소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제109조의2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제111조의2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농협 등의 당해 조합원 용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5	76	63*	80	70		
농협 등의 조합원 예·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6	7	8*	항목통합	8		일몰연장
농어촌정비사업등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문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7	25	32*	항목통합	29		일몰연장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9	0	0*	항목통합	0		일몰연장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11	0	0*	항목통합	0		일몰연장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19	1	2	2	2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	30	35*	항목통합	33		일몰연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2	10	14*	항목통합	12		일몰연장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2의3	1.7	1.3*	항목통합	2		일몰연장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34	1,571	1,738	2,052	1,787		일몰종료
증권투자신탁회사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5	0.4	0.02*	정보없음	0.2		일몰종료
증권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0	361	384*	항목통합	373		일몰종료
부도기업의 지배주주가 사용인에게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5	0	0*	항목통합	0		일몰종료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 간 교환·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6	0	0*	항목통합	0		일몰연장
연기금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8	23	36*	항목통합	30		일몰종료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조특법 제118조①1	누락	누락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비과세·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3년평균 감면세액	비 고	2009세제 개편안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조특법 제118조①3	39	44	188	90		일몰연장
유동화면회사의 유동화자산 양수·관리·운용·처분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특법 제119조①13, 조특법 제120조①12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양수·관리·운용·처분시 저당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①16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약정체결 자산의 양수·관리·운용·처분시 저당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①20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부터 취득재산의 등기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특법 제119조①29, 조특법 제120조①25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조특법 제119조⑥1, 조특법 제120조④1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 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특법 제119조⑥2, 조특법 제120조④2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특법 제119조⑥4, 조특법 제120조④4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⑦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감면축소
기술도입대기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6	23	96	160	93		일몰종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제121조의8	0	0	0	0		일몰연장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제121조의9	1	1	0	1		일몰연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특법 제121조의10	0.2	0.3	0.1	0.2		일몰연장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특법 제121조의11						일몰연장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	조특법 제121조의14	122	143	151	139		일몰연장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15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16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18	0	0	0	0		일몰연장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17	추정공란	추정공란	추정공란	추정공란	추정공란	일몰연장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등	조특법 제122조의3			0	0		일몰연장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26조의2	10,465	12,506	14,770	12,580		일몰연장 감면축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특법 제4806호 부칙 제17조	56	56*	항목통합	56		일몰연장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①1-2	136	260	205	200		일몰연장

비과세·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3년평균 감면세액	비 고	2009세제 개편안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①4	1,109	884	830	941		일몰연장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소득령 제110조	-	-	-	정보없음	기부금 공제항목에 포함	일몰종료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부가령 제26조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종료
소매업·음식숙박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부가령 제74조의3④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b>합 계</b>	항목수: 106개	62,732	63,809	74,542	67,345	-	-

주 1. 감면금액은 2006년~2008년 감면세액('08년은 잠정액)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2007~2008)」 참조.

2. 감면금액 중 \*는 2008년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각종 감면항목의 통합으로 인해 감면세액의 확인이 곤란하여 2007년도 보고서의 감면세액(2007년도 잠정액)으로 대체

3. 올해 일몰도래 항목은 총 106개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특례(조특 제18조의2 ①)'의 경우 일몰을 종료하더라도 제2항의 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은 감면축소에 해당

### III. 2008년 이후 비과세·감면 항목 개정 현황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규 감면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조특법 제111조의3	• 일몰기한 : 2010.4.30	-610	-440			
신규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제111조의2	• 일몰기한 : 2009.12.31					
감면 확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7조의2	•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중소기업간 : 0.4% → 0.5%, 대기업-중소기업간 : 0.3 → 0.4%)		-50	-50		
신규 감면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 불산입	조특법 제8조의2	• 일몰기한 : 2010.12.31			-40		
감면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11조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상향조정		-219			
감면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제25조의2	• 투자금액의 10% → 20% • 일몰 1년 연장 (2008년말 → 2009년말)		-1,000			
신규 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 중소기업이 2007년 말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 공제		-100			
신규 감면	유가환급금 지급	조특법 제100조의27	•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최고 24만원까지 차등 지급	-26,500				
감면 확대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	조특법 제111의2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추가 :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2,600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감면 확대	서비스업용 등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104조의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중부세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 : 일반별도합산 0.6%~1.6% → 별도합산특례(공시지가 200억원 초과분 0.8% 단일세율 적용)</li> </ul>	-250	-150			
신규 감면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특법 제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소비세 : 12,000원</li> <li>농특세 : 3,600원</li> <li>교육세 : 3,600원 면제</li> </ul>	-368	-1,102			
신규 감면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104조의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년 중 출연분</li> </ul>		-340			
일몰 종료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특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톤세제도 도입으로 지원실익 감소</li> </ul>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종료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4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달성, 매각완료</li> </ul>	세수 효과 없음				
폐지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실익 상실에 따른 폐지</li> </ul>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종료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달성, 외환위기 시 한시 도입</li> </ul>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농협중앙회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조특법 제74조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효성 낮은 감면한도 축소(70%→50%)</li> </ul>	세수 증가 효과 미미				
일몰 종료	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운용사례 없음</li> </ul>	세수 효과 없음				
폐지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04조의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도입으로 대체</li> </ul>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종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104조의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합산토지(사업용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대폭 인하안(정부안)으로 인해 특례규정 불필요</li> </ul>	세수 효과 없음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몰 연장 감면 확대	아파트등공동주택관 리용역에대한부가가 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① 4의2·3	• 일몰연장 : 2011.12.31 • 면제 대상용역 확대 : 청소용역 추가		-800	-270		
일몰 연장 감면 확대	회사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제도	조특법 제106조의7	• 일몰연장('08년말 →'11년말) • 경감율 확대 (50%→90%)	누락	-1,030	-340		
일몰 종료	고속철도운영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조특법 제108조의12	• 목적달성	세수 효과 없음				
폐지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소득세법 제52조⑧	• 저소득층은 세율인하· 기본공제확대, EITC 지원으로 대체			50		
감면 축소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조특법 제88조의4	• 당초 일정대로 인적기준 축소 액면가 합계액 3천 만원 이하→1천8백 만원 이하자		20			
감면 축소	해외자원개발투자회 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6	• 당초 일정대로 감면 축소 : 액면가액 3억 이하 비과세→ '09~'11년 까지 5%	누락				
감면 축소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1조	• 현행 70세 이상 연 150만원 → 100만원		2,550			
감면 축소	농어업용석유류간접 세면제	농림특례규 정제15조⑫	• 농업용 난방기 유종 제한 : 경유제외	누락				
일몰 연장 감면 축소	중소기업창업투자조 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 일몰연장('08년말 →'10년말) • 공제한도축소 (50→30%)	추정 곤란				
일몰 연장 감면 축소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33조	• 일몰연장 ( '08년말→'10년말) • 감면대상 축소 (중소기업 제외)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감면 축소	선박투자회사의 주주 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7조의5	• 일몰연장('08년말→ '10년말) • 감면 축소: 액면가 3억원이하, 배당소득 비과세→5% 저율과세		20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몰 연장 감면 축소	노인·장애인 등 생계 형저축에 대한 비과 세 등	조특법 제8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연장('08년말 →'11년말)</li> <li>생계형저축 노인 가 입대상연령 60세 통 일(여자55세→60세)</li> </ul>	추정 곤란					
일몰 연장 감면 축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특법 제8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연장('08년말 →'11년말)</li> <li>저축한도 축소: 20세 이상:2천→1천만원 생계형저축가입자 :6천→3천만원</li> </ul>		600	600	600		
일몰 연장 감면 축소	장기보유주식배당소 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특법 제9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연장('08년말 →'10년말)</li> <li>보유기간 요건강화 : 1년→3년</li> </ul>		130				
일몰 연장 감면 축소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 사 주식배당소득 과세 특례	조특법 제91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연장('08년말 →'10년말)</li> <li>감면기준 축소(액면 가3억→1억원)</li> </ul>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감면 축소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몰연장:</li> <li>조세감면 축소(부가 가치세면제 폐지)</li> </ul>	세수 효과 없음					
신규 감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의 손금산입	조특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6년말 폐지한 제 도 재도입</li> <li>일몰: 2013년말</li> </ul>			-6,400			
신규 감면	국제박람회·국제경기 대회지원 * '12년 여수세계박람 회, '11년 대구세계육상 경기대회, '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조특법 제73·106· 116·1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행사조직위원회 지출 기부금 50% 손금산입</li> <li>행사관련 국내제작 관련한 물품 수입시 관세경감 등</li> </ul>	추정 곤란					
신규 감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이상 사업영위한 중소기업</li> <li>공장증설 등으로 공장을 대체취득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과세이연</li> <li>일몰: 2011년말</li> </ul>	추정 곤란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규 감면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조특법 제104조의12	•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추정 곤란				
신규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제109조	• 하이브리드차 개별 소비세(교육세 포함) 면제: 대당 130만원 한도 • 일몰:2012년말		-70	-190		
신규 감면	부실산립조합 구조조 정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	• 부실산립조합 또는 중앙회가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누락				
신규 감면	보세구역내 물류시설 원천징수 면제	조특법 제141조의2	• 보세구역내 물류시 설에 보관한 재고자 산의 양도로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한 법 인세·소득세 면제	추정 곤란				
신규 감면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중부세법 제9조⑤⑥	• 연령별로 산출세액의 10% ~ 30% 세액공제		-47	-28		
감면 확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 감면대상 확대 : 음식점, 건설업 추가	추정 곤란				
감면 확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일몰영구 폐지 • 중소기업 당기분 방식 세액공제율상향 (15→25%) 등			-2,000		
감면 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8조의2	• 일몰연장('09년말 →'12년말) • 감면확대: 외국인 근로자 단일특례세 율인하(17→15%)			-30		
감면 확대	환경보전시설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3	• 감면율 확대 (7→10%)			-100		
감면 확대	대학의 R&D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제73조	• 감면대상 확대 : 대학시설비·연구비 등 기부금순금산입한 도 확대(50→100%) • 일몰: 2010년말		-20	-30		
감면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혁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2	• 감면방식 추가 :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 법인세 50% 감면	추정 곤란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감면 확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 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3	• 감면대상 확대: 관 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 담기업 출자·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 • 일몰:2008년말	누락				
감면 확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04조의15	• 공제대상 확대 : 공동투자 방법 추가			-10		
감면 확대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대한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8	• 감면 대상 확대:지 방대학(전액공제)→ 모든 대학 (수도권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의 50%)		-20	-30		
감면 확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 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 인세 등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9	• 감면대상 기업 및 업종 확대: 총개발 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내개발사업자, 관광식당업(시행령 개정) 추가	추정 곤란				
감면 확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조특법 제133조	• 감면한도 확대 : 1년간 1억원 → 2억원 5년간 1억원 → 3억원 • 수용 외 일반거래에 도 적용 • 적용시기: 2008 양도 분부터		-3,580	-720		
감면 확대	교육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①4	• 공제한도(1인당) 확대 -취학전아동·초·중· 고등학생: 연 200만원 → 300만원 -대학생: 연 700만원 → 900만원 • 공제대상 확대: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추가			-2,650		
감면 확대	의료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①3	• 부양가족 공제한도 상향조정: 연 500만원 →700만원			-700		
감면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소득세법 제52조③	• 이자비용 공제한도 상향조정:연 1천만원 →1천5백만원	누락				
감면 확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영 제6조	•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한도 상향조정: : 월100만원 → 월150만원	누락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감면 확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소득영 제9조	• 기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확대 : 연 1천만원 →1천2백만원	누락				
감면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	조특법 제100조의3 ·100조의5	• 신청자격 요건 완화 - 자녀수: 2자녀→1자녀 • 지급금액: 최대 80만 원 → 120만원 • 제도 조기시행 : 2010년 → 2009년		-3,400	-1,200		
일몰 연장 감면 확대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영 제26조① 5의3	• 일몰연장: '08년말 →'09년말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 되는 음식용역 포함	-50	-150			
감면 확대	R&D시설투자 세액공 제	조특법 제11조	• 공제율 확대: 투자 금액의 7%→10%		-220			
감면 확대	시험·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개소법 제18조①5	• 면제대상 추가: 기 업부 설 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 입하는 승용자동차		-10			
일몰 연장 감면 확대	미분양 주택 중부세 비과세	중부령 제4조	• 대상확대: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추가 • 비과세기간연장 : 3년 → 5년	누락				
감면 확대	중소기업 기업상속 공제	상증법 제18조	• 공제율: 기업상속가 액의 20%→40% • 공제한도 상향:30억 원→100억원 • 적용요건 완화: 사업 영위기간 15→12년		-50			
감면 확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령 제116조의21	• 연구개발업 영위 입주 기업 감면요건 완화 - 외국인투자:5백만원 이상→2백만원이상 - 내국인투자:50억원 이상→20억원 이상	누락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몰 연장 감면 확대	10년이상 보유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	법인령 제92조의11 ③,소득령 제168조의14 ③	•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토지 범위확대:사업 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전 취득한 토지 추가 • 일몰연장: 2008년말 →2011년말	누락					
일몰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일몰연장: 2008년말 →2011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공장의 대도시 밖 이 전에 대한 법인세 과 세특례	조특법 제60조	• 일몰연장: 2008년말 →2011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법인본사의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61조	• 일몰연장: 2008년말 →2011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외지역 이전 중소기 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 일몰연장: 2008년말 →2011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법인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 일몰연장: 2008년말 →2011년말	세수 효과 없음					
기타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	조특법 제92조	• 일몰영구폐지, 소득세법 이관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4	• 일몰연장: 2008년말 →2011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04조의7	• 일몰연장: 2008년말 →2011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농림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조특법 제105조①	• 일몰연장: 2008년말 →2011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농민등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 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②9	• 일몰연장: 2008년말 →2011년말	세수 효과 없음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몰 연장	투자신탁에 속한 주 권의 양도에 대한 증 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4	• 일몰연장: 2008년말 →2009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증권투자신탁회사소 유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5	• 일몰연장: 2008년말 →2009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증권투자회사 주권양 도에 대한 증권거래 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0	• 일몰연장: 2008년말 →2009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조특법 제118조①10	• 일몰연장: 2008년말 →2010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2조	• 일몰연장: 2008년말 →2010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136조③	• 일몰연장: 2008년말 →2010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40조	• 일몰연장: 2008년말 →2013년말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영 제37조	• 일몰연장: 2008년말 →2010년말	세수 효과 없음				
감면 축소	부양가족 공제		•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 제한연령 조정			753		
일몰 연장 감면 확대	농협등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72조	• 일몰연장 : 2009.12.31 → 2012.12.31 • 당기순이익과세율 인하 : 12% → 9%			-680		
일몰 연장 감면 확대	조합 등 예탁금에 대 한 저율과세 등	조특법 제89조의3	• 일몰연장: 2009.12.31→ 2012.12.31 • 예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1인당 2천만원 → 3천만원			-2,430		
감면 확대	공공사업 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조특법 제77조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 소득세 감면을 확대 -현금보상: 10% → 20% -채권보상: 15% → 25%			-670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몰 연장 감면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조특령 등	(2008.12.26개정) • 일몰연장 : 2008.12.31 → 2009.12.3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공제(3%) • 적용대상업종 확대: 전문휴양업 추가 (2009.5.21개정) • 증가분(직전 3년 평균투자액 초과금액) 방식 추가, 공제율 10%(시행령)		-9,070	-21,000		
감면 확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부가세법 제32조의2	• 세액공제율 30% 인상 - 일반과세자: 1% → 1.3%, 간이과세자: 2% → 2.6% • 공제한도액 인상 : 500만원 → 700만원		-3,300	-1,100		
신규 감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 ①.11	• 일몰기한 : 2011.12.31까지		-1,410	-470		
신규 감면	장기주식형저축에 대 한 소득공제 등	조특법 제91조의9	•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650	-4,160	-5,360	-2,920
신규 감면	장기 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10	• 일몰기한 : 2009.12.31까지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신규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세의 감면	조특법 제77조의3	• 현지인으로서 개발 제한구역지정 이전 취득시: 50% 감면 • 현지인으로서 매수 청구일 또는 협의매 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시: 30% 감면 • 일몰: 2011.12.31까지					
신규 감면	지방 미분양주택 취 득에 대한 양도소득 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2						
감면 확대	주택담보 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제108조의3	• 소득공제 요건 완화 - 담보설정 주택 : 기준시가 3억원이하 → 9억원이하, 직전 연도 소득기준 삭제		추정 근란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 주기업 등에 대한 법 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기업에 대해 법 인세 또는 소득세 3 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li> <li>• 일몰기한 : 2012.12.31까지</li> </ul>					
신규 감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9년말까 지 취득)	조특법 제98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밖 소재 미 분양주택 취득후 양 도시 당해 주택에 대해 5년간 발생하 는 양도차익 전액 면제</li> <li>• 2009.2.12~2009.12.31 취득분</li> </ul>		추정 곤란			
신규 감면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분양주택펀드 투 자에 따른 배당소득 대해 투자액 1억원 까지는 비과세, 1억 원 초과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li> </ul>		추정 곤란			
신규 감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 액공제 특례	조특법 제9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기한 : 2010.12.31까지</li> </ul>		-2,000			
신규 감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기금 반환금 출 자 시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104조의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채권정리기금으 로부터 반환받은 잔 여재산 1년 이내 신 용회복기금 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li> </ul>		-1,400			
일몰 연장 기타	해운업에 대한 세제 지원(한시적 톤세 포 기허용)	조특법 제104조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연장 : 2014.12.31까지</li> <li>• 해운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포기허용 : 2010.12.31까지</li> </ul>		추정 곤란			
신규 감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의 국채·통안채 투자 시 이자소득 등 면제	소득세법 제119조의2, 법인세법 제9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대상 : 국내에 계좌를 개 설한 직접투자외 국 세청장이 승인한 적 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li> <li>• 신규발행 및 유통 중 인 국채 및 통안채</li> </ul>		-614	-614	-200	-614
신규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유지기업 중사 근로자에 대하여 2 년간 한시적으로 임 금삭감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li> </ul>		추정 곤란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규 감면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 제34조	•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추정 곤란			
일몰 연장	주식의 현물출자·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 일몰연장 : 2009.12.31 → 2012.12.31	세수 효과 없음				
일몰 연장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3	• 일몰연장 : 2009.12.31 → 2012.12.31	세수 효과 없음				
신규 감면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9조	•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추정 곤란			
신규 감면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 제40조	•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추정 곤란			
일몰 연장	회생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4조	• 일몰연장 : 2009.12.31 → 2012.12.31	세수 효과 없음				
신규 감면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5조	•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추정 곤란			
신규 감면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	•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추정 곤란			
신규 감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8조	• 일몰기한 : 2013.6.30까지		추정 곤란			
일몰 연장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52조	• 일몰연장 : 2009.12.31 → 2012.12.31	세수 효과 없음				
신규 감면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제109조의2	• 1999.12.31 이전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3,100			

개정 방향	감면 제도	근거법령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사유)	비용추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규 감면	재외동포 전용 투자 신탁등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 제91조의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가입하여 2012년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세 대해 투자액의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 초과분 5% 저율분리 과세</li> <li>• 적용 : 2009.3.16~2010.12.31 까지 가입분</li> </ul>		추정 곤란			
신규 감면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 제98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외 기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 감면</li> <li>• 적용 : 2009.3.16~2010.12.31 까지 취득분</li> </ul>		추정 곤란			
신규 감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104조의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 적용</li> <li>• 일몰시한 : 2011.12.31까지</li> </ul>					
신규 감면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은행자본 확충 펀드 세제지원)	조특법 제104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이연</li> <li>• 매입한 금융기관 우선주를 재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li> </ul>		추정 곤란			

## 연구진

### 연구 및 편집 총괄

박종규(경제분석실장)

이영환(세계분석팀장)

### 집필자

이영환(세계분석팀장)

신영임(세계분석팀 경제분석관)

전승훈(세계분석팀 경제분석관)

정지은(세계분석팀 경제분석관)

황진영(세계분석팀 경제분석관)

### 연구지원

강혜원(세계분석팀)

##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

발 간 일	2009년 10월 26일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b>국회예산정책처</b>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도서출판 <b>한학문화</b> (TEL 02·313·7593)

---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팀 (TEL 02·788·3778)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 - 89 - 6073 - 249 - 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